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1077-01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 연구

2020. 12.

문화체육관광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1077-01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 연구

2020.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 미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애 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 연 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 혜 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변 영 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예방 다음으로 성폭력의 폐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대책임
○ 성폭력 피해는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임. 문화예술계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다른 분야보다 성폭력 피해가 더 심각함을 고민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신고상담센터의 현황 및 운영 분석, 피해자 구제정책 현황, 피해자 지원정책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정책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문체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현황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 운영 실태 조사
○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조사
○ 문화분야 종사자의 작업 환경 및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방안

3.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자료 조사
○ 신고·상담센터 실태분석
  - 예술인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라
  - 부산성폭력센터 (부산문화재단 위탁)
○ 상담센터 운영자 인터뷰
○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9명, 조력자 4명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패널: 변호사 및 법학 교수 6인, 문화예술분야 상담전문가 및 상담센터 운영자 7명,

문화·인권 분야 연구자 4인

- 일정: 1차 조사(2020년 10월 12일 ~ 10월 18일)
  2차 조사(2020년 10월 19일 ~ 10월 25일)

Ⅱ.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법·정책

1. 정책수립 배경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은 2018.3.8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하 '2018년 대책'이라고 함)의 한 부분으로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

2. 정책 현황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 6대 과제는 1. 직장에서의 신고 활성화 및 대응체계 강화 2.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4. 적극적 수사대응 및 가해자 엄중처벌 5.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6. 추진체계 강화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및 신고상담센터 운영

○ 특별조사단의 주요활동은 신고사건 조사, 문화예술계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정책과제 검토 등임

○ 특별신고상담센터는 2018.3.12.-6.19까지 100일간 운영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서울해바라기센터에 위탁운영함. 동 센터의 활동내용으로 신고접수, 상담지원(심리상담 포함), 수사지원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유관기관 협력활동, 예방교육이 있음

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운영

○ 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 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내부위원 2명의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8.3월-12월까지 활동

○ 주요 권고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에서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의 4가지 개선과제임

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제정 추진

○ 동 법 제정안은 총 6개 장과 44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됨.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등 총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장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는 피해 조사 및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Ⅲ.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실태 분석

가. 개요

○ 2018.3.1.~2020.5.31.까지 4개의 지원센터(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부산 성폭력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분석함. 4개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는 총 297건임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케이스 수	119 (40.1)	25 (8.4)	83 (27.9)	70 (23.6)	297 (100.0)

나. 문화분야 신고·상담 특성

○ 분야별로 신고 건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영화계는 성희롱, 성폭력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신고 및 지원센터로서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영향으로 보임

○ 가해자의 지위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와 사제지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스승의 지위에서 가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음 순위는 업무관계자, 동료나 친구로 나타남

○ 피해 유형 중 성추행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언어적 성희롱〉 강간 및 강간 미수〉 신체적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남. 강간 및 강간 미수는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63건, 성추행은 128건이 신고됨(중복응답)

○ 사건 발생년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미투가 활성화된 2018년 이후로 발생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실적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법률상담 신청 비율은 든든과 부산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신고나 공론화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법적 부담과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센터를 통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 무고죄 등 피소대응 관련이 52건, 2차 가해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경우가 60건인 것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하는 어려움을 보여줌

○ 문화예술계 업계 내의 가해자 비율이 높고 가해자 징계 등 조직 내 구제절차보다는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특징은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신고사례가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지점이고, 문화예술계의 문화, 구조, 피해 양태 등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개요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 조력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함. 영화, 미술, 무용, 연극, 만화(웹툰), 그리고 웹드라마와 같은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피해자 9명과 피해 지원 조력자 4명, 총 열세 명이 참여하였음

나.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특수성 및 배경

○ 면접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 분야 내 성폭력 감수성이 현저히 낮으며, 분야 별 공고한 인맥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내부의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배제시키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고 증언함. 또한 문화계 일의 특성 상 계약상의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성폭력 피해의 법적 구제나 지원 등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함

○ 피해자들은 피해를 경험한 당시 문화 분야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기관에 관해 모르고

있던 경우가 많았고 다수의 문화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문화 분야 내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 기관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추측함

○ 개선사항으로는 지원 체계에 대한 문화분야 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 문화 분야 관련 전공 대학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예방교육 실시 및 선생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 위계적 관계에서의 교수 처신 및 학생 지도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를 탐색하고 그 안의 교육 및 노동 시스템을 파악하여 문화 분야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주변에서 조력할 수 있는 문화분야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였음

3.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

○ 미투운동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 그리고 의식개선 워크샵 등 의식과 문화의 개선에서부터 좀 더 제도적인 개선 방법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문화분야에는 조직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이 많다는 점에서 계약 단계에서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에 대한 할리우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음

○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많은 여성들이 고발을 하기 어려워하고 또 고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정의와 처벌 기간을 수정해야 하고 민법의 보상 조항을 형법에 포함하여 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구가 있음. 또한 민법을 변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도록 개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음

○ 이 외에도 예술 분야 특유의 도제식 인력양성 때문에 교수의 권력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술 대학의 제도 개선방안, 영화 제작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희롱 교육 이수 의무,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사례들이 있음

4. 문화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가. 문화분야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센터 운영자 조사

○ 목적: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운영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및 현 신고·상담 체계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함

○ 현황: 든든은 2018년 3월에 공식 개원하였고 현재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 모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라는 방송, 게임, 만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상담,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 성폭력신고상담통합센터」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내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센터」는 부산 지역의 예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된 케이스로 2018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19년부터 부산시의 예산으로 부산문화재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한계점은 최종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 범위의 한계, 인력과 자원 부족, 그리고 산발적 센터 운영이라고 할 수 있어 통일된 운영 및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함

○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들은 미투운동의 산물로 2018년에 시작하여 아직 짧은 역사를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 경험한 일이고 해결방안으로 대두된 신고상담센터도 문제에 대증적인 방식으로 급조된 기구라고 할 수 있어 문화분야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문체부 산하 상담센터의 재구조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문화분야 성희롱과 성폭력이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 문화분야의 시장 구조와 직업 문화와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함

나.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 현재 문화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절차인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는 개별법을 제정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았음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혹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 같은 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생계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가 가장 높았음

○ 기타 피해자 피해자 지원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업무·취업 관련 불이익 주는 행동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징벌하자는 것과 피해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창작 활동·사업과 예술 교육 지원하자는 데 똑같이 동의가 높았고 차순으로 높은 것은 예비예술인도 예술인의 정의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음

○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입법하고 1) 각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명시 2)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근절서약서 및 예방교육이수 계획서 제출 3) 지원사업 결과 보고시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가장 동의가 높았음

○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하자는 제안, 다음으로 상급자와 하급자를 구분하여 교육하자는 안에 대해 가장 동의가 높았음

○ 표준계약서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을 넣자는 안에 대해 가장 동의가 높았고 제3자에 대한 성희롱도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하자는 안에는 두 번째로 동의가 높았음

○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안에는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동의가 높은 것은 신고/상담/지원의 조력과 지지자 역할과 조사/심의/징계의 가해자 역할로 나누고 전자는 상담센터에, 후자는 예술인보호관 같은 문체부 직속 행정업무로 귀속시키자는 안임

○ 지자체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고 전국적 문화예술인 대상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안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Ⅳ. 정책 제언

가. 문화분야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 법은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용역·위탁·도급계약의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의무 예방교육의 범위를 프리랜서에까지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평법은 개별적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근로자의 성격을 확장할 수 있음. 프리랜서는 “완전한 프리랜서와 종속적 근로자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직종"[1]으로 이를 성희롱 피해자의 범주로 넣음으로써 피해자와 기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강력한 가해자 제재조치가 될 수 있음

○ 예술인복지법 등 개정: 성폭력 피해로부터의 보호 조항은 제2장 6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성희롱 금지는 제6조 2 금지행위에, 성희롱 처벌은 제6장 처벌에 추가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법(가칭)」 제정: 프리랜서의 고용형태와 환경에 특화된 구제와 지원 방안을 제안할 수 있고 특히 프리랜서의 성희롱 피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할 수 있음.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취업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할 수 있음

나.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재구조화

○ 업무 분장 1: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①상담/지원의 조력과 지지자 역할과 ②신고/조사/심의/징계의 가해자 제재의 역할로 나누어 전자는 현재의 센터가, 후자는 문체부 산하 전담기구나 전담인력이 맡도록 함

○ 업무분장 2: 문화예술분야 피해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피해 신고부터 사실조사, 가해자 제재, 피해자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함

○ 시민단체 협력 모델: 든든이나 부산 예술인 상담센터의 사례를 볼 때 여성단체와 결합된 신고상담센터의 모델이 시민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좀 더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 예복 센터와 보라의 합병: 보라는 예술인복지재단 신고상담센터로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규모와 예산이 더 큰 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병합한 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 안에 두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위치시켜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지역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첫째는 문체부 예산으로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드는 안으로 예산 확보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지역의 반인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음. 다음으로는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성폭력센터에 문화예술인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임. 마지막으로는 지자체가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일부를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임

---

1) 델파이 조사

다. 표준계약서 개선

○ 현재는 대체적으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희롱만을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성희롱 사건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프리랜서 종사자에게 일어나고 있음.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을'이지만 제3자에게는 더 지위가 높을 수 있는, 연예기획사의 배우, 가수, MCN의 탤런트 등이 동료나 팬들에게 성희롱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기획사가 을이 제3자에게 한 성희롱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도 갑이 을에게 성희롱을 하고 을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오히려 피해자인 을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갑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도록 해야함. 이와 더불어 을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현재의 표준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권력관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성희롱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 예방교육 의무화: 모든 문화사업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일정한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1) 각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2)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근절서약서 및 예방교육이수 계획서 제출하게 한 후 3) 지원사업 결과 보고시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그 여부를 평가에 반영함

○ 현실적용 가능한 교육과 컨설팅을 접목: 문화예술분야의 작업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보다는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교육보다는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집단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강령) 등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슈 발생 시 공동체 내의 지원 체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이 접목된 형태로 구성함

○ 직급별 분리 교육: 성희롱·성폭력은 대체로 상하관계 속에서 권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상급자와 하급자를 구분하여 교육하여야 함. 상급자들에게는 자신이 가해자가 될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판단기준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하급자들에게는 성희롱·성폭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춤

○ 대면교육, 소규모 토론식, 간담회식 교육 방법: 예방교육은 개개인의 철학, 인식, 행동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실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현장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소규모 토론식, 간담회식으로 진행함

○ 상황/사례별 특수상황을 반영한 교육: 분야 상황/사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특수상황에 대한 내용구성을 하고 피해 당사자, 조력자, 조직 관계자, 조직 대표자, 상급자/선배, 동료, 지원기관 담당자 등 상황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퀴즈를 풀게 함

○ 이러닝: 예방교육은 집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나 집합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각 영역별 접근이 쉬운 매체나 플랫폼에 웹툰이나 동영상으로 제작, 업로드함

마.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방안

○ 문화분야 상담센터와 여가부 산하 성폭력지원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

○ 사립 미술, 무용학원 등에서 정규 교육기관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예술인들에게 신고상담센터 홍보

○ 사립 문화예술학원을 대상으로 신고상담센터의 정보를 주고 이들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배경 ····· 5
   가. 문화 분야 특수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 5
   나.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 8
3. 연구 내용 ····· 10
   가. 문체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현황 ····· 10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 운영 실태 조사 ····· 10
   다.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조사 ····· 11
   라. 문화분야 종사자의 작업 환경 및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방안 ····· 12
4. 연구 방법 ····· 13
   가. 선행연구 및 자료 조사 ····· 13
   나. 신고·상담센터 실태분석 ····· 13
   다. 상담센터 운영자 인터뷰 ····· 13
   라.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 14
   마. 전문가 델파이 조사 ····· 14
5.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 15

Ⅱ.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법·정책 ····· 17

1. 정책수립 배경 ····· 19
2. 정책 현황 ····· 20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 20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활동 ····· 25
   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토 ····· 30
3. 소결 ····· 34

Ⅲ.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 37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실태 분석 ····· 39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 39
   나. 신고 건수 ····· 39
   다. 피해자 및 가해자 ····· 41
   라. 피해 장소 ····· 43
   마. 피해 양태 ····· 43
   바. 신고 실태 ····· 45
   사. 지원 현황 ····· 47
   아. 소결 ····· 56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 58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 58
   나.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특수성 및 배경 ····· 61
   다. 문화계 특수성에 따른 문제제기의 어려움 ····· 72
   라. 피해지원체계 이용 경험 및 어려움 ····· 77
   마. 개선 요구 ····· 85

Ⅳ.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 ·· 87

1. 개요 ····· 89
2. 국제적 추세 ····· 90
3. 할리우드 계약에 도덕 조항의 확장 ····· 92
   가. 도덕 조항의 역사 ····· 93
4. 새로운 성폭력 정의 도입 ····· 97
5. 성희롱 법정(low threshold service anti-sexual harassment tribunal) 설립 ····· 100
6. 형법 개선: 징벌 배상제도를 적용 ····· 102
7.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기금의 성별 할당 ····· 105
8. 지자체 참여 ····· 106
9. 예술 대학의 성희롱 방지 노력 ····· 109

Ⅴ. **문화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 111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센터 운영자 조사** ····· 113
   가. 조사의 목적 ····· 113
   나. 조사 일정 ····· 113
   다. 상담센터 현황 ····· 114
   라.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현실과 한계점 ····· 117
   마. 시사점 ····· 130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 132
   가. 개요 ····· 132
   나. 1차 조사 내용과 2차 조사 결과 ····· 133

Ⅵ. **정책 제언** ····· 149

1. **문화분야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151
   가. 법 개정 방안: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 151
   나. 예술인복지법 등 개정 방안 ····· 153
   다.「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법(가칭)」
   제정방안 ····· 154
2.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재구조화** ····· 154
   가. 업무 분장 ····· 154
   나. 시민단체 협력 모델 ····· 157
   다. 예복 센터와 보라의 합병 ····· 157
   라. 지역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 158
3. **표준계약서 개선** ····· 159
4. **성희롱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 160
   가. 예방교육 의무화 ····· 160
   나. 효율성 제고 방안 ····· 161
5.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방안** ····· 163

■ **참고문헌** ····· 167

표 목 차

〈표 Ⅰ-3-1〉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현황 ····· 11
〈표 Ⅱ-2-1〉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 22
〈표 Ⅲ-1-1〉 신고사례 분석 항목 ····· 39
〈표 Ⅲ-1-2〉 센터별 신고 현황 ····· 39
〈표 Ⅲ-1-3〉 분야 및 센터별 신고 현황 ····· 40
〈표 Ⅲ-1-4〉 피해자의 성별 ····· 41
〈표 Ⅲ-1-5〉 가해자의 성별 ····· 41
〈표 Ⅲ-1-6〉 가해자의 지위 ····· 42
〈표 Ⅲ-1-7〉 동성 간의 성희롱·성폭력사례 ····· 42
〈표 Ⅲ-1-8〉 피해 장소(중복응답) ····· 43
〈표 Ⅲ-1-9〉 피해 양태(중복응답) ····· 44
〈표 Ⅲ-1-10〉 피해의 반복성 ····· 45
〈표 Ⅲ-1-11〉 복수의 피해유형 경험 실태 ····· 45
〈표 Ⅲ-1-12〉 접수년도별 분포 ····· 46
〈표 Ⅲ-1-13〉 사건 발생년도(중복응답) ····· 46
〈표 Ⅲ-1-14〉 신고 방법 ····· 47
〈표 Ⅲ-1-15〉 진행 상황 ····· 47
〈표 Ⅲ-1-16〉 신고시기별 사건 진행 현황 ····· 48
〈표 Ⅲ-1-17〉 심리상담 지원 현황 ····· 49
〈표 Ⅲ-1-18〉 분야별 심리상담 지원 현황 ····· 50
〈표 Ⅲ-1-19〉 반복성 여부와 심리상담 지원 현황 ····· 51
〈표 Ⅲ-1-20〉 의료비 지원 현황 ····· 51
〈표 Ⅲ-1-21〉 법률상담 신청 현황 ····· 52
〈표 Ⅲ-1-22〉 기타 요청사항(중복응답) ····· 52
〈표 Ⅲ-1-23〉 분야별 법률상담 신청현황 ····· 53
〈표 Ⅲ-1-24〉 법률상담 신청 사유(중복응답)〉 ····· 54
〈표 Ⅲ-1-25〉 법률상담 지원 결과(중복응답) ····· 55

〈표 Ⅳ-4-1〉 영국의 성범죄 성립 조건 ····· 98
〈표 Ⅳ-4-2〉 스웨덴 법무부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 (2018년 4월) ····· 99
〈표 Ⅳ-5-1〉 노르웨이 평등과 반차별 관련 법 개정안 관련 조항 주요 내용 ····· 101
〈표 Ⅴ-1-1〉 여가부 지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 115
〈표 Ⅴ-1-2〉 성폭력상담소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 115
〈표 Ⅴ-1-3〉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내용(중복 표시) ····· 116
〈표 Ⅴ-2-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리 ····· 146

그 림 목 차

[그림 Ⅳ-2-1] FIA 매뉴얼 표지 ····· 90
[그림 Ⅳ-8-1] 바르셀로나 Antimasclista의 돌봄 서비스 종류 ····· 10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배경 5
3. 연구 내용 10
4. 연구 방법 13
5.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폭력 피해는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30여년이 되어가고 그동안 성폭력 대응을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성폭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다른 분야보다 성폭력 피해가 더 심각함을 고민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성폭력의 발생 사례도 많을뿐더러 문화예술계의 직업과 업무의 특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해자 제재 중심이었던 성폭력 정책이 피해자 지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예방 다음으로 성폭력의 폐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 제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넓게 보아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정책에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미투가 본격화된 2018년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고 이후에 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 진흥원, 그리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문화예술인 전용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와 소통하고, 이들을 상담하여 문제를 파악하며, 필요하면 외부 상담, 의료, 법률 지원센터와 연결해주며 법적 소송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 지원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고·상담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현재의 시스템과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와의 차이를 이해하여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우리의 성희롱법은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프리랜서의 경우 피해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담센터가 여기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 주도의 상담센터 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의 유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신고·상담센터의 운영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담센터 외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적 개혁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 현재의 법령과 법적 관행 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보상금도 낮은 피해자측 성폭력 소송을 맡고 싶어하지 않고,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여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기소하는 비율이 낮다. 또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도 낮은데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증거를 피해자가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가해자는 구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유죄 선고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사재판은 돈이 들고 오래 걸리며 또한 피해자들은 법정공방에서 성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며 역시 이기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하거나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문화예술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많고 고용이 단기적이며 직업과 직업 사이의 이동이 많은 등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정기적인 채용이 적으며 또한 공식적인 채용절차보다는 인맥과 사적인 관계와 평판에 의한 채용이 많은 등 시장과 고용이 불안정하다. 또한 작업에 있어서도 위계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조직의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용환경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쉽게 일어나게 하고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는 달리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피해자는 홀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데 사건을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해자와의 공간분리가 어려워 피해가 반복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성범죄 발생예방의 책임을 지는 조직이 없어 지금의 성희롱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피해자 지원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인력양성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화작업자와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성격과 현장의 분위기와 관행 등이 모두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및 이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수연 등, 2018).” 특히 도제식의 권위적인 교육환경은 교육현장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이를 신고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술 교육 시스템의 방식 전환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교육시스템이 아닌 사립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의 경우 공공교육기관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범죄 피해지원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성범죄의 피해에 취약하다. 예술인이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오랜 견습기간을 고려할 때 예비예술인의 성적 인권보호도 피해자 지원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피해자 지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보완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이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신고상담센터의 현황 및 운영 분석, 피해자 구제정책 현황, 피해 실태 조사 재분석, 피해자 지원정책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정책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문화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두드러진 이유로 분야 특수성이 언급되었다. 그간 논의되었던 분야 특수성을 종합하면 산업 내 인식, 비대칭적 권력 구조, 문화 분야의 폐쇄성 및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부족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문화 분야 특수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1) 산업 내 인식

그동안 문화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에 관해서는 산업 내 인식 요인이 주요하게 꼽혔다. 미투 운동 직후 이뤄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64.7%는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문화 분야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보았다.[1] 영화 분야의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남성 중심적 산업과 문화,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의 악순환이 성희롱·성폭력 발생요인으로 지적되었다.[2]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자유분방함, 욕망에 대한 추구, 일탈적 행위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 예술계에서 남성 주체에 의한 성애화된 욕망, 윤리적·범법적 일탈에 대한 허용이 예술이라 오인되었다는 점이 지목되었다.[3] 이같이 왜곡된 산업 내 인식과 분위기는 예술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1) 국가인권위원회 등(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활동 결과 종합발표 요약자료, 10쪽
2) 영화진흥위원회(2020).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176~178쪽

예술 기능을 전수하는 교육 현장, 문화 콘텐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미디어 등을 통해 분야 특수성이 산업 내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기존 연구 등에서 문화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으로 지적된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분위기와 실태조사 응답 결과의 차이는 두 가지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인식 수준과 집단 인식 수준의 격차다. 문화 분야 구성원 다수가 개인 차원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졌거나 산업 내 성인지 인식 수준을 높게 평가하더라도, 집단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계 고유의 성 관념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소수 권력자가 가진 왜곡된 성 윤리가 그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집단의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문화예술계에서 소수 권력자의 성향은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을 뛰어넘어 집단의 인식으로 과대 대표되기도 한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 역시 소수 권력자의 왜곡된 성 윤리가 산업 내 분위기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비대칭적 권력 구조

실태조사와 기존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문화 분야의 또 다른 성희롱·성폭력 요인은 비대칭적 권력 구조다. 문화 분야의 비대칭적 권력 구조는 교육 과정과 입직 과정, 산업 내 활동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교육 과정, 실제 산업이 촘촘하게 맞물려있는 구조에서[4]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권력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보고에서도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55.7%가 '실력보다 학벌이나 사제 관계 등이 중시되는 문화예술계 진입 경로'를, 51.0%가 '고용 형태 등 신분상 열악한 위치'를 성희롱·성폭력 발생요인으로 꼽았다.[5]

문화예술계 세 개 분야 실태조사에서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요인을 비대칭적 권력 구조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성폭력 피해 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문항이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성폭력 피해(또는 목격) 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응답자의 45.6%가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라고 답했으며[6], 출판 분야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1차 오픈테이블 자료집 – 박소현, 성평등한 예술지원정책 상상하기, 35쪽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테이블 자료집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가?. 75쪽 - 장은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 문학분야 성평등 팩트체크
5) 국가인권위원회 등(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 17쪽
6)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43쪽

에서는 응답자의 48%가 '가해자와 계속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7]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이었던 방송·음악·만화·패션 분야 모두에서 '소속 분야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 라는 답변이 응답 비율 상위 3위 내 항목으로 꼽혔다.[8]

이러한 응답은 대체로 상위 권력자인 가해자가 업계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즉 극심하게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가해 행위가 보다 쉽게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문화 분야의 권력을 형성하는 요인은 일반 사회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요인보다 복합적이다. 일반 사회(직장)에서의 권력 격차는 주로 직급이나 연차, 소속 기관에서 비롯하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이외에도 활동 경력을 비롯해 소속 직군, 대중적 인지도 및 인기도, 수상 경력,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수혜 여부, 경제력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다층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문화 분야 내 권력 격차로 인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종사자는 활동 기회, 생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상대적 강자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된다. 이는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연결된다.

3) 문화 분야의 폐쇄성 및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부족

그동안 전문 예술 교육의 도제식이고 폐쇄적 사제·선후배·동료 관계가 예술 활동의 경력을 규정한다는 점은[9] 문화 분야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이유로 지목되어왔다. 이에 더해 문화 분야는 개인이 전문 예술인의 범주에 들기까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상당 수준 이뤄져야 하는 분야다. 때문에 분야 진입 과정에 들여야 하는 노력만큼 한 번 집단에 속했을 때 소속감과 자부심은 높아지지만, 사회 제 분야에 비해 이직 등 타 분야로의 이동이 어렵다. 이러한 문화 분야의 폐쇄성을 성희롱·성폭력 발생 원인으로 꼽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역시 50.7%에 달했다.[10]

문화 분야의 폐쇄성과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부족 문제 역시 세 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46.3%와 33.3%가

---

7) 문화체육관광부(2019). 출판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37쪽
8)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70쪽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1차 오픈 테이블 자료집, 36쪽
10) 국가인권위원회 등(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 17쪽

각각 '피해자를 보호할 법제도가 없음'과 '공연계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공적 단체가 없음'을 성폭력 발생 요인으로 꼽았다.[11] 출판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51.9% 성폭력 발생 원인으로 '출판계 인적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꼽았다.[12] 성폭력 피해 발생 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62.0%가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45.6%가 '문제제기 후 좋지 않은 소문, 비난, 따돌림을 당할까봐'를 꼽았다.[13]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나왔다.[14] 출판 분야에서는 '가해자와 계속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소문이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해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등의 응답이 응답자의 67%에 달했다.

폐쇄적인 집단에는 필연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집단 이익을 위해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업계 내 평판 때문에 종사 분야를 이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희롱·성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일반 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안되어있는 기존 법체계를 고려하면, 폐쇄적인 문화 분야에서 종사자의 성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사실상 부족한 수준이다.

나.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의 사각지대로는 산업이탈 및 2차 피해 방지책 미비와 예비예술인에 대한 지원책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의 산업 이탈과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정책은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정교하게 고안되지 못했다. 일반 직장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직장 종사자의 51%는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종사자 중 12.8%는 경력단절을, 24.2%는 이직을 경험했다.[15] 좁고

---

11)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42쪽
12)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해당 내용을 묻는 문항이 없었음
13)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43쪽
14)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70쪽, 122쪽, 174쪽, 219쪽
15) 한국노동연구원(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고용영향평가브리프, 4(연구책임: 김종숙), 5쪽

폐쇄적인 문화 분야 종사 환경을 고려한다면 분야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일반 직장에서의 '비자발적인 고용 변동 및 이직' 대신 '산업 이탈' 내지 '경력 단절'을 겪을 확률이 높다. 실제 피해 신고 이후 산업을 이탈한 예술인과 관련하여 수치가 측정된 바는 없으나,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문화 분야에서 피해 종사자가 산업을 이탈하는 비중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논의되었던 산업 복귀 지원책, 가해자 및 주변인으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책,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은 예술인인권법의 제정의 미뤄지면서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다.[16]

두 번째로는 예비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원책의 미비 문제가 있다. 문화 분야는 예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에서부터 대학 교육 과정, 산업으로의 입직, 해당 분야 내 활동 등 각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특히 문화 분야는 권력 집단이 대학 및 교육기관을 구심점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형성되는 사제관계, 선후배관계 등에서 비롯하는 네트워크는 예술계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예비 예술인 단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예비예술인 양성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관리 책임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17]와 교육부[18]로 나뉘어있다보니 예비예술인의 성 인권에 대한 책임 관할 소재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예체능 분야의 교육 기관 중 정규 교육 기관이 아닌 학원 등 사설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예비예술인 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해당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외에 순수예술 등 분야 내의 법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예비예술인이 예술 기능 교육 과정에서 마주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에서 보호할 명확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태다.

---

16) 변영건·이승엽. (2020).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예술경영연구, 54, 162쪽.
17)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8) 일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3. 연구 내용

가. 문체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현황

1)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수립 배경

2)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내용

3) 시사점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 운영 실태 조사

1) 신고·상담센터의 지원 체계 분석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센터에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사건처리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다.

2) 신고·상담 사례를 통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제재 현황 분석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과 지원 현황, 가해자 제재 현황 등을 분석한다.

3) 센터 운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분석을 통해 센터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표 Ⅰ-3-1〉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현황

구 분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예술인 복지재단)	'보라' (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든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운영주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여성영화인모임 영화진흥위원회
개소시기	'18. 6. 20.~	'18.3.29.~	'18.3.1~
대상	예술인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	영화 관련 종사자
공간	신고·상담의 독자적 공간 ※ 복지재단 건물 4층 독립공간 (대학로)	신고·상담의 독자적 공간 - 방음설비 상담실, 녹화 장비 ※ 콘진원 분원 1층(역삼)	독자적 신고·상담 공간 ※ 여성영화인모임 건물(종각)
자문위원회	상담, 의료, 법률 전문가로 구성	상담, 의료, 법률 전문가로 구성	성평등, 법률, 의료, 영화 전문가로 구성
인력	·전문 상담사 2명 ·변호사 1명(주3일)	·전문 상담사 1명 ·변호사 1명 (기존 상생센터 업무와 병행)	·전문 상담사 2명 ·변호사 1명 ※ 법률자문단 별도 운영
지원내용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소송지원(여가부 기준 준용)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
예방교육	·예술계 전문 강사 양성(여가부, 양평원 협업) ·성폭력 예방교육(양평원 협업) ·지원사업 대상자 예방교육 진행	·지원사업 대상자 예방교육 진행 ·콘텐츠 분야 기업 및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 진행	·영화계 전문 강사양성 자체 진행 ·영진위 제작지원의 경우 예방교육 필수 ·영화현장, 영화 관련 사업체 예방교육 진행
사건처리 시스템	·해바라기센터 연계(산부인과 긴급검사, 수사 지원 등) ·인권위(피해자 조사 등) 연계	·해바라기센터 연계(산부인과 긴급검사, 수사 지원 등) ·인권위(피해자 조사 등) 연계	·자체 사건 처리 절차 존재 (영화계 자체 조사위원회, 합의, 권고, 영화계 공론화 가능)

다.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조사

1)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제재 관련 제도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계약 관행과 성희롱 처벌에 관련된 법조항을 본다.

2) 문화예술 직업 특성과의 관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검토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성폭력 규정 및 징벌적 형법 규정의 적용 사례를 본다.

3)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 조사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교육 방식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의 사례를 본다.

4)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성희롱 피해보상을 위한 법조항 및 행정적 구제 절차를 조사한다.

라. 문화분야 종사자의 작업 환경 및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방안

1) 피해자 구제·보호,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의 실질적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가) 성희롱·성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등
나) 피해자 지원과 손해배상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다) 가해자의 실질적 제재를 위한 대안적 방안

2)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 방안

가) 피해자 지원 업무와 가해자 제재 업무 분리 방안
나) 추가적 피해자 지원 방안
다) 지역 차원의 신고·상담센터 개설 방안
라) 피해자의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 방안

3) 성희롱 예방 교육 개선 방안

가) 예방교육 제도화 방안
-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법 및 관리 방안

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 효율성 있는 교육 형태 개발
- 문화분야 다양한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방안

4.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및 자료 조사

1) 관련 법·제도 분석

- 성희롱·성폭력 관련법
- 예술인복지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발의안)
- 예술인 표준계약서

2) 해외 연구논문 검토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해외논문 분석

3) 해외 성희롱 피해 지원 정책 및 관련 사이트 분석

나. 신고·상담센터 실태분석

중앙과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분야 신고상담 자료를 분석한다.
- 예술인복지재단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라
- 부산성폭력센터 (부산문화재단 위탁)

다. 상담센터 운영자 인터뷰

4개 신고·상담센터(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부산성폭력센터) 운영자들을 통해 운영 현황, 한계 및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라. 피해자 및 조력자 심층면접

1) 인원: 총 13명

문화분야 성범죄 피해자 9명, 조력자 4명

2) 방법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대책위원회를 통해 섭외하거나 주변의 피해 경험자를 찾고, 조력자는 성폭력 예방강사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는 개인별로, 조력자는 집단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마.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화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법제도를 이해하는 상담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문화 및 인권분야 연구자를 패널로 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1) 패널의 구성

- 변호사 및 법학 교수 6인
- 문화예술분야 상담전문가 및 상담센터 운영자 7명
- 문화·인권 분야 연구자 4인

2) 조사 일정

가) 1차 조사

2020년 10월 12일 ~ 10월 18일

나) 2차 조사

2020년 10월 19일 ~ 10월 25일

3) 조사 내용

가) 1차

포괄적 피해지원,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그리고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의 세 영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한다.

나) 2차

성희롱 법제도, 피해자 손해배상, 기타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의무화,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 센터 정비 방안, 지역 차원 신고·상담 센터 운영에 대한 선택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한다.

5.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가해자 제재는 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방안이 되지만 이보다는 사회 정의의 구현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법과 의료 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상담 등을 통해 심신의 피해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복귀, 지속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문화분야[19]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법·정책

1. 정책수립 배경 19
2. 정책 현황 20
3. 소결 34

19) 여기서의 '문화분야'는 문화예술계를 통칭하는 개념임.

1. 정책수립 배경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은 2018.3.8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하 '2018년 대책'이라고 함)의 한 부분으로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추진배경으로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그간 감춰져 왔던 문화예술, 방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고용관계에 의한 직장 뿐 아니라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예술계 등의 사제, 도제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이 긴요"함을 제시하고 있다[20].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관련 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17.11.28)',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18.2.27)',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7.11.14)'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해 왔고, 예술분야, 영화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성폭력실태 시범조사('17.5.-'18.3) 진행과 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강화가 진행되었다. 관련 대책이 공공부문과 고용관계에 의한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사업장 기반이 대부분인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성폭력실태 시범조사와 종사자 대상 성평등교육으로 종합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닌 그 대책의 단위과제 수준의 정책이 진행됨으로써 정책의 초기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의 정책집행과 성과가 민간부문에 파급되도록 하려는데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분야 정책집행의 파급을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가 많다는 점,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성희롱·성폭력이 학교단계 등 예비예술가 양성과정에서부터 발생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화예술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는 점[21] 때문에 정부정책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채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2018년 대책이

---

20) 관계부처 합동(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3.8., p.1.
21) 여성가족부(2017),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pp.8-9.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의 근절을 최초로 예정하여 정책대상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폭로는 관련 대책이 수립된 2018년 이전부터 있어 왔다. 2016년 트위터를 중심으로 #○○계_성폭력 해시태그 고발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오타쿠_내_성폭력, #문단_내_성폭력, #미술계_성폭력에 이어서 출판, 사진, 디자인, 전시 기획, 웹툰, 영화 등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22].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23] 등이 이어져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하에서는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정책현황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조사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권고, 신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정책 현황

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1) 개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되었다(2018.3.8.). 동 대책의 추진배경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그동안 감춰져 왔던 문화예술, 방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고용관계에 의한 직장 뿐 아니라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였던 문화 예술계 등의 사제, 도제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이 긴요"하다는 전제하에 권력관계 하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이 수립,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

---

22) 이성미(2019), "#문화예술계_성폭력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정책활동의 성과와 한계",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2019.8.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

23) 국회의원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2017),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2017.1.1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2019.8.21.

하고 있다[24].

동 대책은 기업, 기관 등 사업자 기반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이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동 대책의 추진방향은 국민 모두가 존엄과 성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4대 전략, 6대 대과제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문화예술계 관련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6대 과제는 1. 직장에서의 신고활성화 및 대응체계 강화 2.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 3.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4. 적극적 수사대응 및 가해자 엄중처벌 5.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6. 추진체계 강화이다.

24) 관계부처 합동(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3.8.

〈표 Ⅱ-2-1〉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목표	국민 모두가 존엄과 성평등을 누리는 사회
전략	◈ (신고)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지원) **실질적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처벌) **가해자 엄중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 (예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감수성 제고**
기업·기관 (사업장 기반)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강화 2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3 감독 및 제재 강화
문화 예술계 (비사업장 기반)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2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 4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피해자 지원	1 성폭력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 2 신고 후 발생되는 2차 피해 상황에 대한 조력강화 3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적극 수사·가해자 처벌	1 적극적 대응 및 엄정 수사 2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검토 3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1 문화예술 분야 등 예방교육 강화 2 직장 내 예방교육 내실화
추진체계	1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역할 강화 2 민·관 협력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3.8.

2) 주요 내용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과제 2. 문화예술계 특별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5].

가) 특별조사단 및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여가부가 협력하여 운영하게 될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

나)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조치 강화

예술치료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등을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인력, 해바라기센터 상주 경찰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진행해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극 등 예술인이 주로 활동하는 곳의 해바라기센터와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술인 피해자를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25) 보도자료,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 정부 합동「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발표 -, 2018.3.8.

다) 문화예술 등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한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한다.

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음악, 만화, 이야기산업, 패션산업 등)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문체부는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콘텐츠 마련

문체부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마련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예술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예술계 전반의 성 인식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활동

1) 활동현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두 개 조직 즉,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라고 함)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함) 활동이 조망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의 공동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미투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18.3.22.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직이다[26].

또 하나인 '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 의견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내부위원 2명의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8년 3월-'19년 6월까지 활동하였다[27].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문제의 확인과 조사에 집중했던 반면에, 대책위원회는 1년 3개월동안 활동하면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검토, 이행점검, 추가 과제 발굴과 함께 3회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우선 특별조사단의 주요활동을 보면. 신고사건 조사, 문화예술계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정책과제 검토를 들 수 있다[28]. 신고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 신고사건 36건에 대하여 31건에 대한 피해자 인터뷰 및 기초조사를 실시, 5건에 대하여 인권위 진정접수가 이루어져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가 종결되었다.

문화예술계 간담회 및 토론회는 문화예술계 연극, 미술, 영화, 무용, 디자인 등 각 분야 23개 단체와의 간담회 등 총 28회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설문조사는 총 24개 기관 및 단체(설문대상 6,411명, 응답자 4,380명)를 대상으로

---

2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6.19.
2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권고문 발표", 2018.7.2.
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6.19., 별첨 1.

했으며, 구체적으로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계 기관 및 단체 9, 예술계 대학 2, 문화예술계 협회 및 단체 13개였다.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이었으며, 여성응답자 2,478명 중 57.7%(1,429명)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책과제 검토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제시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신고상담센터는 2018.3.12.-6.19까지 100일간 운영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통해 서울해바라기센터에 위탁운용하였다. 동 센터의 활동내용으로 신고접수, 상담지원(심리상담 포함), 수사지원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정신건강의학과), 유관기관 협력활동, 예방교육을 담당하였다[29]. 신고접수 활동을 보면, 온라인, 전화, 내방을 통해 175건(3.12-6.15)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종료 67건, 지속지원 69건, 조사의뢰(수사/특별조사단) 39건으로 종결되었다. 신고된 사례는 상담지원, 수사, 법률지원, 의료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동 센터 활동결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특별신고상담센터라는 공식채널을 통해 말하기(speak out)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성과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실적인 법·제도적 한계내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들의 문화예술활동을 금지할 방법이 없는 문제, 별도의 신고상담창구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 향후 문화예술계 영역별·지역별 구조적 여건평가 및 개선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30].

한편 대책위원회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동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검토, 이행점검, 추가 과제 발굴 등이다.

동 위원회는 월 2-3회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실행 대책 마련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3회의 권고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과 이행점검등 관련 대책의 구체적인 추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

2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 6.19., 별첨 2.

3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 6.19., 별첨 2.

2) 정책과제 권고현황

다음은 특별조사단 권고와 대책위원회가 내린 3차례의 권고내용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특별조사단이 권고한 정책과제는 총 8개로 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의 위원 자격 제한 및 관련 시상 배제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⑥「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국가의 성희롱 예방 의무 규정 ⑦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의무 및 계약해지 등 관련 조항 규정⑧ 정부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31].

대책위원회의 1차 권고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의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32].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① 성평등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②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③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④「예술인복지법」 제6조2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과 유사한 성희롱금지 규정 신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⑥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⑦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가해자 심사위원 자격제한 ⑧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상 정부시상 추천 배제 ⑨ 공적지원 신청, 공공사업 참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⑩ 분야별 대상별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⑪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조력자 양성 ⑫ 성인지감수성 교육,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 나아가 국민전체에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⑬ 전문가 참여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설문 구성 및 정례적 진행이다.

2차 권고는 ①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적극 지원 ②「예술인복지법」 상 불공정행위 적극 해석으로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③ 피해자 관점의 (가칭) '문화분야 통합 신고상담센터' 운영 준비 ④ 전문가 풀과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업무 총괄 부서 및 인력 구성 ⑤ ⑥ 체육분야 ⑦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 금지와 책임규정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⑧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방안 마련 ⑨ 지방자치단체에 성희롱·

---

31) 문화체육관광부(2020), 내부자료, 2020.2.11. 기준.

32)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2018.7.2.

성폭력 예방대책 홍보 및 자료 공유 ⑩ 지역문화재단의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협력 ⑪ 문체부 후원의 지역 문화사업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적용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3차 권고는 ① (가칭) '성희롱·성폭력 방지 위원회' 설치 ②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③ 문화예술계, 체육계 신고처리시스템 즉시 마련 ④ 신고처리시스템과 신고상담센터 분리운영, 피해자 심리상담 및 복귀 등 적극 지원 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⑥ 성희롱 행위자 공적지원 배제 ⑦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이행 등 통합적 관리 ⑧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체제 구축 및 점검 ⑨ 문화예술체육계 후속세대 및 관계자로 교육대상 확대 ⑩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⑪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대책 마련 ⑫ 성차별적 구조개선 및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조사계획 수립·실시를 내용으로 한다.

3) 정책과제 추진결과

정책추진 결과는 1, 2차 권고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종합한 3차 권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민관 거버넌스 강화

이 대책은 대책위원회의 ①(가칭) '성희롱·성폭력 방지 위원회' 설치와 ②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권고에 대응한 것으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는 성평등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해왔다. 문체부에서는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소를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2019년 7월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0년 1월 22일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다.

나) 피해신고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적극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이 대책은 ③문화예술계, 체육계 신고처리시스템 즉시 마련, ④신고처리시스템과 신고상담센터 분리운영, 피해자 심리상담 및 복귀 등 적극 지원 및 ⑤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권고에 부응하는 것으로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시스템에 접근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후 직업 복귀가 어렵고 문화계 내부의 권력구조에 따른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문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6월 1일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예술인보호관 신설, 구제 및 시정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을 개정하여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심사대상에 성희롱이 포함된다는 것을 홍보하며, 성희롱 행위 중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문체부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20.6.2)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20.11.30)을 개정하였다.

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참여 배제

⑥성희롱 행위자 공적지원 배제 권고와 관련하여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행정규칙)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교부취소 조항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명기하여 개정('20.2.27.)하였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제외하기로 하였다('18.12.4).

⑦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이행 등 통합적 관리 권고안에 대해서는 대중문화(4개), 만화(6개), 출판(5개), 공연예술(4개), 미술(9개), 애니메이션(4개), 이스포츠(2개)의 34개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의무 및 계약해지 등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분야별(영화, 방송, 저작재산권, 게임 등)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라)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⑧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체제를 구축 및 점검하라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예방강사 양성을 추진하였는데 1기('18)에 19명, 2기('19)에 17명, 3기('20)에는 15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19년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력 교육과정 운영하고 성평등 인력(조력자)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개발('19.12월)하여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2회, 현장전문가 대상 1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계 예방교육 콘텐츠를 '19년 9종, '20년 6종 개발하였다.

⑨문화예술체육계 후속세대 및 관계자로 교육대상 확대하라는 권고안 관련해서는 예술현장 및 예비예술인(예중, 예고, 예대)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9년에는 3개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에서 총 8,382명을 교육하였다.

마)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및 공표

⑩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의 권고는 예술인권리보장법(발의안) 제19조에도 '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로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례화를 추진중이다. ⑪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대책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18년 공연예술, 출판, 대중문화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 및 결과 발표('19.9.10)하였다. '20년에는 2019년에 시작한 「2019년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⑫성차별적 구조개선 및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조사계획 수립·실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방법 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문화분야 실태조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검토

1) 개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고 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33], 21대 국회에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발의 되었다[34][35].

---

33) 제20대 국회에서 김영주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제안(2019. 4. 19.)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2019. 6. 24.)·의결(2019. 5. 7.)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2019. 5. 20.) 후 소위에 계류되었으나 임기 만료(2020. 5. 29)로 폐기되었음.

34)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43,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6.1.

동 법 제정안은 총 6개 장과 44개의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등 총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장에서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행위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6장에서는 피해 등의 조사 및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 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36].

동 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며,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술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7].

2) 주요 내용

가)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

3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예술현장 의견수렴 - 9.11. 온라인 공청회 개최, 문체부 페이스북 등 생중계 - , 2020.9.11.

36)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43,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6.1., 제안이유.

37) 임재주(202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20.7.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조).

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제15조).

다)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수립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예술인 권리구제 위원회 및 예술인 보호관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예술인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

마)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시행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여, 권리보장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3) 성희롱·성폭력 규정 관련 검토

우선 예술인의 정의관련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원안에는 예술인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예술인복지법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계약을 맺은 자로서의 예술인의 의미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 법 수정안에서는 동일한 용어를 관련 법체계내에서 다른 의미로 정의함으로써 가져오게 될 혼란을 우려하여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인을 바라보는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며, 예술인보장법상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라는 기본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예술인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예술인, 여러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예술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취약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38]. 이에 대해 예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39].

또 하나 예술인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권리보장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가 구제기구로서 심의·의결기구라면 예술인보호관은 사건조사 및 관련 사무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예술인보호관은 양 위원회의 공동사무국과 조사기구의 역할로서 예술인권리침해 및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구제사건에 대한 종결, 두 위원회 사무처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두 위원회와 문체부사이에서 예술인보호관의 위상정립이 중요하며, 문체부 소속이지만 개방직 직위로 운영하여 민간에서 예술인보호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보호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에는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신고사실의 조사, 조사절차의 종결, 구제절차의 종결에 대한 권한을 예술인보호관에서 문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다.

---

38) 박선영(2020),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21대 발의 「예술인권리보장법(안)」 관련 예술인 의견수렴 공청회자료집, 2020.9.11., pp.9-10.

39) 임재주(202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20.7., p.14.

예술인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예술인의 구제과정을 위한 실행기구가 아닌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40].

3. 소결

이상에서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내용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조사단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권고, 신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계기로 2018년 정부정책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근절대책 발표, 특조단과 예방대책위원회의 권고와 과제이행 등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바쁘게 움직여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예술계가 프리랜서 비중이 높고, 성희롱·성폭력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의 수립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해야 하면서도 앞으로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언급할 수 밖에 없다.

향후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집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정책과제들이 단순한 양적 결과에 치중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긴 호흡을 통한 정책성과와 문제점,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 조항 중 중요한 개념인 예술인의 정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하며,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라는 기본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는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는 여가부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문체부 센터간 지원기준의 표준화와 연계체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센터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 공유 및 집계방식 통일, 지원기준 세분화, 매뉴얼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40) 박선영(2020),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21대 발의 「예술인권리보장법(안)」 관련 예술인 의견수렴 공청회자료집, 2020.9.11., pp.12-13.

예비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의 성희롱 고충상담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학교내 상담기구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약한 경우 외부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전담, 지원하는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체부와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1].

41) 이미정 외(2019),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227.

Ⅲ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실태 분석 39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58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실태 분석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신고·상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3.1.~2020.5.31.까지 4개의 지원센터(든든, 보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부산 성폭력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분석하였다. 신고사례는 피해자의 신상과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진이 신고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신고사례의 주요 분석문항별로 각 지원센터에서 직접 코딩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았다. 다만, 각 신고센타의 자료 제공 방침에 따라 분석문항 중에서도 입력하지 않아 결측처리된 항목들이 각각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분석결과 표에 따라서는 총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읽어야 한다.

〈표 Ⅲ-1-1〉 신고사례 분석 항목

유형	주요 내용
신고사례의 기본 개요	· 접수년도 · 사건 시기, 장소 · 활동 분야
관련자 정보	· 피해자 성별, 활동분야, 피해발생 기간 · 가해자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원 내용	· 신고 방법 · 진행 상황 · 의료비/심리상담/법률상담 지원 여부 · 법률상담 신청사유, 법률상담 내용, 법률지원 결과 · 기타 요청사항

나. 신고 건수

4개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는 총 297건이다. 이 조사에서의 '신고'란 기관을 통한 피해지원 요청 등 사건처리 의사를 표시한 건을 뜻하고, 단순 상담, 정보 문의 건은 제외한 것이다.

〈표 Ⅲ-1-2〉 센터별 신고 현황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케이스 수	119 (40.1)	25 (8.4)	83 (27.9)	70 (23.6)	297 (100.0)

문화예술 분야별 신고 분포는 아래와 같다. 전체 신고사례 중 피해자의 활동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73건인데 영화>미술>문학 등의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각 분야별 예술인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영화, 미술계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 분야에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과 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표 Ⅲ-1-3〉 분야 및 센터별 신고 현황

분야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미술	-	-	21 (28.8)	11 (19.6)	32 (11.7)
연극	1 (0.8)	1 (4.0)	11 (15.1)	7 (12.5)	20 (7.3)
영화	111 (93.3)	2 (8.0)	4 (5.5)	5 (8.9)	122 (44.7)
음악	-	-	6 (8.2)	6 (10.7)	12 (4.4)
무용	-	-	2 (2.7)	4 (7.1)	6 (2.2)
국악	-	-	2 (2.7)	14 (25.0)	16 (5.9)
문학	-	-	22 (30.1)	3 (5.4)	25 (9.2)
만화	-	6 (24.0)	2 (2.7)	-	8 (2.9)
애니메이션	-	2 (8.0)	-	-	2 (0.7)
연예	-	1 (4.0)	2 (2.7)	-	3 (1.1)
방송	7 (5.9)	4 (16.0)	1 (1.4)	-	12 (4.4)
게임	-	3 (12.0)	-	-	3 (1.1)
캐릭터	-	1 (4.0)	-	6 (10.7)	7 (2.6)
기타	-	5 (20.0)	-	-	5 (1.8)
전체	119 (100.0)	25 (100.0)	73 (100.0)	56 (100.0)	273 (100.0)

다. 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자의 성별은 4개 센터 모두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4〉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 성별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여성	117 (99.2)	25 (100.0)	79 (95.2)	69 (98.6)	290 (98.0)
남성	1 (0.8)	-	4 (4.8)	-	5 (1.7)
복수피해자	-	-	-	1 (1.4)	1 (0.3)
전체	118 (100.0)	25 (100.0)	83 (100.0)	70 (100.0)	296 (100.0)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의 비율도 5.7~24.3%도 나온다는 점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 문화예술계의 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Ⅲ-1-5〉 가해자의 성별

가해자 성별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남성	87 (75.7)	2 (100.0)	-	66 (94.3)	155 (82.9)
여성	28 (24.3)	-	-	4 (5.7)	32 (17.1)
전체	115 (100.0)	2 (100.0)	-	70 (100.0)	187 (100.0)

가해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2개 센터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사제지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스승의 지위에서 가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순위는 업무관계자, 동료나 친구로 나타났다. 센터별로 양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제지간, 업무관계자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성폭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배, 기획자나 감독 등의 상사, 동료, 사제, 업무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관련자의 비율이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6〉 가해자의 지위

가해자의 지위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선배	-	-	5 (6.8)	5 (7.1)	10 (7.0)
기획자나 감독, 상사	-	-	2 (2.7)	12 (17.1)	14 (9.8)
동료나 친구	-	-	14 (19.2)	5 (7.1)	19 (13.3)
사제	-	-	16 (21.9)	35 (50.0)	51 (35.7)
업무관련 관계자	-	-	21 (28.8)	2 (2.9)	23 (16.1)
연인.전연인	-	-	6 (8.2)	1 (1.4)	7 (4.9)
가해자가 예술인에 해당하지 않음	-	-	4 (5.5)	9 (12.9)	13 (9.1)
기타	-	-	5 (6.8)	1 (1.4)	6 (4.2)
전체	-	-	73 (100.0)	70 (100.0)	143 (100.0)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인 경우는 34건으로 모두 여성인 경우만 확인되었다. 34건의 신고사례 중 성추행이 신고된 경우가 85.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Ⅲ-1-7〉 동성 간의 성희롱·성폭력사례

사건분류	빈도	비율
언어적 성희롱	3	8.8
성추행	29	85.3
강간. 강간미수	1	2.9
기타	1	2.9
전체	34	100.0

라. 피해 장소

피해장소는 작업실 또는 업무관련 장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공연장, 숙소, 교육기관 〉 회식자리 순이었다. 피해자, 가해자의 집 등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응답도 4순위로 나타났다. 작업실 또는 공연전시 장소와 회식자리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가 높은 순위인 것을 보면 업무관련 관계에서의 피해 발생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중 학교 등 교육기관이 25건에 달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가해자와의 관계 중 사제지간이 34%에 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표 Ⅲ-1-8〉 피해 장소(중복응답)

피해장소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음식점	-	-	1 (1.6)	1 (1.3)	2 (1.1)
공연장, 관계자 숙소, 교육기관	11 (22.4)	-	9 (14.5)	21 (27.3)	41 (21.6)
전화, SNS 등 통신수단	1 (2.0)	-	6 (9.7)	3 (3.9)	10 (5.3)
작업실, 업무 관련 폐쇄장소	9 (18.4)	1 (50.0)	17 (27.4)	22 (28.6)	49 (25.8)
해외	-	-	3 (4.8)	-	3 (1.6)
개인적 공간	10 (20.4)	-	10 (16.1)	13 (16.9)	33 (17.4)
회식자리	16 (32.7)	1 (50.0)	13 (21.0)	11 (14.3)	41 (21.6)
기타	2 (4.1)	-	3 (4.8)	6 (7.8)	11 (5.8)
전체	49 (100.0)	2 (100.0)	62 (100.0)	77 (100.0)	190 (100.0)

마. 피해 양태

피해 양태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추행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언어적 성희롱〉 강간 및 강간 미수〉 신체적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간 미수는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63건, 성추행은 128건이 신고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문화예

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각한 강간, 성추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8년부터 1년간 고용노동부 익명 성희롱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강간의 비율이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화예술계에서의 강간 등 성폭력의 발생률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신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하여 코딩하였음에도 성추행이 128건으로 297건의 신고사례 중 43.1%에 달하는 것도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센터별로 살펴보면 든든은 성추행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보라는 언어적 성희롱이 높게 나타났다. 예복은 강간 등과 성추행이 비슷한 수준으로, 부산센터는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이 높은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Ⅲ-1-9〉 피해 양태(중복응답)[42]

사건분류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언어적 성희롱	18 (15.5)	6 (42.9)	19 (20.7)	33 (34.0)	76 (23.8)
신체적 성희롱	6 (5.2)	2 (14.3)	14 (15.2)	3 (3.1)	25 (7.8)
성추행	71 (61.2)	-	22 (23.9)	35 (36.1)	128 (40.1)
강간, 강간미수	19 (16.4)	1 (7.1)	24 (26.1)	19 (19.6)	63 (19.7)
2차 피해	-	-	1 (1.1)	-	1 (0.3)
기타	2 (1.7)	5 (35.7)	12 (13.0)	7 (7.2)	26 (8.2)
전체	116 (100)	14 (100.0)	92 (100.0)	97 (100.0)	319 (100.0)

신고내용이 2회 이상의 피해로 구성된 경우는 전체의 39.8%를 차지하여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반복적 피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42) 든든의 자료는 피행유형을 중복응답하지 않고 해당 신고사례의 대표 피해유형만 선정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표 Ⅲ-1-10〉 피해의 반복성

피해기간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1회	85 (72.6)	1 (4.0)	22 (26.8)	2 (2.9)	110 (37.4)
2회 이상	26 (22.2)	3 (12.0)	40 (48.8)	48 (68.6)	117 (39.8)
확인불가	6 (5.1)	21 (84.0)	20 (24.4)	20 (28.6)	67 (22.8)
전체	117 (100.0)	25 (100.0)	82 (100.0)	70 (100.0)	294 (100.0)

하나의 신고사건에서 복수의 피해유형이 보고된 경우를 분석해본 결과, 신고사건 중 14.5%가 복수 유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1〉 복수의 피해유형 경험 실태[43)]

피해유형의 갯수	빈도	퍼센트
1개	223	75.1
2개	35	11.8
3개	7	2.4
4개	1	0.3
0개	31	10.4
전체	297	100.0

바. 신고 실태

1) 신고 접수 현황

2018.3.부터 2020.5.까지 각 센터별로 접수된 신고사례의 건수와 추세는 다음과 같다. 접수년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20년은 5월 31일까지의 접수 사례까지를 포함한 결과이기에 다른 해에 비하여 신고 건수가 적게 나타난다. 부산

43) 이 분석에 포함된 든든의 자료는 피행유형을 중복응답하지 않고 해당 신고사례의 대표 피해유형만 선정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성폭력 센터는 2020년의 신고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더 많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표 Ⅲ-1-12〉 접수년도별 분포

접수년도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2018	63 (52.9)	11 (44.0)	31 (37.3)	10 (14.3)	115 (38.7)
2019	48 (40.3)	10 (40.0)	40 (48.2)	25 (35.7)	123 (41.4)
2020	8 (6.7)	4 (16.0)	12 (14.5)	35 (50.0)	59 (19.9)
전체	119 (100.0)	25 (100.0)	83 (100.0)	70 (100.0)	297 (100.0)

사건 발생년도가 확인된 146건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관련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2019~2020년에도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13〉 사건 발생년도(중복응답)

사건년도	보라	예복	부산	전체
2016 이전	-	25 (49.0) (43.1)	26 (51.0) (36.1)	51 (100.0) (34.9)
2017	-	10 (45.5) (17.2)	12 (54.5) (16.7)	22 (100.0) (15.1)
2018	11 (31.4) (68.8)	13 (37.1) (22.4)	11 (31.4) (15.3)	35 (100.0) (24.0)
2019	3 (9.1) (18.8)	10 (30.3) (17.2)	20 (60.6) (27.8)	33 (100.0) (22.6)
2020	2 (40.0) (12.5)	-	3 (60.0) (4.2)	5 (100.0) (3.4)
전체	16 (11.0) (100.0)	58 (39.7) (100.0)	72 (49.3) (100.0)	146 (100.0) (100.0)

2) 신고 방법

신고방법으로는 전화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이메일, 대면으로 나타났다.

〈표 Ⅲ-1-14〉 신고 방법

신고방법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전화	69 (58.0)	19 (76.0)	-	64 (95.5)	152 (72.0)
이메일	21 (17.6)	-	-	1 (1.5)	22 (10.4)
대면	14 (11.8)	6 (24.0)	-	2 (3.0)	22 (10.4)
문자	13 (10.9)	-	-	-	13 (6.2)
기타	2 (1.7)	-	-	-	2 (0.9)
전체	119 (100.0)	25 (100.0)	-	67 (100.0)	211 (100.0)

사. 지원 현황

1) 사건 진행 상황

신고사건 중 75.7%는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사건이 17.6%에 달하였다.

〈표 Ⅲ-1-15〉 진행 상황

진행상황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종결	102 (85.7)	23 (92.0)	74 (89.2)	16 (28.1)	215 (75.7)
진행중	17 (14.3)	2 (8.0)	9 (10.8)	22 (38.6)	50 (17.6)
기타	-	-	-	19 (33.3)	19 (6.7)
전체	119 (100.0)	25 (100.0)	83 (100.0)	57 (100.0)	284 (100.0)

신고시기별 사건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한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고 2019년 신고 사건의 종결 비율은 각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표 Ⅲ-1-16〉 신고시기별 사건 진행 현황

진행상황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종결	2018	63 (61.8)	11 (47.8)	31 (41.9)	2 (12.5)	107 (49.8)
	2019	38 (37.3)	10 (43.5)	34 (45.9)	12 (75.0)	94 (43.7)
	2020	1 (1.0)	2 (8.7)	9 (12.2)	2 (12.5)	14 (6.5)
	전체	102 (100.0)	23 (100.0)	74 (100.0)	16 (100.0)	215 (100.0)
진행중	2018	-	-	-	-	-
	2019	10 (58.8)	-	6 (66.7)	2 (9.1)	18 (36.0)
	2020	7 (41.2)	2 (100.0)	3 (33.3)	20 (90.9)	32 (64.0)
	전체	17 (100.0)	2 (100.0)	9 (100.0)	22 (100.0)	50 (100.0)
기타	2018	-	-	-	5 (26.3)	5 (26.3)
	2019	-	-	-	6 (31.6)	6 (31.6)
	2020	-	-	-	8 (42.1)	8 (42.1)
	전체	-	-	-	19 (100.0)	19 (100.0)

2)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을 지원 받은 피해자는 62.4%에 달하였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내부 상담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담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7〉 심리상담 지원 현황

심리상담 지원 여부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있음	11 (100.0)	18 (72.0)	19 (22.9)	70 (100.0)	118 (62.4)
없음	-	7 (28.0)	64 (77.1)	-	71 (37.6)
전체	11 (100.0)	25 (100.0)	83 (100.0)	70 (100.0)	189 (100.0)

분야별 심리상담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신고사례 중 62.4%가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하여 문학, 연예 분야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다.

〈표 Ⅲ-1-18〉 분야별 심리상담 지원 현황

		심리상담지원		
		있음	없음	전체
분야	미술	21 (65.6)	11 (34.4)	32 (100.0)
	연극	9 (47.4)	10 (52.6)	19 (100.0)
	영화	19 (90.5)	2 (9.5)	21 (100.0)
	음악	6 (50.0)	6 (50.0)	12 (100.0)
	무용	4 (66.7)	2 (33.3)	6 (100.0)
	국악	14 (87.5)	2 (12.5)	16 (100.0)
	문학	7 (28.0)	18 (72.0)	25 (100.0)
	만화	4 (50.0)	4 (50.0)	8 (100.0)
	애니메이션	1 (50.0)	1 (50.0)	2 (100.0)
	연예	1 (33.3)	2 (66.7)	3 (100.0)
	방송	4 (66.7)	2 (33.3)	6 (100.0)
	게임	3 (100.0)	-	3 (100.0)
	캐릭터	7 (100.0)	-	7 (100.0)
	기타	4 (80.0)	1 (20.0)	5 (100.0)
	전체	104 (63.0)	61 (37.0)	165 (100.0)

피해 빈도가 확인된 경우 중 2회 이상 반복적인 경우는 117건으로 51.5%였는데, 심리상담지원을 받은 사례 중 80%는 2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였다. 즉, 반복적인 피해를 입을수록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Ⅲ-1-19〉 반복성 여부와 심리상담 지원 현황

반복성 여부	빈도	비율
1회	16	20.0
2회 이상	64	80.0
전체	80	100.0

3)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여부가 확인된 사례 중 18%에 의료비가 지원되었는데, 심리상담, 법률 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이 주로 어떤 경우에 되는지, 부산센터의 경우 타센터에 비해 지원 비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Ⅲ-1-20〉 의료비 지원 현황

의료비 지원 여부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있음	7 (100.0)	2 (8.0)	2 (2.4)	19 (36.5)	30 (18.0)
없음	-	23 (92.0)	81 (97.6)	33 (63.5)	137 (82.0)
전체	7 (100.0)	25 (100.0)	83 (100.0)	52 (100.0)	167 (100.0)

4) 법률상담 지원

- 신청 여부

법률상담을 신청한 비율은 67.5%에 달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44] 든든에서의 법률상담 신청 비율이 타센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44)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통계에 따르면 2018.1.1.~2020.8.30. 기간 동안 예복, 보라, 든든에서 권고(사건 발생 단체에 조치, 개선권고 등의 공문 송부)나 지원한 건수는 총 175건이다. 이 보고서는 4개 센터를 분석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른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내부통계의 지원 건수 175건과는 다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표 Ⅲ-1-21〉 법률상담 신청 현황

법률상담 신청 여부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있음	85 (100.0)	8 (32.0)	33 (39.8)	40 (75.5)	166 (67.5)
없음	-	17 (68.0)	50 (60.2)	13 (24.5)	80 (32.5)
전체	85 (100.0)	25 (100.0)	83 (100.0)	53 (100.0)	246 (100.0)

앞에서 분석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외에 기타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주로 영화인들이 신고하는 든든에 '사례 아카이빙' 관련 요청이 들어온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아카이빙을 통해 향후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든든이 다른 센터에 비해 아카이빙 관련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홍보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Ⅲ-1-22〉 기타 요청사항(중복응답)

기타 요청사항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사례 아카이빙	12 (57.1)	-	-	-	12 (23.5)
권고	7 (33.3)	-	-	1 (3.6)	8 (15.7)
기타	-	-	-	27 (96.4)	27 (52.9)
중재	1 (4.8)	-	-	-	1 (2.0)
조사	1 (4.8)	-	-	-	1 (2.0)
정보제공	-	1 (50.0)	-	-	1 (2.0)
가해자 제재	-	1 (50.0)	-	-	1 (2.0)
전체	21 (100.0)	2 (100.0)	-	28 (100.0)	51 (100.0)

분야별 법률상담 신청현황을 보면, 미술, 음악, 문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신청 비율이 낮다.

〈표 Ⅲ-1-23〉 분야별 법률상담 신청현황

		법률상담 신청		
		있음	없음	전체
분야	미술	12 (40.0)	18 (60.0)	30 (100.0)
	연극	11 (64.7)	6 (35.3)	17 (100.0)
	영화	84 (95.5)	4 (4.5)	88 (100.0)
	음악	5 (45.5)	6 (54.5)	11 (100.0)
	무용	5 (83.3)	1 (16.7)	6 (100.0)
	국악	15 (93.8)	1 (6.3)	16 (100.0)
	문학	9 (37.5)	15 (62.5)	24 (100.0)
	만화	6 (75.0)	2 (25.0)	8 (100.0)
	애니메이션	1 (50.0)	1 (50.0)	2 (100.0)
	연예	2 (66.7)	1 (33.3)	10 (100.0)
	방송	7 (70.0)	3 (30.0)	10 (100.0)
	게임	-	3 (100.0)	3 (100.0)
	캐릭터	2 (66.7)	1 (33.3)	3 (100.0)
	기타	-	5 (100.0)	5 (100.0)
	전체	159 (70.4)	67 (29.6)	226 (100.0)

- 법률상담 신청 사유 및 내용[45)]

법률상담 신청 사유(총 166건)를 보면 피해 사실 관련 전반적인 법적 대응이 가장 높은 건수(82건)로 나타났다. 2차 가해 이후 법적 대응이 신청 사유인 경우는 60건으로 2차 가해가 만연한 실태를 보여준다. 또한 피소 관련 대응 문의가 52건으로 피소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큰 상황을 보여준다. 공론화 이후의 법적 위험부담이 사유인 경우는 40건으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이는 조직 내 징계 및 구제절차가 부족한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 관련 지원이 26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 위한 경우는 20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다양한 사유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표 Ⅲ-1-24〉 법률상담 신청 사유(중복응답)〉

45) 법률상담 신청 건수인 166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이다(표 Ⅲ-2-23 참조).

법률상담 신청 사유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피해사실 관련 법적 대응	17 (16.2)	-	17 (42.5)	48 (17.4)	82 (19.1)
가해자와의 합의 관련	6 (5.7)	-	2 (5.0)	18 (6.5)	26 (6.1)
공론화 관련 법적 위험부담 조언	6 (5.7)	-	2 (5.0)	32 (11.6)	40 (9.3)
가해자 제재 요청	4 (3.8)	-	3 (7.5)	13 (4.7)	20 (4.7)
피소(무고죄, 명예훼손죄 등) 관련 대응 문의	5 (4.8)	-	6 (15.0)	41 (14.9)	52 (12.1)
2차 가해 관련 법적 대응	40 (38.1)	-	1 (2.5)	19 (6.9)	60 (14.0)
파생사건 법적 대응	3 (2.9)	-	-	13 (4.7)	16 (3.7)
정보제공 내지 자문요청, 법적 대응절차 문의	12 (11.4)	6 (75.0)	-	48 (17.4)	66 (15.4)
피해사실 관련 법적 검토	12 (11.4)	-	-	43 (15.6)	55 (12.8)
소송비 지원	-	2 (25.0)	-	1 (0.4)	3 (0.7)
기타	-	-	1 (2.5)	-	1 (0.2)
피해지원 정보문의	-	-	8 (20.0)	-	8 (1.9)
전체	105 (100.0)	8 (100.0)	40 (100.0)	276 (100.0)	429 (100.0)

- 법률지원의 결과

법률지원을 한 결과, 승소 종결이 35건, 패소 종결이 20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종결한 경우는 13건으로 나타나 지원센터들의 주요 업무성과 중에 가해자와의 합의가 일정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Ⅲ-1-25〉 법률상담 지원 결과(중복응답)

법률상담 지원결과	든든	보라	예복	부산	전체
확인불가 내지 공란	11 (12.9)	-	-	11 (15.5)	22 (12.9)
가해자와 합의 후 취소 내지 종결	7 (8.2)	1 (11.1)	1 (16.7)	4 (5.6)	13 (7.6)
피소 건 취하 후 종결	-	-	1 (16.7)	-	1 (0.6)
자문, 상담 후 종결	14 (16.5)	-	-	4 (5.6)	18 (10.5)
승소 후 종결	26 (30.6)	-	-	9 (12.7)	35 (20.5)
패소 후 종결	20 (23.5)	-	-	-	20 (11.7)
합의결렬 후 종결	5 (5.9)	-	-	-	5 (2.9)
내부 법률자문 실시	-	5 (55.6)	-	13 (18.3)	18 (10.5)
외부법률전문가 선임비용 지원	-	1 (11.1)	-	-	1 (0.6)
타기관에 지원의뢰 하여 취소(타기관 연계 후 종결 포함)	2 (2.4)	1 (11.1)	-	1 (1.4)	4 (2.3)
연락두절로 종결	-	1 (11.1)	-	2 (2.8)	3 (13.6)
기타	-	-	4 (66.7)	27 (38.0)	31 (18.1)
전체	85 (100.0)	9 (100.0)	6 (100.0)	71 (100.0)	171 (100.0)

아. 소결

문화예술 분야별로 신고 건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야별 예술인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영화와 다른 분야 사이의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영화계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든든이

신고 및 지원센터로서의 인프라가 갖춰진 영향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고 및 지원센터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지위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제지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스승의 지위에서 가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순위는 업무관계자, 동료나 친구로 나타났다. 2개 센터 접수사례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사제지간, 업무관계자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성폭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배, 기획자나 감독 등의 상사, 동료, 사제, 업무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관련자의 비율이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홍보자료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가해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해자가 모두 여성인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로 확인되어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이성 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교육, 홍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결과 피해 유형 중 성추행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언어적 성희롱〉 강간 및 강간 미수〉신체적 성희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간 미수는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63건, 성추행은 128건이 신고되었다(중복응답). 이 분석결과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각한 강간, 성추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체적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하여 코딩하였음에도 성추행이 128건으로 297건의 신고사례 중 43.1%에 달하는 것도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강간 등, 성추행, 신체적 성희롱 등이 다수인 만큼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도 강조해야 한다.

사건 발생년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미투가 활성화된 2018년 이후로 발생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젠더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노력과 지원,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실적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문학, 연예 등 특히 낮은 분야가 눈에 띈다. 해당 분야에서의 센터 접근성이 낮거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법률상담 신청 비율은 든든과 부산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센터들에 법률상담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담 신청 비율은 피해유

형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활동 분야별로는 미술, 음악, 문학 분야의 신청비율이 낮았다. 해당 분야에서 법적 대응 관련한 필요성이 낮은 결과일 수도 있고, 법적 대응에 대한 정보 부족의 결과일 수도 있다. 법률상담 신청 사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신고나 공론화 이후 피해자가 느끼는 법적 부담과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센터를 통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고죄 등 피소대응 관련이 52건, 2차 가해 관련 법적 대응이 사유인 경우는 60건인 것도 피해자가 처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센터별로 소송 승소 비율에서의 차이가 보이는데, 결측이 많은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센터별 소송, 승소 비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 문화예술계 업계 내의 가해자 비율이 높고 가해자 징계 등 조직 내 구제절차보다는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신고사례가 다른 분야와 다른 지점이고, 문화예술계의 문화, 구조, 피해 양태 등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계 피해자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사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들이 공통 양식으로 사례를 정리하여 입력하면 향후 피해발생 현황, 피해자 지원 및 법적 대응 관련 개선 방안 등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1)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조력자 면접조사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 조력자 두 집단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영화, 미술, 무용, 연극, 만화(웹툰)계 등의 문화분야는 물론 웹드라마와 같은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분야 피해자를 만났다. 면접조사에는 피해자 9명과 피해 지원 조력자 4명, 총 열세 명이 참여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피해 사실 및 가해자와의 관계 등이 알려지면 좁은 문화 분야 내에서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익명처리를 한다고 해도 문화 분야, 문화

분야 내에서도 세부 분야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등이 알려지면, 해당 분야 종사자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피해자의 향후 진로나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상항은 그만큼 문화 분야 내 인맥이 촘촘하며, 관련 분야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피해자 섭외의 어려움 속에서 면접조사는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상담 지원기관이나 문화분야 미투를 보도한 언론계, 문화분야 미투 이후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무용, 미술계 등의 민간 지원 조직들로부터 알음알음 소개받아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2020년 7~10월 동안 한시간반에서 두시간 가량 이루어졌고, 연구진이 미리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 피해자 면접조사 참여자

사례	성별	연령	직업	가해자	피해경험
A	여	50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연극배우	연출 및 동료 배우	성희롱 및 성추행
B	여	29	웹툰 작가	선배 작가	성희롱 및 성추행
C	여	28	웹툰 작가	문하생 시절 작가	감금 및 성폭력, 폭행
D	여	27	학생(무용)	동료 남자무용수	불법촬영 및 온라인 업로드
E	여	26	학생(무용)	실기강사	성추행 및 강간미수
F	여	39	프리랜서 독립큐레이터	선배 작가	성희롱
G	여	27	미술계 종사자	선배 작가	성희롱
H	여	25	배우	감독	성희롱 및 성추행
I	여	29	영화계 종사자	제작자	성희롱 및 성추행

○ 조력자 면접조사 참여자

사례	성별	연령	직업
J	여	39	문화분야 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지원 전 활동가(영화)
K	여	29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L	여	49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영화)
M	여	51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영화)

○ 조사내용 및 면접조사 질문지

가) 조사 내용

- 피해경험 전반(2차피해 경험 포함)
- 신고 및 상담 과정
- 피해지원 내용 및 관련 경험 전반
- 문화분야 신고상담 지원 체계 이용 경험 및 문제점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나) 면접질문지

주제	내용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 피해 경험 전반 및 주변에서 목격했던 사례 - 피해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필요했던 것(가해자 사과, 처벌, 보상, 법적 지원, 상담, 2차 가해, 일자리 등) - 2차 피해 경험 - 주위 중요한 조력자들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피해지원 체계에서의 경험	- 피해 이후 신고 및 상담 경험 - 신고 및 상담 결심 계기, 시기, 관련 정보 접근 통로 등 - 성폭력 관련 사건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화분야 신고센터 및 지원기관과 그 외 기존 지원체계 포함) * 문화분야 신고센터 경험이 있는 경우, 신고 및 상담, 지원 관련 경험 전반, 좋았던 점, 미비점, 상담 지속 및 중지의 이유 등 * 문화분야가 아닌 다른 통로로의 신고 및 상담 경험이 있는지와 그 이유, 있다면 문화분야 신고센터와의 차이
향후 피해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 문화분야 피해지원체계에 대한 소속 문화 분야 내 인지도, 위상 - 문화분야 피해자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현 피해지원체계에서 더 필요한 것 - (문화분야 외 지원기관 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분야 내 지원기관의 별도 운영 관련 의견 (보완점을 중심으로)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그 외 개선 방안
소속 문화분야 조직특수성과 성차별/성폭력 인식	- 소속된 문화 분야 학풍 및 노동에서의 전반적 특수성 - 성차별적 관행, 경험, 주변 사례, 관련 분위기 -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 문화분야 미투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는지 등 - 성폭력예방교육 등 경험, 소속 문화분야에서의 교육 현황

나.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특수성 및 배경

1) 성장과 진로 전망에 영향력이 큰 인맥 및 권력관계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명성, 지위 등 다양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경험했다. 권력관계가 매우 분명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20대에 피해를 경험했고, 이제 막 문화계에 입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막 입문한 시기에 있었다.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은 가해자와 계약 관계 등 법적 관계(근로관계 등)와는 거리가 먼 '문화계 선후배', '문화계 선생님', '연출', '프로젝트 총책임'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다. 혹은 정직원과 프로젝트에 기반해 있는 계약직이라는 고용관계의 지위 상 권력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자원이 한정적인 문화분야에서는 관련 업계에서의 수상경력이나 인맥 등을 통한 자원의 독점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성장,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미 문화계에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컨대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담당자는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이끌만한 감독을 섭외하고, 그 감독의 네트워크로 참가자들이 조직되고, 감독이 명성이 있는 경우 연이 없어도 쉽게 섭외할 수 있는(사례 G)" 상황은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해들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오디션 및 캐스팅, 콩쿨 입상, 프로젝트 참여, 공모전 심사, 작가 데뷔 등),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계 내 공고한 위치를 재확인시키며 성희롱 및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 현장에서는 제작사 대표니까, 그리고 저는 OO팀 막내였으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영화를 오래 해오셨던 분이고, 주변에서도 다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영화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능력있고, 되게 대단한 분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어쨌든 되게 되게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근데 현장에 나와서 뭔가 저를 유독 잘 챙겨주는 느낌이 드는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탭들에게 그런 말을 안하는데 저한테 밥은 먹었냐, 맛있게 잘 먹었냐는 얘기도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서 추석에 잘 지내라, 명절 잘 지내라, 개인적으로 문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를 되게 잘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 정도의 관계만 맺고, 저랑 친했던 언니들도 그분의 소개로 거기 오고 그런 언니들이 있어서 그 언니들도 저분 되게 괜찮은 분이라고. (중략) 그 다음에 OO 영화제를 갔는데 OO영화제를 제가 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그분이 보셨어요. 그리고나서 바로 연락이 와서 OO에 있다며? 나도 OO에 있는데 여기 어디 호텔 로비로 와! 거기 라운지에 다 같이 앉아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너도 앉아라 해서 앉고, 근데 그 대표가 저를 그분들에게 얘가 OO 감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 내가 되게 아끼는 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중략)그 다음에 좀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밥을 먹자고. (중략) (차에서) 갑자기 제 손을 잡는거예요. 운전 중에 한 손으로. 그래서 그때 무서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제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놀라서 연락했다 그런걸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따로 안 했는데 그 일이 있고나서도 이걸 누구한테 말 할 수도 없고, 분명히 감독한테 얘기를 하면 너는 영화 때려치라고 얘기할게 분명하고, 영화판이 너무 좁으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거든요. 그렇게 소문 나기도 싫고 (사례 I)

웹툰계는 여전히 데뷔를 위해 도제식 과정을 거치는데 이에 따라 작가, 학원강사가 문하생, 교육생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웹툰 연재 플랫폼에서 PD가 편집권을 빌미로 성희롱하기도 한다(사례 B)

보통 플랫폼에서 1년에 한 번씩 송년회를 해요. 좀 연차가 되는 잘 나가는 남자 작가들이 술만 먹으면 어리고 데뷔가 자기보다 늦은 여자 작가들에게 선배로써 가르침을 준다고 하면서 술을 먹이면서 성희롱을 하고 터치를 해서 그게 나중에 실제로 고소 얘기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하도 많아서.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건데 보통 작가들은 데뷔를 하면 프리랜서로서 PD님이랑만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작품만 인터넷에 올리는 형식이니까 재택근무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게 선후배사이의 인맥교류를 통해서 되게 많이 얻는데 이게 여자 작가들끼리 있을 때는 순기능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 같은 플랫폼에 일하는 나이가 많은 베테랑 작가님도 계셨어요. OOO에도 연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분은 공신력이라는게 있다고 느껴지는거죠. 그래서 그 분이 자기가 선배로써 이런 부분을 업계에서 어찌됐든 차기작도 해야하니까 많이 가르쳐준다고해서 공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스터디를 한적이 있었어요. 3-4명이 모여서 선배로써 해준다고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해주고 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몇 번씩 반복되면서 슬쩍 술을 먹기 시작하는거예요. 술 본인이 사주시고 하니까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술을 먹고 파할 때 여자 작가들만 돌아가면서 찔러본거죠. 제가 그걸 듣고 술을 먹다가 술도 그분이 말술이세요.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가시고 기다리는데 취하셨어요. 취하셨는데 다짜고짜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는거예요. 미투 아슬아슬하게 2016년. 그 분이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딱 간택했다는듯이 끌고 가는데. (중략) 앞으로 볼 사이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는거예요. 너 지금 나를 거절하고 가면 니가 이 업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가지 말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 다음날 후회 안할 것 같냐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거예요. 야밤에 달리기를 했죠. (중략) 유료 플랫폼이 더 협소하다보니까 PD들이 젊은 여자 작가들 성희롱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담당 PD가 있고 작가들이 담당 PD랑밖에 소통을 못하잖아요. 작품도 그렇고. 근데 남자 PD들이 자기의 위치가 PD가 그러잖아요. 원고 받아주고 원고 통과시키고. 집자니까 작가랑 사적으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빌미로 삼아서 되게 어린 작가인데 그 친구 22살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원고를 상담해준다는 빌미로 12시, 밤 늦은 시간에 맥주 한잔하자 그렇게 연락을 하는거죠. 그래서 작가가 뭔가 이상한데 싶고, 어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원고 조언을 해보려나보다 해서 그 작가는 PD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절하면 그런가? 해서 하니까 한번 쓱 해보고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밤에 애인처럼 구는거죠. 밤에 찾아가도 되냐? 전화통화 하고, (사례 B)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업계에서는 캐스팅을 빌미로 한 성희롱이 빈번하다.

캐스팅 디렉터도 OOO가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악질이라고 이 사람도 만나서 맨날 술 마시자, 너 나랑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전화해서 협박식으로 내가 캐스팅 디렉터 얼마나 오래 했는데 니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때가 이번 년도 초인데 캐스팅 디렉터랑 그렇게 많이 교류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몇 달 뒤에 제가 캐스팅 디렉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프로필을 돌리려고 그 명단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씩 뭔가 익숙한 이름이 있는거예요. 그 사람인거예요. 저는 OO씨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빼고 넣을 수가 있었는데 거의 다 모를거 아니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계속 새로운 배우들에게 프로필 받아서 했던 것처럼 oo씨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죠.

진행자캐스팅을 빌미로.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 어필해야하고, 우리 신상, 번호를 다 해야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모르는 번호도 다 받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OO 씨 맞으시죠? 프로필 보내셨죠? 어디까지 오세요! 하면 일단 가야해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게 어떻게 어디 가이드가 어떻게 해야할지.(사례 H)

말씀 들으니까 저희 초반에 상담했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미팅 오디션 갈 때 가방에 한동안 가위를 넣고 다니셨다고. 그 분은 오래 활동을 여러가지 단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약간 오래된 사건들을 많이 신고를 하셨는데 그 분도 어떤 긴 미투 글을 올리시려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 내용을 든든으로 보내셔서 가능한 사건은 대응도 해보고 했는데. 완전 오래 된 사건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어두시면서 그게 너무 본인이 배우로써, 한동안 배우를 안하려고 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었는데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발 좀 이런게 없었으면 좋겠다, 신인배우들이 겪는 많은 것들이. 그게 정말 그 분은 드라마나 영화를 오가면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드라마쪽도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PD부터 해서 되게 심각한데 그쪽도 정말 해결이 어려운. 그만큼 얘기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들은 것 같아요. 방송국 드라마 이쪽이 문제가 심각할텐데 엄청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역 자매 그 사건도 반장, 단역 엑스트라 섭외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반장 같은 그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금도 드라마쪽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력자 J)

특히 새롭게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그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선생님 혹은 선배 예술가의 말과 행동은 배움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때 성희롱, 성추행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이 업계 문화나 감각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 본인의 무지로 여겨지기도 한다(사례 B, 사례 E, 사례 F, 사례 G, 사례 H).

이 같은 맥락에서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 콩쿨에서 수상한 이후 가해자 측이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이니 선생님이 더 하라는 대로 하라(사례 E)”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ooo를 입학하게 됐어요. 거기를 반년 다니다가 편입하고싶다고 학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반수를 하고싶다고. 학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남편분을 소개시켜주셨어요. 남편분도 저희 학교 나오시는 강사셨고, 소개시켜줘서 그쪽으로 갔는데 한 거기서 1년 정도 배웠어요. 1년 정도 배운 이후에 반수를 했는데 제가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남자 교수가 저한테 콩쿨을 계속 나가라고해서 그래야 무용을 하니까. 콩쿨을 나갔는데 콩쿨 관계자분께서 연락이 와서 OO 제자냐고, 그 남자교수 제자냐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사전에 누구 제잔지 그런걸 아는게 없는데 맞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콩쿨에서 대상 수상을 했어요. 대상 수상을 하고 남자교수가 저를 자기한테 고마워해야한다고, 밥을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밥을 사드렸는데 어디서 드시고 싶냐고 말씀드리니까 남자교수 개인연습실 1층 식

당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연습실에 올라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날도 연습을 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 밖에 없었어요. 둘 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을 하시는거예요. 저는 저한테 그럴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얼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면서 둘만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 자기의 영역이고 자기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연습실에 많이 나왔는데 콩쿨날이었어요, 오전 8시에 그 학생들이랑 저도 같이 나와서 연습하라고 불러요. 불러낸 다음에 학생들은 콩쿨에 나가야하니까 10시쯤 나가요. 점심, 오후쯤에 콩쿨에 나가야하니까. 그러면 저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성폭행을 저한테 한거죠. (사례 E)

사례 H같은 경우에는 연기와 관련된 어떠한 네트워크도 없이 혼자 뛰어든 상황에서 '감독'이라는 위치의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유명해지게 만들어주겠다'는 식의 제안과 함께 성희롱 성추행이 진심으로 피해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착하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걸 테스트 촬영을 하고싶은데 주소 찍으면서 여기로 올 수 있냐, 집으로 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리딩을 하려고 불렀으니까 리딩을 한 두 번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OO씨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같이 하고싶다, 키워주겠다는 식으로 같이 하고싶다고 얘기해서 저야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자기는 뮤즈처럼 OO씨를 두고 글을 써야하는데 뮤즈가 되어달라고 하는거예요. 저는 좋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했죠. 그랬더니 자기랑 사귀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네, 어떻게 해야하지? 그 순간에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스폰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수락해야하는건가? 내가 싫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가 엄청 멀어요. (사례 H)

사례 H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작하는 작품에 무급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곧 이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일과 관련된 불이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싸운) 그 다음날 원래 oo에서 진행했던 작은 영상 작업을 했던게 있는데 그걸 보충 촬영을 해야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냥 내일 촬영하지말자! 그러는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죠.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일과 바로 직결돼서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안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알겠다고하고 집에 도착해서 문 닫고 집으로 왔죠. 근데 자기가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느꼈나봐요. 제가 화를 내면서 내렸으니까. 도착했을 때 카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서 저는 내일 촬영은 해야겠고 하니까 알겠다, 괜찮다고하고 니가 괜찮으면 촬영해도 될까? 촬영해야 할 것 같아! 그런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언제 보자 해서 다음날 촬영에 만났죠.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써 외면했죠. 차라리 그때 이거 뭐야? 하고 끝냈으면 이런 더 큰 일까지는 없었을텐데 어린 마음에 모르고 아무한테 말 못하고 그렇게 했던거죠. (그때 제일 이상하다고 느낀게 뭐예요?) 관계를 계속 요구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핀트가 상하면 이게 일과 직속이 되니까. 연인 사이면 일을 꺼내면 안되는거잖아요.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그 분이 000 그만두고 000만들면서 촬영을 같이 하게 된거죠. 당연히 페이도 안받았고. 그 사람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찍는거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는거잖아! 암암리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례 H)

피해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업계에서 일을 조금씩 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자, 가해자가 해당 업계에 아무런 연이 없는 주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신입 여성 배우들에게만 자신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작품에 이용하고 성희롱 및 성추행을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

> 000에 글이 올라왔다는거예요. 000에 익명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익명게시판에 ㅇㅇ감독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거예요. 그래서 사귀어야한다는 명분으로 너를 갖고 시나리오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렇게 글이 올라온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뭐야? 하고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저랑 너무 똑같으니까 내가 당한거구나 싶더라고요. (사례 H)

특히 예술작업을 함께 하는 동안에는 가해자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영향력을 자원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선배나 선생님의 눈 밖에 나면 업계에서 자리잡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한다. 온라인 웹툰플랫폼에서는 독자들에게 웹툰을 홍보하는 용도로 배너를 단다. 보통은 웹툰 배너를 무작위로 달아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홍보하지만 관리자나 선배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그러한 기회는 물 건너 간다. “여자 작가중에 누구랑 누구랑 누구는 나대니까 얘는 올려주지마. 배너는 원래 편집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건데 얘는 블랙리스트니까 올려주지마, 버릇 고쳐놔(사례 B)”라고 한다는 것이다.

> (성폭력 성희롱 사건) 공론화 하기가 힘들어요. 00에서도 그 일 터졌을 때 일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자작가한테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성격 욕도, 막말로 그런거 있잖아요. 억울해서 얘기한건데 괜히 자기가 회사에서 수익 떨어지는 것 같고, 회사에 우려먹을거 없으니까 괜히 남자 작가들 물고 늘어진다. 서로 총질을 막 해요. 00때는 회사가 중소, 딱 운영진들이 정해져있었어서 여자가 이런 관련으로 당했다고 했을 때 부당한 리스크를 지는게 되게 공공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여자 작가중에 누구랑 누구랑

> 누구는 나대니까 얘는 올려주지마. 그거 아시죠? 수익 플랫폼은 수익 잘 나오게 하려고 배너 다는거 아시죠? 배너도 원래 랜덤이잖아요. 원래 편집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건데 OO는 얘는 블랙리스트니까 올려주지마, 버릇 고쳐놔.(사례 B)

피해자들은 이 같은 인맥의 중요성, 이에 따른 폐쇄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경우 문화계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시작으로, 업계상황상 가해자편을 들게 되는 주변인들의 2차가해성 발언(사례 E)에 노출되거나, 업계에서 성희롱 사건이 약점으로 작용하여 낙인을 찍는 경우(사례 D)도 존재한다.

2) 남성 중심적 조직: '개방적 성',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연구과정에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은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다양한 '문화계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중 특히 주목할만 한 점은 문화계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에 노출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다. 실상 이 때의 성적 자유주의는 남성중심적 자유분방한 성에 관한 인식이었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문화계 내 다수의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빈번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미술, 영화, 연극, 무용 등 다수의 영역에서의 피해자들은 예술 활동에서 성관계 등을 암시하고 묘사하는 것,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은유나 묘사 등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성 전반에 관한 비교적 자유분방한 분위기들이 존재한다.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성/외모를 주제로 하는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과 외설의 경계'라든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들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이 비판에 대한 예술계 내부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반발에 관한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들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 중 하나는 가해자로부터 예술가의 태도나 능력의 일환으로 성적 자유로움에 관해 강요받은 것이었다.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태도를 빌미로 가해자 본인의 성적 가치관, 자유 연애관 등을 강요받거나 동참하기를 요구받았다는 것이다(사례 F, 사례 G). 이제 막 예술계에 입문한 주니어 예술가들에게 예술계 선배의 말이나 관점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아직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조언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다. 피해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의 성희롱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 갑자기 자기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내 배우자도 OO씨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인거. 근데 내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마다 OO씨에게 알리지는 않아. 그럴 필요도 없잖아. 나는 2:1 섹스도 해본적 있는데 즐기는 편이고 어느날은 나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셋이 있는데 그 둘이 눈이 맞은거야. 그래서 나 혼자 뭐가 됐네. 둘이 좋으면 됐지 뭐. 여자 둘이랑 나랑도 해보고 그런게 좋은 것 같아. 자유롭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작가님이 여성 디자이너분에게 이분이랑 카톡 친구였는데 이분 카톡 프사가 애인이랑 같이 찍힌 사진이었나봐요. 그걸 말하면서 "너는 한 사람하고만 사귀지?" 고루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략) 너랑 하고싶다. 너랑 하면 진짜 좋겠다. 작업실에 OOO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줄께. 자기 혼자 다 상상하는듯한 표정으로 너무 좋아, 너무 기대돼!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저와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했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임의의 섹스파트너로 산정하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OOO과 셋이 하면 좋겠다. 우리 OOO에서도 그런거 해보자. 관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그러면서. (사례 G)

특히 예술계 내 공식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성희롱·성폭력 사례 등에 관해 접해본 적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선배 혹은 선생님의 성희롱적 발언은 곧장 '성희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술가적 면모로서 존경스러운 면과 업계 내 권력이 있어서 쉽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사례 F, 사례 G)".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 자신이 아직 초심자이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게 아닐지 하는 자신에 대한 검열이 먼저 이루어진다. 자신이 예술을 하기에는 너무 규범적이거나 성적으로 보수적인 것이진 않은가에 관한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느끼기도 한다. 예술가의 당위성을 근거로 미술계 여성종사자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사례 F)

또한 무용과 같은 분야는 몸이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 소재 혹은 도구이기 때문에 특정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몸을 만지거나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여겨진다. 연극이나 영화 역시 호흡, 연기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작을 지적하거나 만지는 경우 역시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술활동의 "신체를 활용하는 특성상 성희롱여부를 인지하기 힘든 적도 있지만(사례 E) "일적으로 몸을 만지는 것과 성희롱은 구분이 된다. 주변의 친구들 중에 성희롱을 당해서 불쾌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사례 D)"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몸을 훑어보는 시선이나 신체접촉 등이 모두 수업 및 연습의 일환으로 연습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도중에 동작을 멈추거나 그 공간을 빠져나온다는 것이 어렵다. 이는 곧 수업 및 연습의 이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웹툰계의 경우는 보다 노골적으로 여성 문하생이나 작가들은 성접대 등에 동원한 사례가 있었다. 웹툰 홍보 시 성상품화수준의 사진을 작가들에게 강요하거나 송년회 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빈번하다.

> OOO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관련해서 너무 말이 많아서. 거기는 말하는게 2년 전인가? (미투가 있을 때죠?) 네, 그때 여러 개 터졌던게 OOO사장님, CEO가 있잖아요. 작품 홍보를 할 때 작가들에게 화보를 찍게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 작가들은 사진을 안찍었는데 여자 작가들에게는 그라비아 아이돌 잡지에 나올 것 같은 옷을 입고 탁자 밑에 들어가서 앉아서 찍는다거나 그런 화보를 찍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보다는 그렇게 성적으로. 그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사례 B)

문화계 각 세부 분야별로 피해 유형이 다양하지만, 그러한 피해의 공통 배경은 바로 남성중심적 조직과 조직문화에 있었다. 피해자들은 문화예술계 특수한 성적 윤리가 존재하여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이 이미 선배, 선생님들이 조성해 놓은 남성중심적 자유주의적 성문화의 지배적 경향성을 거스르거나

문제제기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웹툰의 경우 “문하생으로 진입해서 데뷔하는 1세대와 대학교 과정에 웹툰 관련 과정이 생기면서 데뷔하는 2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전히 1세대의 영향은 강하다. 1세대는 남성이 많은 반면, 2세대는 여성이 더 많은(사례 B, 사례 C)” 상황에서 업계내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작가는 현재 여성이 많지만, 작가를 관리하는 PD는 남성이 많은 상황에서 작품의 연재기회 등이 이의 결정권 하에 있게 되면서 여성과 남성 간 위계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빌미로 성희롱이 일어나기도 한다.

> OOO에서 했을 때 같이 일하시는 동료 작가분이 계셨는데 여자 작가분이셨는데 그분이 SNS 공론화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데뷔한지 4년 정도 돼서 인기도 많고 데뷔도 해서 일상툰을 그리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같은 자리로 경력이 났고, 인기나 조회수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과가 안나오는 남자분이 원고료를 많이 받는다는걸 알아서 그걸 PD님에게 여쭤봤대요. 제가 경력도 높고, 결과물 웹툰이 많이 들어오니까 왜 내가 더 낮냐고 했더니 그 PD님이 작가님 어차피 결혼하시면 남편분이 이제 하는데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진출을 해야하고, 와이프 부양도 해야하지 않겠냐면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하냐고 말씀하셔서 완전 어이가 없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례 B)

3) 문화계의 낮은 성폭력 감수성

최근 문화계에서 ‘미투’로 문화게 성희롱 성폭력을 공론화하거나 공개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용히 성희롱·성폭력을 신고, 고발하는 세대는 주로 20-30대들이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고발당한 쪽은 주로 40대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한 문화계에서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한 중년이상의 남성들이었다.

즉 피해자들은 이제 막 문화계에 입문하기 시작한 세대들이고 가해자들은 지금까지의 문화계 내 조직문화를 만들어오고 그 안에서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 20-30대의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아왔고, 최근 미투운동, 온라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세대들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선배세대들에 비해 기존 문화계 내에서 지속되어 온 성폭력적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자유로운 성적 태도와 여성을 성애화하는 것이 마치 예술적 자유 혹은 권리처럼 여겨온 문화계가 사실은 성폭력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 E는 처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은 선배로부터 가해자가 ‘너를 예뻐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는다. 또한 가해자가 주로 가르치는 전문학교를 떠나 종합대학으로 편입한 이후에도 무용계 인맥으로 가해자와 돈독한 관계에 있는 전공 교수로부터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무용학과 분위기 또한 교수로부터의 성희롱이 만연하고, 학생들은 무용계를 떠나지 않는 한 이를 고발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선배 단원에게)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너무 예뻐하셔서 그랬을거야. 말씀을 하시면서. (중략) 이게 교수님들이 제가 OO대학교 교수님도 제가 (피해자인 것) 아시거든요. (가해자) 부부랑 친하셨어요. 되게 친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듣고싶지 않다고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기 딸인가 아들이 어제 용돈 안줬다고 징징거렸어. 그런 얘기 너한테 안하지? 너도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충격먹어서 그 교수님이랑 말을 섞으면 안되겠구나.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제 학교 생활 얘기를 그 부인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다 전달하고.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가서 얘기하겠지? 여기서 처벌이 안나왔으면 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고, 그게 인정이 되어버리는거니까. 그러면 제가 가치관이나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렸을거예요. 그게 안나와버렸으면. (중략) 제 친한 동생도 OO대학교 학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결혼하시고 자식도 있거든요. 제 동생한테 자기가 결혼만 안했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학생인) 자기가 조심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잘못돼도 저 사람을 신고해야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신고도 안해요. (사례 E)

또한 아직 문화 분야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전력에 대해 미리 알아보려는 노력이 거의 없어, 미투 의혹 대상자로 지목이 된 경우에도, 가해자는 업계 내에서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가해자가) 되게 큰 OOO라고 영화 시작하는 거기랑 협업을 해서 배우들 오디션을 보고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oo씨가) 자기 친한 여자 동생이 거기 미팅을 갔다왔는데 듣기로는 엄청 악질 감독이 있다고 했는데 감독이 없고 어떤 여자 작가가 있더라. 너무 너무 멀쩡하고 큰 회사여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사람들은 이 일도 모를거고, 알아도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하면 끝이니까. (가해자는) 진짜 자기는 이름도 가명인지 개명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바꿨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거죠. (사례 H)

이미 십수년 전, 반성폭력과 페미니즘에 관한 풍부한 언어를 가진 현재 30대 후반의 한 피해자는 당시 문화계 내 낮은 성폭력 감수성으로 인해 고립되고 상처받은 경험에 대해 말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특히 여성들은 빈번히 경험하는 일터, 문화계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은 그 업계에서의 커리어를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 대부분은 성희롱·성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견디며 넘겼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되었다.

> 이 정도 수준은 참으라는건가? 크게 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력감을 느낀게 좀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중략) 그 당시에서 같은 여성끼리도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뭐 그냥 내 남자친구 아니고 이건 일로 대하면 돼! 같이 독려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런 대응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고, (중략) 내가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들을 주변 동료와 나누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워낙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각자 적절하게 '난 괜찮아. 넌 힘들면 하지마.' 동료 안에서 그게 서로 좀 연대하면서 해결이라고 하기보다 각자 결국은 '난 계속 살아남을 꺼야.' 하는 애들은 각자도생을 하는거죠(사례 F)

피해자들은 처음으로 문화계에 진입하게 되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많으므로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문화계 내 성희롱성폭력은 연령, 공동체 내 낮은 지위 등과 같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여전히 언어적 성희롱·폭력적 분위기가 만연할 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카르텔이 공고한 문화계에서 성희롱·성폭력적 문화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망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 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데, 내가 나설 수 있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즉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한 피해자들이 보기에 구성원 개개인들이 인식이 없고, 관심이 없기도 하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관해 같은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공유해본 적 없는 경험은 문화계 내 성폭력 감수성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다. 문화계 특수성에 따른 문제제기의 어려움

1) 집단 작업 및 개인작업 상의 특수성

피해자들은 집단작업을 많이 해서 피해자 개인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한다(사례 E). 예술작업 가운데 집단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자신의 고발로 인해 작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원금을 환수 받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지 않을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공동작업이 많아 결과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연극이나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작품 상황에 따라 미술이나 무용 역시 공동 작업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만 견디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그러한 압력을 받기도 한다. 성희롱성폭력 경험을 동료에게 토로했을 때, '너 혼자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는 2차 가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라는 낙인과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업계에서 활동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동하기도 한다(사례 E, 사례 F, 사례 G).

한 예로 피해자 사례 D은 한 교수님과 해당 사건에 대해 의논하였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바 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찾아주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했다. 어떤 공연에 관한 일로 그 교수와 협력을 하던 중 관계에 트러블의 발생했을 때 과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애'라는 낙인 찍으며 공격받은 경험이 있다. 또 다른 친한 다른 여자선생님을 비롯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들로부터 "고소한 애"라는 낙인을 경험했다.

창작작업은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작업이 주를 이루는 경우 또한 많다. 특히 웹툰이나 미술 같은 경우도 개인작업이 많은 분야이다. 이 같은 분야에서는 작업환경이 고립되어있고 가해자와 공통의 프로젝트나 조직에 공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는 업계 내 영향력이나 지위 등이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지만 현행 제도 상에서 이 같은 문화계의 특수한 상황들은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웹툰계 피해자에 따르면 만화는 1인기업체제이고, 성과위주여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민간기업에 비해 자유롭고, 비교적 외부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다.

> 회사 생활을 안 하고 고립되어있고, 인맥 위주고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안 들킬 줄 아는 것 같아요. 회사는 위에 과장, 이사도 있고, 징계도 받고 무서운 게 있는데 만화는 자기가 돈 잘 벌면 장땡인거죠. 본인이 세금 내고, 회사 세워서 세무사 고용해서 하는 1인 기업들끼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여자 작가들이 조심을 많이 해야 한다. 사적 회사에 비해서 뭔가 몸가짐이나 행동 자체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프리랜서니까.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하지? 예술계 자체가 다 그런건 아닌데 협소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사례 B)

2) 폐쇄적 커뮤니티에 따른 진로(전망) 및 일자리 상실의 우려

문화계는 스포츠계와 마찬가지로 공고한 전공 분야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폐쇄적인 구조 상 외부, '바깥'과 차단, 단절된 느낌이 크다고 표현했다.(사례 E) 특히

무용이나 미술, 영화(연기)의 경우 10대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런 경우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에 따라 지도자 및 선배의 위치는 감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문제를 고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그 어떤 규범성이나 가치 보다 본인이 속한 분야, 좁게는 자신을 지도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의 지시, 가치관, 규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연습, 작업 등에 집중되다보니 학습 및 노동 환경은 전공 분야 외부와 차단되는 경향이 생긴다. 따라서 우리 사회 내 성폭력 감수성이나 성차별에 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술계 전공생들과 종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정 분야에서의 학습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예술을 그만두면 다른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우며, 그래서 일반 기업이나 사회에서의 성폭력 신고들에 비해 문제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해당 분야를 그만 둘 생각으로 피해를 신고했다고 말한다.

> 당연히 못했어요. 신고하는 순간 제가 몰고 올 파장이랑 제가 무용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부부의 위력은 굉장히 크니까. 제가 어디 공모전을 내도 다 떨어질게 분명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를 보고 어떻게 애들을 뽑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밑에 있으면서. 그래서 계속 참았죠. 계속 참고, 다른 학교 가면 괜찮겠지 해서 편입도 열심히 해서 갔는데 (중략) 학교에서 학생들이 탄원을 공개 이름을 해서 탄원을 800명인가 해줬어요. 저를 지지한다는. 근데 그 교수 부인이 그걸 하나하나 봐요. 하나하나 보고 자기 제자가 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그러면 불러내서 자기는 그만두면 되는데 너네는 무용과 없어지면 어떻게 할꺼니? 돌려서 협박을 하고, 그 이름을 지우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래서 지워야할 것 같다고, 지워주세요.(사례 E)

이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일로, 친한 친구가 가해자 측 증인으로 가해자측에 서서 보호했던 일화를 꼽았다. 그 친구는 가해자 부인의 직속 제자로, 지도교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폐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내부인으로 있으면서 체험한 가해자 측의 막강한 업계 내 영향력과 힘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을 덮고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 가면서 커리어를 쌓을 것인지 가해자를 고발하고 자신이 속한 분야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신의 진로 선택의 권리까지도 침해받는 것이다.

너무 뻔히 보여요. 어딜 가도 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폭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무용단이 저를 받아주겠냐고. 약간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게 하는거죠. 왜 쟤를 데리고 있냐고. 나와보니까 보이는거예요.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중략) 무용을 그만 두는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고, 10년 넘게 했어요. 무용을. 근데 무용을 잘 하면 성공하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잘 해야 성공하는거라는 이 공식이 박혀버렸어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사례 E)

결국 피해자들은 그 공간과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가해자와 그 연루자들은 계속해서 문화계에 남아있는 차별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돌아오는 구조여서 회의적인 분위기, 참는 것이 미덕이 된 조직생활 분위기에 좌절을 느껴 참지 못하는 경우 조직을 떠나게 되어 (사례 F) 결국 남성들만 남게 된다.

대부분의 문화 분야는 업계 내 인맥이 좁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에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현장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가해자의 업계 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로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 회사는) 거기 말고도 지금 또 다른 기획사랑 콜라보 하려고 하는 중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바닥에서 일 하면서 그 사람을 안마주칠 수가 없는거예요. (콜라보하는 그 기획사는) 저도 너무 많이 들었던 회사고, 거기 미팅 가는 친한 오빠들도 있었고 하니까 저희는 더 무서운거죠. 이게 어쨌든 저희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중략) 아무도 모르는거죠. 미투 했는지도 모르고, 했어도 계속 촬영 현장에서 oo(피해자이름)랑 내가 사귀었었는데 oo(피해자이름)가 자기가 헤어지고 다른 여자애들이랑 하니까 질투나서 그런 글을 올렸다 하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자기 그때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배우나 관계자들은 저희를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좁은 바닥에서 누구 그랬다더라 하는 얘기가 진짜 많이 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거예요.(중략) 현장에서 저랑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녔을 때 그런 불안함도 있고, 어디 오디션이나 프로필을 낸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오디션에 떨어진다거나 연락이 안온다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한두 번 떨어지는게 아니니까 사실 안됐구나 하고 마는데 지금은 혹시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거예요. 확실히 이쪽이 너무 너무 좁다보니까 그런게 힘들더라고요. (사례 H)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나서도 불안하긴 했어요. 이게 그렇게 그 사람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이후에 나한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때 법원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된 것은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영화인들이

> 워낙 많으니까 유대관계가 쌓여서 그분 때문에 잘 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제가 영화현장에서 다시 안만나리라는 보장이 없고,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건가요?) 지금도 그런게 당연히 있죠. 그 영화 현장에서 제작사 사람들은 다 저를 알거고, 그 대표가 본인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만나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저를 알거 아니예요? 영화를 만약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뭔가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게 싫지만 걱정이 돼요. 현장에서 성희롱 발언이 있어도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려면 저는 영화가 좋은데 안그런 사람들끼리만 일을 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어쨌든 같이 그 남자들이랑 일을 해야하는데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례 I)

3) 인정받기 어려운 '근로자' 지위, '직장 내 성희롱'

문화계 종사자들은 업계 일의 특성 상 주로 프리랜서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터질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 테두리가 없어 계속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설학원이나 아카데미, 문하생의 경우에는 소속이 없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피해자들 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조사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끈끈한 인맥관계에 따라 일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은 문화계 특성 상, 계약이라는 공식적 행위 없이 우선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등의 일들이 빈번하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참여를 빌미로 성희롱을 가했는데,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 발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해당 가해자는 성희롱 당시 그 프로젝트의 총 감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미 3개월 단위의 계약은 끝난 상황이고, 마침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총감독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해당 기관은 가해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 (그 기관에) 진정서를 넣었던거죠. 그리고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1월 2일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알고보니까 가해자의 계약은 10월 14일부터 12월 20여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던 거예요. 계약이 제 생각에는 3개월 단위로 했던건가봐요.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그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제가 단톡방을 나가면 제가 나간 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말을 할까봐 저는 단톡방에서 안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거예요. 예술단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니 결정하고, 이 사람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해당 기관은 이 사람이 12월 며칠부터 계약이 끝나서 우리의 조사 도움이 못돼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제가 카톡 캡처에서 프로젝트에서 지시를 하고 돈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일을 하는건 괜찮은데 조사는 못하냐고 했더니 그건 이제 업무시간 외에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조사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한다, 계약을 하고 물어볼까? 아니면 계약을 하지 말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거예요. 저한테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제가 조사를 하게 계약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계약을 안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솔직히 계약을 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그건 계약을 안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계약을 배제하고. (중략) 가해자는 그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해당 기관은 조사권한이 없다고 하고, (사례 G)

보통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소속된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가해자가 해당 기관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기관에는 사건을 처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각 분야 내 공신력 있는 대표 협회가 존재하지만, 당연히 이 협회들이 가진 권한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해결 의지도 없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이나 가해자 조사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라. 피해지원체계 이용 경험 및 어려움

1)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및 성폭력 대응 정보 접근성 미비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현재 문화 분야 내 설치된 신고상담센터에 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했다. 이미 폭력예방 전문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극, 무용, 미술, 웹툰계 피해자들은 예술인복지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의 '보라'에 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연극, 무용, 미술계 피해자들 가운데에서는 과거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례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알고 있었고, 그 외에는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를 알고 있는 문화분야의 민간 성희롱성폭력 지원단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 해바라기를 한번 갔어요. 그때. 근데 그때 가서 상담을 하고 피해사실을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고소하실거예요? 안하실거예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고소장을 써놓고 할거냐 안할거냐, 그래서 저는 무서운거예요. 이게 했을 때 안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무고죄로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OO씨도 계속 거의 고소장까지 접수하고 형사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힘들다, 이게 현실적으로 증거도 없고, 어쨌든 사귀었던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거기서 흐지부지 된거죠. (근데 왜 해바라기 센터에 가셨어요?) 검색했을 때 나오는게 그런데가 없었어요. 그런데밖에 없었고, 그것도 OO씨가 가보자고해서 간거였는데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OO씨가 계속 서치하다

가 든든에 OO씨가 메일을 드리면서 그때 상담받고(사례 H)

그건(예술인복지재단의 신고상담 기능) 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다른 일 때문에 찾아보다가 그게 공지에 뜬걸 보고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생겼다는걸 보고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런 사업도 한다고 해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015년에 그 정도에 생겼는데 좀 더 일찍 생겼더라면 저는 정말 다 풀었을텐데 갔다가 이게 웬일로 사실 말씀드린대로 그 구조, 조직 안에서는 전혀 이것들을 하소연할 구조가 없다보니까 제가 굉장히 큰 기관에 의뢰했을 때도 그랬고 거기는 다 그러니까 같은 편이니까 말할 곳도 얼려놓고 되게 불가피하게 공적인 힘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죠.(중략) 그걸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100% 장담하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심리상담하는 것도 태반이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사례 F)

민우회 성폭력 상담실에 전화 한 다음날 여성예술인연대 활동가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선 그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를 해. 그건 상담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그림, 민우회랑은 다르게 신고를 했더니 거기에 심리상담이랑 법률상담, 4-5가지 지원해주는게 있더라고요. 저는 심리상담이랑 법률상담 둘 다 체크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둘 중에 하나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설명은 안해주셨는데 그러면 법률상담만 하시는거죠? 해서 법률상담하고 나왔는데. 원래는 심지어 제가 예복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뭘 하면 성폭력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걸 지나가듯이 들은 적이 있고, 하지만 뭔가 예복을 신고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옛날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인데 그 친구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례 G)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가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주로 소셜미디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셜 미디어 자체가 미투운동의 첫 장소가 된 이유도, 물론 빠르게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크지만, 이 외에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호소하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로나 공론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조력자를 찾는 경향이 높았다.

또 문화계 미투 이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관련 단체들이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덕분에 이 단체들을 통해 거꾸로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를 소개받기도 한다.

아시겠지만 SNS상에서 페이스북에서 Y피해자 지지 연대, 여성예술인연대 이런 식으로 SNS에서 제가 알기로 제가 친한 작가가 거기 주축이 돼서 하는데 작가들, 미술가 중심으로 실제 이 주체들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단체나 모임들이 느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호소하거나 하게 되는게 더 그런 것이 더 편하고요. 특히 예술에서 미투

SNS에서 미투가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그들은 다른 이들을 묶어줄 수 있는 물적인 토대가 없다보니까 SNS 트위터, SNS가 되게 중요한 장치인 것 같은데 그들이 바로 쉽게 미투가 문화계에서 생기게 된데 있어서 SNS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례 F)

문화예술계는 특히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심리상담도 그렇고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고, 든든도 사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 덕분에 케이스가 쌓여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감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영상쪽에 대해서. 그 전에는 상담신고 하는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거예요. 그게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웹드라마쪽도 마찬가지 아닐까. 구심점이 될만한 뭔가가 있어서 홍보가 되어야할 것 같아요. 특히 웹드라마를 주로 보는 어린 세대와 웹드라마에서 출연해서 배우를 시작하고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되어야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적어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한다, 이런 말들은 거짓말이고 믿을 필요없다, 이런 것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점이 생기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조력자 J)

지원기관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은 단순히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의 문제뿐 아니라 문화분야 내 성희롱 성폭력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처 및 지원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알 수 있는가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제가 제일 나빴던게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는 상태여서 피해가는게 있는데 요즘 점점 어려지는게 있거든요. 갈수록 그림도 나이에 비해서 잘 그리고, 거의 요즘 웹툰은 고등학교, 대학을 웹툰쪽으로 가서 데뷔를 빨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보면 다른데도 그러겠지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나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웹툰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일찍 그림을 준비하다보니까 너무 끌려가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회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PD잖아요. PD도 사회초년생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독으로 PD가 해버리면 나이나 사회경험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야 얘 이상하다는 판단이 있는데 어릴 때는 판단이 어렵잖아요. 제가 주변 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특히 사회경험 없이 바로 작품하는걸로 뛰어드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생기고나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후회가 많이 돼서 작품을 재능이 엄청 있는 친구들인데도 자기 잘못 아닌 것 때문에 작품을 못하고 하는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계약서 개정도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계에서는 수칙을 만들어서 하는게 있는게 좋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멋모르고 당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중략) 학교에서는 프로 데뷔하는건 진짜 잘 가르쳐주는데 사회생활 작가로 데뷔했을 때 이렇게 조심해야한다 그건 아예 없으니까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사례 B)

(사건 당시) 휴학중이요 (그때 학교 상담기관에 연락해볼 생각은 못했어요?) 없었어요. 학교, 어쨌든 학교에서도 학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 위주로 하니까 거기에 뭔가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는 안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런걸 당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미리

> 알려주거나 그런게 있으면 제가 그런 증거도 다 기록에 남겼을거고, 고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을텐데 저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소송 과정도 모르고, 법률적인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신고를 하든 안하든간에 최소한의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주면 그걸로 더 저렇게까지 해서 한다고? 그런걸 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I)

2) 예비예술인이 배제된 문화분야 지원체계

관련 문화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에 비해 예비예술인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벌어졌을 때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있어 더욱 더 취약하다. 그나마 이들이 대학에 재학중이라면 대학 내 신고 상담 기능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하생이거나 사설 학원 등에서의 연습생이거나의 경우에는 문화분야 내 구조적 지원 통로는 없는 셈이다.

사례 E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해당 분야에서 일 한 경험이 아직 없다. 물론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피해 지원의 경우에는 예술인 증명 과정 없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 자체가 예술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직업예술인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예수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 경험이나 지원받을 가능성에 관해 알지 못하는 예비 예술인인들은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기관 자체를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해도 문화 분야 내 피해지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 (예술인 복지재단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민우회라고 아세요? 그쪽에. 민우회 검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도움 받고 있니? 그런 식으로 여쭤보고 아뇨!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민우회에 연락을 해봐라! 해서 민우회분들도 저 도와주셨어요. 트라우마 치료 연구소라고 정신과 상담을 그쪽에서도 연계해서 받았어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 E)

피해자 사례 E는 가해자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열심히 편입준비를 하고 성공했다. 그러나 그 학교에 필수 교과를 가해자가 강사로 강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학교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예비 예술인이기 때문에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 알지 못했고 문화계 내 신고상담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아무 정보를 접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대학 안에 있었고, 대학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상담 시스템 덕분에 신고를 결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 지원은 받기 어려웠고,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등에 관한 것도 사비로 해결해야 했다.

3) 뉴미디어 장르 및 융합 장르 지원 기관 및 체계 부재

문화분야는 특히 최근 디지털미디어 대중화 가속화로 기존에 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조직의 포섭이 안 되는 새로운 장르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이는 와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웹드라마나 유튜브, 아프리카 티브이 등 새로운 분야 내 피해 유형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체계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 같은 신생 문화 플랫폼 시청자들은 물론 종사자들은 10대에서 20대로, 상당히 연령이 낮아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연계약서 같은 것도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웹드라마는 아직도 안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도 계약서 써본 기억이 거의 없고, 그런 것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내가 참여하는 이 작품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가이드라인이라던지 영화판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하니까 리스트라도 쓰든지 이 중에 이런 사람 없다던지 그런게 있지만 웹드라나 웹바이럴 광고, 유투브 광고는 하루 찍고 끝나잖아요, 이런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감독이고 이름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사례 H)

> 저희 든든으로 왔다가 웹드라마쪽이 너무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문체부에서 했던 100일 특별 조사단으로 연계했어요. 웹드라마쪽에서는 아는 사람이 정말 너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접근이 안되니까. 여기가 오히려 컨텐츠랑 이런걸 다 포함해서 다루지 않을까? 하고 그쪽으로 저희는 연계가 잘 된 것까지 확인하고 있었는데..(중략) 지금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웹드라마쪽이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적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컨텐츠 진흥원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치가 더 있어야 예를 들어서 영화쪽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지원 받을 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확인서도 내고 이 작업, 작품을 진행하는동안 성희롱을 예방하겠다는 서약서를 내요. 영진위 제작지원 작품들은. 사실 그런 식의 조그마한 장치도 없는거잖아요. 웹드라마쪽은. (큰 업체랑) 협업하는걸 상업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여기도 그런 식으로 조금의 장치라도 생기면 그게 정말 이 사람을 처벌하는 쪽까지 당장은 못가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법 위에 있는 사람처럼 설칠 수 없구나.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내가 예전처럼 나대다가는 큰일날 수 있구나 하는 사인을 만들어야한다. 그런 경고 사인이 이렇게 용감한 피해자들이 글을 썼을 때 경고 사인을 준건데 정신을 못차린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뉴미디어쪽이 유투브나 그런 쪽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쪽은 정말 어린 세대에게 훨씬 가까운 영역인데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시작할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가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조력자 J)

4) 문화분야 및 성폭력 피해에 특화한 상담 및 심리지원의 중요성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이후 상당한 불안피해를 호소한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문화분야 내 모든 피해자들의 활동 반경이 가해자와 동일 분야이기 때문에 늘 마주칠 것에 대한 우려, 가해자의 영향력이 여전히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 일단 제가 어딜 가도 그 남자 교수를 마주쳐야한다는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다는 그 불안감도 되게 컸고, 너무 심리적으로 무용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잠도 못자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살도 엄청나게 쪘어요. 집에서. 폭식하고 계속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밖에 생각이 안들었어요. 그런 높은 건물같은거 보면 저기서 떨어지고 있는 제가 보이고, 봉이 있으면 제가 자취했는데 빨래 거는 봉이 보이면 거기에 제가 목을 매달고 죽은 모습이 보이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례 E)

> 명예훼손 당하기 전이랑 후에 든든이랑 상담 받을 때 이런 상담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약간 애써서 외면은 많이 했어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 제대로 짚고 지나가지 않으니까 요즘에 생각도 많이 나고, 꿈도 많이 꾸고, 그 사람이 비슷한 실루엣이 걔를 보면 되게 놀라고, 그 분이 주 무대가 OO예요. 미팅도 OO에서 하고, 뭐도 OO에서 하고, 그러니까 OO 갈 때마다 불안하고... (중략) 요즘 들어서 필요성을 느끼는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 영상이 떴을 때 너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사례 H)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문화분야에 특화한 상담 및 심리지원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모든 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을 경험한 이들로, 우선적으로는 예술인들의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고 느꼈다. 또한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혼란한 중에 상담의 감정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역할 역시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생겼거든요. 2014, 15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예술인심리상담지원이라는게 있어서 제가 그걸 알아보고 거기서 2014, 15년에 그걸 3개월 정도 거기서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풀려고 노력의 일환으로 그 제도가 그때 처음 생겨서 지금도 심리상담지원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있는걸로 알거든요. 제가 작가들이나 주로 만나면 이거 되게 좋다고 해보라고 하는데 무료로 12회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비용이 되게 비싼데 그걸 상담하시는 분이 되게 좋은 분을 잘 지정을 받아서 그분이랑 하면서 되게 많이 한 시기를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F)

> 심리상담이. 그 선생님이 없으면 힘들었을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야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2주에 한 번씩 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 때도 지금 너무 힘든거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지금 너무 분하고 열받지만 가해자가 전화오고 그래도 그 날은 심지어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해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는 연락을 안할 생각이었거든요. 무서워서. 한 번 얘기해보는게 어떨까요? 어차피 oo씨가(피해자) 회피하는게 두려우니까 가해자에게 직접 왜 참석하지 못하겠는지 얘기해보는게 어떨까요? 해서 얘기를 했어요. 님이 저한테 성희롱을 했기 때문에 못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차라리 하고 더 이상 연락을 안하게 했어요.(사례 G)

예비예술인 피해자는 위의 두 사례와는 달리 문화분야에 특화한 상담을 경험할 수 없었다. 다행히 당시 재학중이던 대학에 상담센터가 있었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대학에 재학 중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기회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한편, 오히려 성폭력 및 문화분야 노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담의 경우에는 피해자 탓을 하거나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 정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 같은 경험은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도록 한다. 사실상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심리상담가는 희소하다. 문화분야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다.

> 심리상담센터를 그때 말고 그 이전에 갔는데 도움이 안됐어요.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강남에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등록을 하면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한번 봤었는데 너무 그렇게 그 센터가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상담사분이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하는듯한, 시계를 계속 보시거나 손님은 많은데 저도 이해했어요. 그분도 하루 종일 그런거 들으면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을 저한테 하니까.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도 한번 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 근데 그걸 심리상담센터를 갔다가 마음에 안들면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친구도 다른데 갔는데 똑같다, 그래서 거기서는 MBTI 그런걸 해봐라. 좀 좋은 상담사, 저와 맞는 상담사를 찾는게 힘든 것 같아요. 그분은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걸 누구한테 털어놔야 속이 편해질 것 같고, 그때는 내 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상담사분은 제 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결책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분은 제가 왜 신고를 안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건 경찰서에 가야하는 일 아니냐? 그냥 그렇게.그때 그건 여기는 포기해야겠다, 심리상담센터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갈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상담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신뢰가. 영업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계속 시계보고,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 (사례 I)

>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상담해야하는지 전혀 모르시고.든든도 그렇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심리상담 연계하는 기관들,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정신건강학과 의원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그런 리스트를 확보하는데 늘 부족해요. 이해를 가지고 다녀온 분들이 여기가 괜찮다 말씀

> 을 해주시면 거기로 계속 하는데 그런게 잘 되고 있는 상담기관들은 대기가 3달, 2달. 이분들을 믿고 여기를 소개해야하는데 그게 좀. (조력자 J)

학교 상담실을 통해 성폭력 상담을 받은 사례 E의 경우에는 당시 상담사가 문화분야에 대한 특별한 이해는 없었지만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큰 도움이 되었다. 당장 문화분야와 성폭력 두 영역 모두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심리상담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심리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상담은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제가 예술계통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어요.(문화분야를) 이해하시든 안하시든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잘 맞으면 되고, 상담사가. 근데 상담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꺼내기가 힘든게 다 예술하는 사람들이고, 다 생각하는게 똑같고, 폐쇄적이고, 들어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례 E)

5) 무력해지기 쉬운 법률상담

사건 상담 및 심리상담과 달리 법률상담은 거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힘들었던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요구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자 현실적 제약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 상 고용관계의 문제 등 문화분야의 특수한 일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적 성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을 접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것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당한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경험한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명백한 증거 제시를 원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거나 2차피해의 가능성이 두려워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예술계의 특수한 맥락을 변호사 등 법조계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중) 법률상담이 제일 별로였어요. 솔직히 꽃뱀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싫었고, 변호사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알지만 너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말들만 하는거예요. 같은 말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담 받으면서도 울고, 나오면서도 울고, 내가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뭐지? 했어요. (사례 C)

> 000 성폭력상담실이 법률상담은 화요일마다인가? 수요일만인가? 해서 그 요일에 제가 맞춰가느라 회의를 모두 갔다가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변호사님이 훨씬 보

> 수적으로 사건을 봐주셨죠. 이 사건은 같은 회사 안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을 적용을 못받아서 만약에 니가 고소하고 싶으면 민사를 해야한다. 민사를 하면 이게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을 보통 판사들이 꽃뱀 취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추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뭐지? 법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건가?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하고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해주겠다고해서 12회를 받겠다고 하고 나왔어요.(사례 C)

또한 문화분야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지원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 J는 법률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믿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설명을 해주신거예요. 찾아갔는데 뚜렷한 것 없이 할 방법을 못 찾았고, 명예훼손 당할 수 있으니까 글을 내리라고 해서 글을 내리셨다고. 그래서 그때 실망스러웠거든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점이나 신념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의 조언을 한건가요) 그리고 미투 초반이어서 판단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미투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폭로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싸울만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역고소가 들어와서 다시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당연히 이건 역고소를 든든에서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놓긴 했었지만 이건 당연히 방어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력자 J)

마. 개선 요구

면접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문화 분야 내 성폭력 감수성이 현저히 낮으며, 분야 별 공고한 인맥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내부의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배제시키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계 일의 특성 상 계약상의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성폭력 피해의 법적 구제나 지원 등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 기관이 만들어졌지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문화 분야를 전부 아우르기에는 규모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피해자들은 피해를 경험한 당시 문화 분야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기관에 관해 모르고 있던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영화 분야를 제외하고, 다수의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분야 내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 기관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선, 여전히 문화 분야 내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지원 체계에 대한 문화분야 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성폭력 신고상담 및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의 문제는 곧 문화 분야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 분야 내 성희롱성폭력 지원체계에 대한 높은 인지도는 반성폭력적 문화 확산 및 소극적이나마 예방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동료 네트워크 속에서 문화분야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예비예술인, 예컨대 학교나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예비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 분야 관련 전공 대학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예방교육 및 선생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 위계적 관계에서의 교수 및 지도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예술 전문학교 및 전문기관에서의 의무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문화 분야 내 장르 범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디지털매체 등의 대중화에 따라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이에 맞춰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 분야가 만들어지고 문화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며 노동 환경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분야를 탐색하고 그 안의 교육 및 노동 시스템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문화 분야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맥락이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문화계 미투 이후 표준계약서 활용이 확대되어 왔지만, 심층면접 결과 이는 영화 등 메이저급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무용이나 웹툰, 미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웹드라마나 유튜브 등에서도 이 같은 표준계약서의 확대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면접참여자들은 모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를 신고하는데 있어 조력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직 문화 분야 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계 미투 이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장르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화분야 민간 단체들은 문화분야 전공 및 종사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기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 분야 지원기관의 접근성 및 규모 확대와 동시에 문화 분야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주변에서 조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Ⅳ

해외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

1. 개요 89
2. 국제적 추세 90
3. 할리우드 계약에 도덕 조항의 확장 92
4. 새로운 성폭력 정의 도입 97
5. 성희롱 법정(low threshold service anti-sexual harassment tribunal) 설립 100
6. 형법 개선: 징벌 배상제도를 적용 102
7.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기금의 성별 할당 105
8. 지자체 참여 106
9. 예술 대학의 성희롱 방지 노력 109

1. 개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서구사회에도 비서구사회에 못지 않은 큰 파장을 던졌다. 성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구사회에서, 그것도 할리우드 같은 문화영역에서도 권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려는 행위가 만연해왔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할리우드의 여배우, 여감독, 그리고 유명인들은 이 분야 성희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속하여 타임즈업(Time's Up)이라는 운동을 제창하였다.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제정 추진 요구, 영화 스튜디오와 에이전시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운동, 그리고 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검은 의상을 입도록 요청한 것 등이다(Buckley, 2018).

성희롱·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캠페인, 홍보, 그리고 의식개선 워크샵 등 의식과 문화의 개선에서부터 좀 더 제도적인 개선 방법에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문화분야에는 조직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이 많다는 점에서 계약단계에서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많은 여성들이 고발을 하기 어려워하고 또 고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정의와 처벌 기간을 수정하고 민법의 보상 조항을 형법에 포함하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민법에서는 변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 외에도 예술 분야 특유의 도제식 인력양성 때문에 교수의 권력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학의 개선방안, 영화 제작 지원금,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국제적 추세

성희롱이 세계적인 문제인만큼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배우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ors, 이하 FIA)은 각 나라의 공연예술계 단체들이 어떻게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준비해야하고 어떤 활동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뉴얼 〈Combating sexual harassment: Resources, inspiration and recommended practices among performer unions〉를 발간하였다 (FIA, 2020)[46]. 이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성희롱 문제 발생을 막고자 노력하는 국가 단위의 어떠한 공연예술 관련 단체(union)들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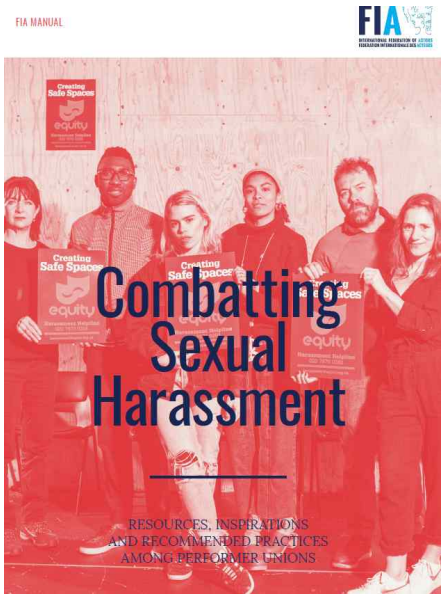

[그림 Ⅳ-2-1] FIA 매뉴얼 표지

이 매뉴얼에서는 다섯 단계로 효과적인 모델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 단계는 "연구와 서베이: 성희롱에 대한 측정, 비교 그리고 이해(studies and surveys: measuring, comparing and understanding harassment)"로 성희롱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성희롱문제의 심각성을 변호하는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하기

46) 이 장의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정리한 것이다. 국제배우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tors). https://fia-actors.com/policy-work/sexual-harassment-and-gender-equality/combatting-sexual-harassment-resources-inspiration-and-good-practice/ 2020. 8. 20. 검색

위한 서베이를 통한 측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행동지침: 변화를 위한 공유된 근본 원칙(codes of conduct: shared principles as a basis for change)"으로, 성희롱 문제 발생의 현실이 파악되었을 때, 각 섹터들은 행동지침(codes of conduct)를 마련하여, 더 이상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행동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잠재적인 파트너를 설정하기', '이해집단들을 결집시키고, 편집위원을 만들고, 파트너들의 상의하기', '행동지침 자체와 그 긍정적 활용을 위해서 미디어의 주목을 끌기'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캠페인: 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 인식 증가, 지원과 호소를 위한 동원'으로, '타겟 오디언스와 키 메시지를 정하고 연관 파트너들을 관련 시키기', '예산에서 최적화되도록 준비한 콘텐츠에 적합한 포멧과 미디어 채널를 선택하기', '캠페인의 가시성을 되도록 높이기' 등의 행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네번째 단계는 '지원: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보호하는 전화상담서비스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 운용, 홍보 방안, 개발 전략 세우기'에 대한 자세한 행동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번 째 단계로서, '단체들을 위한 실제 팁: 공연예술자를 작업 동안 보호하고 이들에게 더 힘을 북돋아 주기'를 언급하면서, 단체(trade union)적 차원의 전략으로서는 내부 전략과 프로토콜 세우기, 협상과 변호를 통해 단체의 이해 증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술적 측면에서의 노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

유럽은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미투운동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각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한 케이스로, 특히 북유럽과 영국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정부차원에서 적극 관여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미투 운동 이전부터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 근절에 앞장서 FIA가 매뉴얼에 영국의 영국배우협회(Equity UK)를 가장 우수한 모범 사례로 꼽아 매뉴얼에는 협회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3년 Sexual Offense Act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만든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스웨덴 영화진흥위원회(SFI)를 중심으로 성평등적 영화계를 만들기위해 어떠한 국가보다 선구적인 노력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미투를 계기로 2017년 영국과 마찬가지로 '동의 없는' 성희롱,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새롭게 법을 개정하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도 같이 높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유럽의 경우에는 각 유럽 국가의 정부 단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역시 주지할 만 하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는 'Voice of Culture'의 경우 〈Gender Equality: Gender Balance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라는 제목의 보고서[47]를 발간하여,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권고안을 유럽 각국의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캠페인, 입법, 지원기금 제한 등 세부적인 분야에 따라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이처럼 유럽은 미투의 진원이었던 미국보다 일찍이 노조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 발생의 환경을 파악하여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전통은 미투 시대를 맞아, 유럽 국가들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계기도 마련하기도 하였다.

3. 할리우드 계약에 도덕 조항의 확장

정규직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문화분야에서는 고용주에게 조직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성희롱법이 유명무실하다. 미국에서도 계약서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계약관계에 있는 탤런트가 부적절한 행동에 의해 그 지위 혹은 가치를 잃었을 때 할리우드가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도덕조항은 이미 한 세기 동안 존재했다. 처음 20년대에는 할리우드에서 유명인사의 추문으로 인해 떨어진 영화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우나 임원들과의 계약에 도덕적 의무를 명시하였다. 50년대에는 맥카시즘 시기에 할리우드 안의 공산주의자들의 색출한다는 명분에 이용되었다. 미투운동 이후에는 남성 유명인사들의 성추행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두 고용인(회사)의 이미지를 보호하여 재정적 손해를 입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Sheikha, 209).

미투운동으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된 당사자는 할리우드의 남성 명사뿐만 아니라 그들과 계약을 맺은 스튜디오, 제작사, 그리고 배급사도 포함된다. 성적 비행으로 고발당한 남자 배우나 감독들을 고용한 기업들은 이들로 인해 흥행에 타격을 입게 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리우드 기업들은 배우나 감독 등과

47) https://voicesofculture.eu/2019/05/14/gender-balance-in-the-cultural-and-creative-sectors/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하는 도덕조항을 넣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 이제 광고, 영화, 텔레비전 탤런트 계약에서 도덕조항은 일종의 원칙이 되었고 이는 법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Kressler, 245-246, Sheikha, 205에서 재인용). 반면에 이 조항이 스튜디오나 제작사에 의해 불공정하게 사용됨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기고 관련 산업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갤러거(Gallagher)에 따르면 "계약에 있어 도덕 조항(morals clause)이란 고용인이 자신의 공공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 때문에 고용주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하였을 때 고용주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 관련 조항"이다. 이는 계약의 주체인 "회사들이 보통 탤런트라고 부르는 고용인들의 비도덕적이고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생산물인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에서 추구하는" 것이다(Gallagher, 90, Sheikha, 206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렇게 정의한 도덕 조항은 많은 모호성을 가진다. Sheikha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의 도덕이나 품위를 무시하거나 지역사회를 놀라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혹은 탤런트와 투자자, 제작자, 고용주 혹은 배급자의 부정적 평판을 주는 것(207)"이라고 더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해 보지만 여전히 도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 모호성은 도덕성의 본질이 지역사회의 풍속을 말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또 세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준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전 세계와 전 세대를 거쳐 통일된 도덕적 기준은 없다. 따라서 고용인의 행동이 부도덕함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추상적인 도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자신이 시도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였는지(Willston, 2016, 608, 609, Sheikha, 43에서 재인용)" 보는 것이다. 즉, 고용인의 행동이 부정직하거나 신뢰할 수 없고 이 행동이 고용주의 평판을 해쳐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계약의 파기가 정당화된다.

가. 도덕 조항의 역사

1) 유니버설 스튜디오

도덕 조항의 시초는 1920년대 할리우드이다. 이 때 할리우드는 유명 배우들의 추문과 영화 내용의 선전성으로 인해 미국의 종교적인 정서와 잘 부합하지 않아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할 위기에 몰렸고 마침 극장 수입의 하락과 함께 이 부도덕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계기가 필요하였다. 그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영진은 도덕성의 쇄신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모든 배우 협상에 있어 도덕 조항을 삽입(Gallagher, 93, Sheikha, 8쪽에서 재인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항은 배우가 공공의 존경을 잃을 경우 계약사가 봉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8] Sheikha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이 도덕 조항을 통해 대중의 할리우드에 대한 책망을 완화하고자 했는데 첫째, 배우들에게 압박을 줌으로써 스타들의 부도덕한 라이프스타일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둘째 대중들에게 은막의 우상들이 도덕적으로 모범적 인간임을 확신시키려 했으며 셋째, 그 당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몇 십만 달라 가치의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사용되는 도덕 조항도 이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50년대 반공산주의 운동으로서의 도덕 조항

1950년대 전후로 도덕 조항은 정치적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즉, 비도덕적 사생활에 대한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념 및 동조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국 사회가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의회 안에 만들어진 '반미적 행동에 대한 위원회(HUAC)'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로 여겨지는 개인과 조직을 겨냥하였으나 종국에는 할리우드로 관심을 돌려 43명의 스튜디오 감독, 작가, 배우들을 공산주의 동조자로 지적하였다. 이 중 3명의 작가는 고용되었던 스튜디오로부터 해고되었다. 맥카시즘으로 불리는 이 정치적 혼동기는 도덕 조항이 법적 수용성을 가지고 현대로 진전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MGM 스튜디오의 레스터 콜은 위원회에서 증언하지 않은 이유로 스튜디오가 자신을 해고하자 전 고용주를 법정으로 불어내었다. MGM은 콜이 의회에서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스튜디오가 오명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도덕 조항을 걸었고 재판정에서는 콜의 증언 거부가 도덕 조항의 '공공 관습에 대한 적절한 고려'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론적으로 도덕 조항의 존재를 합법화하며 비도덕적 행동을 제한하는 도덕 조항의 가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Sheikha, 213). 연이어 다른 스튜디오인 20세기 폭스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역시 도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Selz et al., 930, Sheikha, 214에서 재인용). 이처럼 50년대 맥카시즘으로 인한 도덕 조항의 인정은 이를 영화와 텔레비전 배우 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조항으로 승격시켰다(Gallagher, 94, 96, Sheikha, 214에서 재인용).

---

48) 이 조항은 "배우와 여배우는 공공의 관습과 도덕성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여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키거나 대중의 증오, 경멸, 비웃음을 초래하거나 공동체에 충격, 모욕을 주거나 공중 도덕이나 품위를 해치거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영화산업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다(Gallagher, 90-91, Sheikha, 210-211에서 재인용).

3) 현대의 도덕 조항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도덕 조항은 탤런트의 비도덕적 행위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Sheikha, 214). 더 나아가 비도덕적 행위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바로 할리우드에서의 성적 비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다. 이는 무엇보다 할리우드 유명인사들의 성적 비행의 고발이 할리우드 기업들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덕 조항은 그 효력을 발휘하였고 도덕 조항이 미처 삽입되지 않은 사례는 개선되고 있다.

하비 와인슈타인의 사례는 직원의 성적 비행으로 인해 회사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와인슈타인이 '와인슈타인 컴퍼니'와 맺은 계약에는 그가 도덕적 비행으로 인해 벌금을 물거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그의 계약은 2017년 해지되기는 하였지만 회사는 여전히 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 이유로 인해 수천만 달러의 소송에 직면하였고 결국 2018년 파산을 신고하였다(DiNapoli, note 138, Sheikha, 220에서 재인용).

또 다른 사례로서 유명한 배우이며 코메디언인 루이스 씨케이(Louis C.K.)의 성추행 사건이 있다. 씨케이는 여성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자위를 한 행동 등으로 인해 5명의 여성의 미투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본인도 비행을 인정하였다. 씨케이를 총제작자로 고용하고 있던 FX 제작사는 당장 계약관계를 끊었고 씨케이가 FX 네트워크에서 제작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이 배우와 3천만불 규모의 특별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 도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었고 덕분에 수백만불을 절약할 수 있었다.

Sheikha는 이러한 미투운동의 여파를 보면서 앞으로 할리우드에서 도덕 조항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전망한다.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도덕 조항은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사용되던 것과 유사하며 그와 일관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즉, 도덕 조항은 배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에 기업주가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기 위해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21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 "공공 관습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충격, 모욕감,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 도덕과 품격을 해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는데 최근 폭스사의 도덕 조항도 "부정적 홍보나 악명, 혹은 배우를 공공 논란, 비난, 추문이나 비웃음을 받게 하는 위험" 같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있다. 둘째, 그때와 마찬가지로 도덕 조항은 법정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ABC 텔레비전과 인기 소프오페라의 배우인 마이클 네이더(Michael Nader) 사이의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도덕 조항을 인정하였다.[49] 이처럼 할리우드에서는 1920년대에도 지금도 도덕 조항은 연예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배우나 (임원) 혹은 기업 자체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미투운동은 고용인(배우나 임원 같은)의 성추행이나 강간 같은 행위가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함을 보여주었다.[50] 마지막으로 공공 정책의 측면에서 할리우드에서 창궐하는 성적 비행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덕 조항은 성적 비행의 결과를 시사하여 관련자들이 도덕 조항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또 피해자들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다는 점에서 공공 정책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Sheikha는 성희롱이나 강간 등의 고발만으로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heikha, 229).

4. 새로운 성폭력 정의 도입

오랫동안 강간의 법적 판단은 가해자가 폭력을 동반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시도에 거부를 표시하였는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성적 행위에 있어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의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한 '노'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성적 행위를 암묵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성폭력을 증명할 의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있으며 이는 결국 몸에 남은 폭력의 흔적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주의 진영에서는 강간의 정의를 폭력에 의한 강요가 있었는지의 여부에서 성행위에 대한 명백한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위협 아래서, 힘이 부칠 때에 또한 술이나 약에 취한 여성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한 주장이다. 사실 성행위 동의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는 없고 Alabi에 따르면 3개의 일반적 정의가 있다. 첫째 긍정적 동의

---

49) 인기 소프오페라 All My Children에 출연하고 있는 네이더는 마약 거래와 체포 저항으로 체포되었고 ABC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그와의 계약을 해제하였다. 네이더는 이에 도덕 조항이 너무 넓고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이유로 네트워크에 소송을 걸었다. ABC 네트워크는 네이더의 체포가 도덕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법정은 그의 체포가 ABC에 대한 부정적인 미디어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ABC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0) Sheikha는 이러한 느슨한 정의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고하고 계약된 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투운동을 악용하여 성적 비행으로 고발된 사람들을 근거 없이 해고한다면 결국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affirmative consent)로서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명백한 행위나 단어로 표현했는가?이다. 둘째 자유로운 동의(freely given consent)로서 동의가 사기, 강요,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의지로 주어진 것을 말한다. 셋째 동의의 역량으로서 그 사람이 동의할 역량이나 법적 능력을 가졌느냐는 것이다(Rainn, https://rainn.org/understanding-consent, 2020. 8.5. 검색, Alabi, 71에서 재인용). 알라비는 이 중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확실한 동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긍정적 동의의 이론이라고 주장한다(ibid., 78).

국제적으로 동의에 의한 성폭력 기준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이미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ces Act,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notes/division/5/1, 2020. 8, 3. 검색)을 통해 이미 성적 범죄(sexual offence) 성립의 기준을'Consent(동의)'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혐의 성립 기준의 수위를 높였다. 영국검찰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03년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다음의 표의 내용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51].

〈표 Ⅳ-4-1〉 영국의 성범죄 성립 조건

74조에서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동의했거나, 혹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는 한 종류의 성행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성행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질과 관련된 성행위는 허용할 수 있지만 항문성교나 삽입 성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성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검찰은 강간이나 성폭행 혐의가 있을 경우 2단계로 나눠 동의를 검토하도록 한다. 첫째로, 그들은 고소인이 성행위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 마약이나 알코올의 사용이 동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또한 고소인이 어떤 식으로든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가해자에게 폭력에 위협을 받는 고소인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 고소인이 동의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중요한 문제는 고소인이 선택에 의해 활동에 동의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살펴본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규명해야 하며,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합의된 성관계와 강간은 큰 차이가 있다.

51) 영국 검찰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성범죄. https://www.cps.gov.uk/crime-info/sexual-offences

유럽연합에서는 2018년 7월 1일 성적동의법(Sexual Consent Law)을 도입하였다. 스웨덴도 미투를 계기로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을 강화, 재빨리 개정하여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전 스웨덴 사회에 성희롱과 성폭력이 근절 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2018년 7월 1일 도입됐으며[52], 동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사람과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가 구두, 행동을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고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또한 스웨덴 범죄피해자보상지원청(Brottsoffermyndigheten, The Swedish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53]과 스웨덴 국립법원(The Swedish National Courts Administration)에 법률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관련 표적 단체에 지식을 공유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표 Ⅳ-4-2〉 스웨덴 법무부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 (2018년 4월)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의회(Riksdag)에 '동의(consent)'에 근거한 새로운 성범죄 입법에 관한 제안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성관계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스웨덴 범죄피해자보상지원청(The Swedish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은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았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성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이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범죄들 중 너무 적은 수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는 것은 새로운 입법과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새로운 성적 동의 법률의 도입을 제안한다; 성관계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강간죄 판결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이나 협박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특히 취약한 상황을 악용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률은 '태만한 강간(negligent rape)'와 '태만한 성적학대(negligent sexual abuse)'을 두 가지 새로운 혐의를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새로운 법률안은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서 주목하는 과실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성적 범죄를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법률에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 가해자가 아동의 나이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하지 않는 경우(negligence with regard to age)에 대

52) 스웨덴 법무부 홈페이지. 성적동의법.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8/04/consent--the-basic-requirement-of-new-sexual-offence-legislation/
좀 더 자세한 의회 결정은 의회 웹사이트 참조(스웨덴어):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arende/betankande/en-ny-sexualbrottslagstiftning-byggd-pa_H501JuU29/html

53)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agencies/crime-victim-compensation-and-support-authority/

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형법상 처벌 강화: 이 조항의 목적은 아동의 '성적 성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을 막기 위함)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기 지원: 성범죄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시작되면 즉시 피해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위의 모든 사항들은 각 의회의 정당의 의원들이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는 조사위원회(cross-party committee of inquiry)의 제안에 기초하고 있다.

입법 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힘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스웨덴 범죄피해자보상지원청에 주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성범죄 교육 캠페인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기도록 하였다. 모든 희생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신고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반면, 남성과 소년의 책임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스웨덴 범죄피해자보상지원청의 과제는 온라인 연수과정과 교사지도와 함께 새 법률의 내용에 따른 정보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 작업은 3년간 진행되며 당국은 이를 위해 매년 500만 SEK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미국에서 성행위의 거부 대신 '긍정적 동의(affirmative consent)'[54]의 결여를 성추행의 증거로 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년 안이다. 미국의 언론에 따르면 2014년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대학 내에서 긍정적 동의 조항을 대학 내 성추행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주가 이 판결을 따랐다(Cooney, 2018. 1. 17, Alabi, 79에서 재인용). 또한 같은 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같은 몇 주의 법에는 긍정적인 동의에 부합하는 동의의 정의가 있다. 아라비는 미국 연방 정부가 긍정적 동의 조항을 연방법에 채택하여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ibid., 77).

5. 성희롱 법정(low threshold service anti-sexual harassment tribunal) 설립

노르웨이 의회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는 데에 있어서 법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 성희롱 문제를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하여 2019년 6월 정부 법안으로 낮은 문턱

54) 긍정적 동의란 양 파트너가 어떤 형태의 성적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Cooney, S. 2018. The Aziz Ansari Allegation has people talking about 'Affirmative Consent.' What's That? Time (Jan. 17, 2018), https://time.com/5104010/aziz-ansari-affirmative-consent/, Alabi, 78에서 재인용).

의 성희롱 법정을 설립하였다.[55] 2017년에 개정된 평등및차별금지법(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Act)에는 노르웨이 평등및차별금지법원(Diskrimineringsnemnda, the Norwegia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Tribunal)[56]이 낮은 문턱의 차별과 성희롱 금지를 강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전에는 성희롱 사건은 법원에서 처리되었는데 사실상 그 문턱이 높아 실제로 가해자가 법정에 선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이 낮은 문턱 서비스(low threshold service)의 목적은 성희롱의 희생자에게 법원 절차에 대한 비용 없는 대안을 제공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법률 처리의 높은 문턱으로 소송과 법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성희롱을 신고하고 자신의 사례를 보다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르딕성평등기구(Nordic Gender Institute, NIKK)는 이를 노르웨이 정부가 이룬 가시적인 성과로 소개하고 있다(NIKK, 2020).[57]

〈표 Ⅳ-5-1〉 노르웨이 평등과 반차별 관련 법 개정안 관련 조항 주요 내용[58]

평등및반차별옴부즈만(LDO)과 차별재판소에 관한 2017년 6월 16일 법률 제5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세부법안제목: Lov om Likestillings- og diskrimineringsombudet og Diskrimineringsnemnda, Act on 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he Discrimination Tribunal (Discrimination Ombudsman Act)) 제1장 일반규정 § 1. 범위 이 법은 평등 및 차별 금지 옴부즈만(옴부즈만)와 차별재판소(재판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다. 옴부즈만와 재판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a) 이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성평등 및 차별법

55) 노르웨이 평등및차별금지법(Equality and Anti- Discrimination Act). https://lovdata.no/dokument/LTI/lov/2019-06-21-57
56) 노르웨이 평등및차별금지법원. https://www.diskrimineringsnemnda.no/spr%C3%A5k/1230
57) NIKK (2020). One year after Me Too: Initiatives and action in the Nordic and Baltic countries
58) Act relating to 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https://lovdata.no/dokument/NLE/lov/2017-06-16-50

b)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제외하고, 「근로환경법」 제13장
c) 소유자 구역법 제6조
d) 임대법 § 1-8

옴부즈만의 활동은 또한 회계법 § 3-3 c에 따른 양성평등과 비차별이 있는 작업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반차별법정의 구조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59]

노르웨이 반차별법정은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민원기구이다. 이는 법정이 스스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감독 등을 할 수는 없고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법정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사무국은 사건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은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일반 법원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이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은 개정된 평등및차별금지법 51조에 근거하고 법정의 조직과 활동은 동법 50조에 근거한다.

사건의 진행은 '양자 반박 과정(contradictory bipartite process)'을 따른다. 즉, 원과와 피고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접근권과 자신의 주장을 펼 권리와 상대 혹은 제3자의 주장에 반박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사건은 문서로 진행된다.

민원이 제기되면 법정은 반차별 조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사한다.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되면 이를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당사자에게 보내며 법정은 차별, 괴롭힘, 지시나 복수를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의) 중지, 배상 혹은 다른 조치를 강요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지시를 정해진 기간까지 지키지 않으면 법정은 벌금을 강요할 수 있다.

사건이 규정의 위반이라고 결정되면 법정은 손해에 대한 배상(damages)과 보상(compensation)을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를 요구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은 일 관계의 경우에, 보상은 고용과 비고용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6. 형법 개선: 징벌 배상제도를 적용

미국 최대 반성폭력 단체인 RAINN(The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는 경찰에 신고되는 강간 사건 중에서 20%만이 체포되고 다시 이 중 4%만이 검찰에

59) 이 부분은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tribumal, https://www.diskrimineringsnemnda.no/spr%C3%A5k/1230(2020. 9. 8. 검색)에서 정리함

보고된다고 주장한다((The criminal justice system: statistics, RAINN, https://www.rainn.org/statistics/criminal-justice-system, 2020. 8.11. 검색, Rua, 729에서 재인용). 학자들은 현재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볼 때 지금의 형법이 범죄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성폭력에 대한 현재 법의피해자에 대한 보상, 가해자의 응징, 그리고 범죄 자체의 억제 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투운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추행 사건들은 많은 경우 기소되지 않는다. 이는 검사들이 이 사건들이 기소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인데 즉, 형사재판의 원칙인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를 넘어 범죄사건으로 증명될 수 있은 가에 회의를 가지거나 혹은 배심원들이 범인들이 투옥까지 갈 것을 염려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한다(Bryden & Lengnick, 1997, 1209, Rua, 2019, 770에서 재인용). 결국 형법에서는 범죄의 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구성조건이 더 엄중하고 법의 적용이 민법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형법의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학자들은 민법의 불법행위법(tort law)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60] 하지만 이법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61]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Bublick & Mindlin, 2009, Rua, 730에서 재인용). Rua는 그 이유로 판결이 날 때까지 걸리는 긴 시간, 강간 보호법(rape shield law)[62]의 결여, 과실 방어

60)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또한 불법행위 자체를 억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61) 성추행 사건에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경우 형법에 비해 다음의 이점을 가진다. 첫째, 피해자가 재판과 판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민사재판인 불법행위법에서는 범죄 증명의 부담이 높지 않고 증거의 확실함이 엄격하지 않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수 있는(beyond reasonable doubt)' 확실히 범죄를 증명해야 하는 반면 민사의 경우 덜 엄격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에 의해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추행의 증거로 "피고가 원고를 만졌다. 피고는 원고를 만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원고에 해가 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만졌다(Bublick, 72, Rua, 734에서 재인용)"를 증명하면 된다. 셋째, 불법행위법은 피고를 구금시키는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보다 피고를 보호하려는 절차가 약하다. 예를 들어 배심원들은 피고가 증언을 거부할 때 이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한 추론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에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는 제시할 수 없는 경찰보고서나 타인에게 들은 말 등을 증거로 제시해도 되고 추행으로부터의 트라우마나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증거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법은 금전적 손해에서 신체적 손해까지 넓은 범위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가능하다. 여기서 징벌적 구제를 선택하면 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에서 범죄의 동기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금전적 구제방안도 가능한데 가해자의 "사과 외에 다른 대학, 아파트 단지 혹은 직장으로 이동(Bublick, 74, Rua, 735)"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comparative fault defenses) 허용[63], 짧은 시효 조항(statue of limitations)[64]의 문제와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함을 중요한 난관으로 들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의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한다는 오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또 심각한 장애는 성추행이나 강간의 피해에 대해 높은 경제적 배상을 판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성공보수(contingency fee)를 받을 확률이 낮아 성추행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Buel 같은 학자들은 불법행위법의 성추행 사건에 적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고가 더 많은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법을 개혁하여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Buel, 2004, Rua, 764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변호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늘리는 방법이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늘릴 수 있더라도[65] 범죄자의 처벌이나 범죄 저지의 측면에서 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다(Rua, 735).

이에 Rua는 불법행위법의 이점을 형법으로 가져와서 이 체계 안에서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장점을 골고루 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민법이 아닌 형법 체계 안에서 성추행을 다룸으로써 피해자는 비싼 법적 대리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반면 민법에서 가능한 피해보상을 형사에 적용하여 피해의 정도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Gilles, 686, Rua, 770에서 재인용). 이처럼 루아(Rua)의 제안은 형사상 배상(criminal restitution) 조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형사 배상이란 형법 안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비용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법원명령"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주가 형사상 배상제도를 허락하고 있으며 법정은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비경제적 손실, 결과적 손실, 그리고 변호사비까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배심원이 피고가 고발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정했을 때나 심지어 사면되었을 때도 배상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Anderson, 2017, Rua, 770에서 재인용).

형사배상 제안은 양형 협상(plea bargain)이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판사는 보통 판결하는 과정에서 배상 정도를 계산하는데 이 때 형사재판에서는 채택

---

62) 강간 재판시 피고의 변호사가 원고의 성적 역사에 대해 질문할 수 없도록 한 법정 규칙 혹은 법령(statute)

63) (여성) 피해자의 행위가 강간의 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Swan, 447, Rua, 735에서 재인용)

64) 시효 조항(statue of limitations)은 사건이 일어난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시한을 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통 시효가 1년으로 아주 짧은 편이다.

65) Rua에 따르면 주법을 개혁하여 손해보상의 금액을 늘린 경우 더 많은 성추행 사건이 불법행위법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Rua, 749).

가능한 증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 계산은 수학적 엄밀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손실을 추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손실의 정도를 증명하는 큰 부담이 없이 자신이 느끼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형사배상은 또한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상보다 수월하게 거둘 수 있는데 파산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배상을 회피하는 피고를 처벌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형사배상은 피해자와 변호사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불법행위 판결과 같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다(Gilles, 688-89, Rua, 771에서 재인용).

Rua는 미국의 경우 성추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민사와 형사 모두 소송으로 가기에 앞에서 언급한 많은 장애가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형사배상제도를 개혁하여 모든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실을 보상받고 권리를 찾도록 하며 동시에 민사소송에서처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상처의 회복을 꾀하며 가해자가 불법행위법에서 정도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는 성추행에서 가해자에게 끈기있게 배상(restitution)을 요구하고 양형거래(plea bargaining)시 피해자가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장점을 형법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기금의 성별 할당

스웨덴은 스웨덴 전 사회적 성평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만큼 문화예술계면에서도 성평등한 환경 정착,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아쉽게도 불발되기는 했으나, 문화예술계 내의 성폭력,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주지할만한 노력은 2017년이 발표했던 스웨덴영화진흥원(Svenska Filminstitutet, Swedish Film Institute, 이하 SFI)의 시도이다. SFI는 영화 보조금 지급 자격을 얻기 위해 제작사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공표한 바있다(Loughrey, 2017). 현재도 임기를 수행중인 스웨덴진흥위원회 회장인 안나 세너(Anna Serner)가 2017년 오스카 수상자인 스웨덴 배우 알리시아 비칸데르(Alicia Vikander)를 포함한 600명에 가까운 현지 여성 배우들이 스웨덴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양성평등 교육이 영화제작 지원금 지원에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SFI 이사회의 비준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회장인 세너의 아이디어는 제작사들이 성희롱, 양성평등, 다양성 등의 이슈를 다루는 무료 교육 세미나에 매년 1~2회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워크숍에 참석한 기업만이 공공기구의 영화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만약 비준이 되었다면 전세계적으로 영화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첫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꽃을 피우지 못하였으나, 여러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며 영화산업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스웨덴 영화인들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표명된 사례이기도 하다.

SFI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영화계에서도 선구적인 위치를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스웨덴은 2012년에 영화 기금에 관한 한, 완전한 성 평등을 목표로 한 첫 번째 국가로, 스웨덴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영화 자금의 절반이 여성 감독 영화에 갈 것을 SFI에게 요청하였고, 이미 그 목표는 2016년에 이루어져 이를 근간으로 보고서를 2017년, 2018년에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66].

8. 지자체 참여

유럽연합의 Voice of Culture의 보고서(Gender Equality: Gender Balance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2019)[67]는 문화계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반젠더폭력(Barcelona Antimasclista)"[68]라는 기구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방지 서비스를 다차원으로 접근하며, 문화계 종사자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시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성폭력에 대한 탐지, 예방, 알림 및 행동을 위한 기관으로 '돌봄 서비스', '예방 서비스', '캠페인',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SARA

66) Swidish Film Institute. Toward Gender Equality in Film Production. https://www.filminstitutet.se/en/about-us/swedish-film-institute/gender-equality/

67) Vocice of Culture (2019). Gender Equality: Gender Balance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https://voicesofculture.eu/wp-content/uploads/2020/02/VoC-Brainstorming-Report-Gender-Balance-in-the-Cultural-and-Creative-Sectors.pdf 2020.8.20. 검색

68) 스페인어로 anti-masculinity를 적절히 배합하여 만든 이름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 2020.8.20. 검색

(Support, Recovery and Shelter Service), Women's Support and Information Points (PIAD), 청소년들을 위한 SARA Jove가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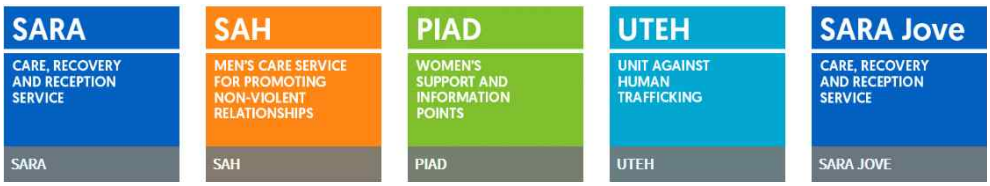

[그림 Ⅳ-8-1] 바르셀로나 Antimasclista의 돌봄 서비스 종류

SARA는 성폭력 피해자(여성, 아동, 청소년, LGBTI 사람들 또는 이 폭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관리를 제공하는 시 차원의 무료 공공서비스로, 전문가와 피해자 모임의 사람들에게도 조언기구로도 활동하고 있다. SARA에서는 피해자, 상업기관, 이웃(목격자)가 어떻게 예방과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9가지 언어 (벵갈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포함한 외국어도 포함)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파트너 폭력, 여성 또는 LGBTI로 확인되는 사실로 인한 괴롭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성 폭력, 성폭력, 강제 결혼 등 다양한 종류의 성 폭력을 다루며 센터에는 다학제 팀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된 전문가들(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수준에서는 '정보와 조언',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경험된 폭력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별화된 치료',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그룹수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집단치료', 공동체 수준에서는 '예방과 사회적 인식', '성폭력 상황에 개입하는 다른 서비스의 전문가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바르셀로나 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장애, 법적 상황, 성적 지향 또는 출신지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상담과 이메일 및 전화상담이 운영되고 있다[69].

SARA와 관련하여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쉘터 서비스(Municipal Gender Violence Emergency Shelter Centre (CMAU-VM))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성폭력 상황을 경험하는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긴급 주거 쉼터 서비스로 이 서비스는 센터

69) care servic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care-services/sara

운영팀뿐만 아니라 사회교육학, 심리학, 가족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과 함께 24시간 연중무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달 이상 묵을 수 있는 최대 수용인원은 27개소인 10개실이며 이 서비스는 SARA에 의해 접수되거나 바르셀로나 사회 응급 센터(CUESB), 사회 교육 의료 서비스(SAS) 등을 통해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2019년 대통령 직속 여성폭력방지 국가협약(국무총리 겸 국회와의 관계 및 평등에관한) 기금으로 일부 지원받고 있다[70].

SARA Jove는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제공하고 사회교육·심리학·사회노동·법률·취업 알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바르셀로나 시 거주 청소년들이 성별과 관련하여 폭력을 상담하고 여러가지의 SARA가 하고 있는 지원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성평등적 시각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현대무용과 최신의 음악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71]

마지막으로 PIAD는 SARA 이외에 무료로 심리치료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인 뿐만 아니라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의 다양한 고용, 협회, 문화, 교육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률 자문(다양한 법률 전문 분야(민간, 가족, 고용, 성 폭력 및 이민법 포함)에 대한 전문 지원), 심리 상담 지원, 차별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전반적 지원(파트너, 공공장소 포함), 자존감 높이기, 자기 방어하는 방법, 웃음 치료와 같은 무료 워크샵,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모임 참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역시 바르셀로나 시 거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이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IAD는 바르셀로나 시 어느 구역(district)에나 있으며 직접 방문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70) detecting gender violence.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care-services/cmau-vm

71) preventing and acting.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preventing-and-acting/2018-campaign

9. 예술 대학의 성희롱 방지 노력

스웨덴은 문화예술 교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자각하여,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의 예방적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명문대학교인 룬드 대학교(Lund University) 부속 말뫼예술학교(Malmö Art Academy)는 예술계에서 전통적인 교수 지도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학교들 중 하나이다. 1995년 개교 시부터 교수들이 학생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도록 학생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스튜디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규칙이 도입되었다. 최근 스톡홀름 예술공예디자인 대학인 Konstfack은 말뫼예술학교의 사례를 모범 삼아 개인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한 명의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대신 여러 명의 교수들이 한 학생과 병행하여 일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Sandström, 2017).

V

문화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센터 운영자 조사 113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132

1. 문화분야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센터 운영자 조사

가. 조사의 목적

문화분야에는 미투운동 이후 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가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부산성폭력센터 내에 예술계성폭력예방센터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센터가 전국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에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문화분야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문화분야 피해자에 대한 지원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운영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및 현 신고·상담 체계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조사 일정

문화분야 상담센터 운영자 인터뷰는 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6월 16일)에서는 든든[72]과 보라[73]의 운영진과 상담원을 만나서 논의했고, 2차(6월 23일)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74]의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권리보장팀의 상담원을 만나 논의하였으며, 3차(8월 27일)에서는 부산성폭력센터 내 예술계성폭력예방센터[75]의 운영자와 전화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비교 대상으로서 일반(비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운영현황도 조사하였는데 12월 1일에는 서울해바라기센터, 12월 2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12월 3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운영자를 각각 면접하였다.

---

72) http://solido.kr
73) http://bora.kocca.kr
74) http://www.kawf.kr
75) https://www.facebook.com/svpc.art/

다. 상담센터 현황

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신고·상담센터는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든든은 여성영화인모임이 2016년 문화예술인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2017년 1월 (가칭) 성평등구현대책기구 설립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공식 개소하였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된 보라는 콘텐츠 통계에서 콘텐츠 산업으로 구분하는 방송, 게임, 만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를 상담,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콘텐츠 분야 성폭력신고상담통합센터」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는 순수예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명시하는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재단이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내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센터」는 부산 지역의 예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한 케이스로 2016년부터 부산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예술인들이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으며 부산시에 신고상담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2018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19년부터 부산시의 예산으로 부산문화재단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상담신고센터는 지역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계가 앞장서서 상담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를 지자체가 수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센터(예술인 복지재단), 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 외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신고·상담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이다.[76] 그런데 이 중 인권진흥원의 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기능이 크고[77]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는 신고 처리,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 총체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다.

---

76) 이 외에도 신고센터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온라인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문체부 스포츠 윤리센터,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 등이 있다.

77) 여기서는 개인사는 다루지 않으며 대신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이 가능한 타 기관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노무나 법률 자문은 직접 수행한다.(인터뷰, 2020.12.2.)

〈표 V-1-1〉 여가부 지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신고상담센터	직접 조치	간접 조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노무, 법률 자문	익명 상담,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건처리지원단 파견
한국성폭력상담소	절차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외부 센터 연계
해바라기센터	절차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수사 지원	법률 상담 및 연계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피해자가 한 곳에서 사건 신고와 더불어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설립 목적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심리·정서 지원과 법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V-1-3〉 참조) 법적 지원은 법률상담,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및 법률,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 심리·정서 지원은 전화, 그리고 면접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지원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 그리고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말한다. 쉼터 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는 피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와 단체로 연계하거나 기타 치유프로그램 참여 권유 등을 말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9, 6).

성폭력상담소에 신고된 피해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강간(미수)로 31.1%, 그리고 성희롱은 14.3%이다.

〈표 V-1-2〉 성폭력상담소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건수
강간(미수)	284(31.1)
강제추행	350(38.4)
성희롱	130(14.3)
통신메체이용음란	17(1.9)
카메라 이용 촬영	41(405)
스토킹	30(3.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3(0.3)
미상	57(6.3)
계	912(100.0)

출처: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4쪽 재가공.

〈표 V-1-3〉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내용(중복 표시)

단위: 건(%)

전체지원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 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912 (100.0)	466 (51.1)	32 (3.5)	29 (3.2)	518 (56.8)	3 (0.3)	45 (4.5)
		61 (6.7)				

출처: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7쪽.

이처럼 성폭력상담소는 문화예술계 피해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심신회복과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모든 성폭력 지원시설처럼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무료법률지원금은 보통 8월경이면 소진이 된다든가 활동가가 부족하여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야간근무가 잦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상담센터를 가진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이 구태여 성폭력상담소를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계 공동체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문화분야의 사건의 해결하고자 할 때는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어렵다(인터뷰, 2020. 12. 3). 또 본 연구 III장 상담사례 분석에서 보듯이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에서의 성희롱의 비율은 전체의 37.1%인데 반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14.3%(〈표 V-1-2〉 참조)로 성희롱 피해자의 비율이 소수이어서 문화분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성폭력상담소에서도 2018년 미투운동 당시에는 연극계 피해자 중 일부가 상담 및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 여기서 상담받은 문화분야 피해자를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에 연결한 사례도 있어서 성폭력상담소와 문화분야 상담센터의 업무가 분명히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에 있어 문화분야 상담센터의 필요성은 확인된다고 하겠다.

해바라기센터 역시 원스톱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해바라기센터의 특성은 설립목적에 있는 것처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on-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설립 목적)”하고자 하는 위기사항 대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피해자의 피해유형 중 성폭력이 73.2%(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13)인데 성폭력 피해자에 있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24시간 운영[78]과 의료진 상주로 인한 증거채취의 기능, 그리고

상주 수사관의 수사기능이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 2019년 연감에 따르면 1년간 서비스를 받은 413,117건 수 중에 상담지원이 30.4%, 의료지원이 27.3%, 수사법률지원이 15%, 심리지원이 8.4%로 법률지원보다는 상담과 의료지원에 치중되어 있다(ibid., 21).

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지원하고 이후 상담에 치중하다보니 문화예술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언어적 성희롱 사건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하지 않는다(운영자 인터뷰, 2020.12.8.). 법률지원은 직접 하기보다는 경찰서 여청계나 무료법률지원센터로 연계하는 편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인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해자의 제재, 직장에서의 조치, 가해자 분리 등을 원할 때는 문화분야 상담센터로 안내해 준다고 한다(ibid.). 해바라기센터에는 문화분야 작업장을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문화분야 피해자의 상담을 할 경우도 있지만 심리적인 해결 외에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처럼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상담센터는 문화분야 피해자들에게도 열려 있고 또 여러모로 유용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피해의 특성—일과 일터와의 관련성, 프리랜서 직종, 프로젝트성 작업, 도제관계와 권력 불균형, 문화예술 산업의 특성 등—을 이해하는 상담센터의 필요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문화분야 상담센터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환경 조성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개별 상담사례들이 이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도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존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라.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현실과 한계점

전술한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필요성의 맥락에서 이 센터들의 얼마나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지 기술한다.

1) 최종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 범위의 한계

이 상담센터들은 운영 주체의 성격이나 환경이 조금씩 달라 겪는 문제점들도 조금씩

78) 대부분의 성폭력이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임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센터의 권한 범위와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 센터에 주어진 권한이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신고 접수, 상담, 지원, 그리고 예방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인원으로 담당하기 어려움, 그리고 각 센터의 대상에 대한 구획이 정확하지 않음 등의 문제를 토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각 센터들이 가진 특성에 근거한 문제와 이슈들을 각 운영진의 목소리를 통해 상술하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는 각 센터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건 조사와 가해자 제재보다는 상담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고상담자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거나 혹은 이들이 잘못을 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고상담센터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가해자를 각 활동영역에서 활동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상담지원센터를 찾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충족하기보다는 대신 상담치료 같은 다른 지원을 제공받는데 만족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와 센터 기능 사이의 불일치는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가 문화예술계의 직업이 일반적 직업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성되었는데 막상 그 특성에서 오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없이 설립되었다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상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은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설립 이전에도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센터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에 특성화된 센터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기존의 센터들에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의 한계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계의 노동 환경에서는 성희롱이 발생이 다른 분야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해결이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신고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이 이 분야 생존자체를 위협한다는 상황에서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했을 경우 이러한 한계를 이해해주는 상담자가 필요한 것이다.

문화예술산업의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 형태가 주류이고 인력 양성이 대체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며 산업에 진입하는 방식이 이러한 도제식 교육이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력개발이 다른 직업분야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승진 같은 과정처럼 공적인 경로보다 주변의 평판이나 소수의 권위자에 의한 평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업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에 참여는 공식적인 경로보다 지인에 의해서나 주위의 평판에 의해 이루어지고 문화계 생존을 이러한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 기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일반 정규직의 직업인이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조직의 보호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성희롱법이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기업주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직장 종사자의 51%는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12.8%는 경력단절을, 24.2%는 이직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79]에서 보는 것처럼 성희롱 피해의 보호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수가 프리랜서인 문화분야 피해자는 조직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일을 떠나거나 혹은 소수만이 고민 끝에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하지만 어렵게 상담지원센터의 문턱을 넘는 것이 원하는 해결을 즉각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분들이 든든에 와서 "제가 심리상담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하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하고싶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하고 싶다. 가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포커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센터 A)

상담센터 운영자들은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지원을 받는 것보다 가해자 처벌을 원해서 상담센터를 찾아오지만[80] 상담센터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가해자 처벌의 자체의 권한이 많이 없어 문제의 최종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내가 진짜 증인 여러 명 모아서 고소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고 무혐의 판결을 받는 것들, 왜냐하면 그게 정말 강간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해바라기 센터에서 증거채취를 했어야 실질적,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겠지만 언어적인거나 성추행이라던지 이런건 본 사람도 없고, 술 먹다가 그랬어. 우리 일반적인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 그럴 수 있는데 피해자는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로써 미비하다는거죠.
>
> 저희가 법률상담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기에는 기나긴 싸움이 되고, 몇 년 걸리는 동안

79) 한국노동연구원(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고용영향평가브리프, 4(연구책임: 김종숙), 5쪽

80) 이는 본 연구의 상담자료 분석에서 보듯이 신고를 했을 때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39.7%, 법률상담은 55.9%라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나는 어쨌든 일을 해서 일거리가 있어야하는데 이걸 숨기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다는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거취합도 본인이 해야하고, 주위의 평판관리도 본인이 해야하고, 물론 가해자 지목을 해서 그 사람도 이 업계에 못들어오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게 너무 많다는거죠.

> 사실은 저희는 상담지원센터잖아요. 직장 내에 말하자면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센터가 아니라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 대상이어서 그게 약간 헷갈리는게 뭐냐하면 우리는 그 고용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처벌을 요청하거나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 기관들이에요. 저희 상담지원센터는. 그래서 고용주가 됐든 사업주, 계약 관계자가 됐든 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적인걸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 센터는 권한이 없고…
>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도 필요없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공개가 돼서. 그러려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가서 법적으로 뭘 받아야하는데 무혐의가 너무 많아요. (상담센터 C)

상담가들은 상담을 진행할 때 피해자의 생존과 일거리의 문제, 평판의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피해자들도 도제식으로, 인맥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환경에서 아는 이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실제로 처벌이 잘 이루어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

> 실질적으로 방송 스탭들, 영화 스탭들, 특히 웹툰 작가들, … 이게 다 도제식이에요. 인맥으로. 이런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너 들어올래?" 내가 거기 공채로 지원해서 선정되는게 아니라 한 프로젝트 있으면 이거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 갈 때는 이 선배가 끌어주고, 저 선배가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고, 만화, 웹툰, 도제식, 방송 스탭, 게임은 좀 덜하긴 해요. 그건 처음부터 기업의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근데 방송, 영화, 만화 쪽은 도제식부터 (시작한) 오래 된 산업이기 때문에 웹툰이 사실 출판만화부터 해서 넘어 온게 웹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게임은 그건 있어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영화, 방송, 만화, 웹툰쪽은 오래된 산업인데 산업화가 되면서 급격히 커가면서 이쪽 부분은 프리랜서가 많고, 외주 계약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 처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있어도 저희 쪽에 신고건수가 적은 이유는 그런 것, 웹툰 작가인데 신고했는데 어차피 이 사람에게 작품을 계속 해야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고, 스탭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없는게 아니라 신고하기까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할 때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괄호 안, 밑줄 저자) (상담센터 C)

도제식 혹은 인맥으로 운영되는 분야, 프리랜서가 많은 분야에서는 가해자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가령, 영화라는 단일 분야를 담당하는 상담센터에서도 이러한 성폭력문제의 기록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문제, 직업적 자유의 제한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경력증명을 통해 예술인들 정보를 관리할 수 있지만, 보통 순수예술인들 중 이미 어느정도 권위를

가진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등록을 하지 않아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힘들다.

>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정말 형법적으로 유죄가 나왔더라도 이중처벌 그런것 때문에 그리고 그건 문제를 조회하는 것도 특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혹시 가해자냐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줄 수가 없거든요 … 저희가 법적으로는 상담내용을 밖으로 공개할 수 없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센터 A)

> 일단 문제는 예술활동 증명에 자격박탈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술활동에 제한을 받으시거나 그런건 아니예요. 증명 자체가 재단으로부터 혜택, 파견지업사원에 대한 지원이나 기타 등등 심리상담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라 … 저희가 기등록되신 분들의 정보활용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정보 활용이나 이용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는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권력이 있고, 금전적으로 안정이 됐고, 제자를 두고 그런 분들은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 이미 저희가 아시다시피 역사가 오래된 재단이 아니세요. 이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굳이 저희쪽에 등록을 안하셔도 되죠. 가해자 편, 행위자 편을 드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고, 피해자는 문하생이나 제자, 권력이나 영향력을 갖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간단하지는 않아요. (상담센터 B)

프로젝트식 작업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더구나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 가해자와 다시 부딪칠 위험 때문에 신고를 할 엄두도 내기 힘들다.

>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월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이거 끝난 다음에 신고 처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프로젝트 주체들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어서 되게 어려워지는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건 해결이 안되는구나 생각했던 것은 공간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개월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라도 신고를 해서 든든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처리를 했는데 이게 직장인이면 부서배치를 한다던지 그럴 수 있지만 2개월 프로젝트로 돌아가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만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저 가해자가 이 업계로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담센터 A)

국내 순수예술계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인맥과 네트워킹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게 되므로 선뜻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언이나 절차를 밟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어렵다고 상담센터들은 설명한다.

> 예술인들의 특성이 뭐냐하면 틀이 있는 회사원들처럼 조직이 아니고, 굉장히 개인 개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한다던지 책임이 없으세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지만 … (중략) …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쟤 되게 뻣뻣하네, 쟤 작업에서 제외해." 예술가들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야하나요? 필모그라피를 쌓아야하는데 그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배제되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업계, 생계에 큰 영향을 줘요. (상담센터 B)

> 굉장히 폐쇄적이고,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뭔가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피해자쪽에서 어떤 조치를 나서서 하게 되면 예술활동에 지장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인거죠 …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게 되게 좁은 장르별로 다르겠지만 이게 학연, 지연으로 다 엮여있어서 활동을 하다보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활동을 접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담센터 B)

이 때문에 상담지원은 가해자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력을 되찾는 것이 중심이다. 이들은 워낙 소송에서 오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충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결과가 신고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죠.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심리상담사이기 때문에 감당할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요.

> 저희가 원칙이 피해자의 회복력을 돕는 것에 저희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가해자 제재가 중점이라기보다 피해자가 회복하고 다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게 목적이어서 소송지원하고 그런 것도 피해자가 요청해서 하는 거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에요. (상담센터 B)

따라서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응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저희가 했던걸 생각해보면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 것보다 소극적인 대응을 드린 게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분께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피해자가 프로젝트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인데 그게 생계랑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가능한 접촉 없게 미팅 결과만 받는다든지, 소모임이 있으면 소모임에 가능하면 참석을 자제한다든지 옆에 앉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외에 프로젝트 진행이나 활동 진행에 지장이 되는 방안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상담센터 B)

법률상담을 받더라도 증거 미비 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소송까지 가기

위해서는 센터 내에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 저희도 상담만 했다고 다 지원을 해주지 않는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하니까 저희도 자문회의 열고, 전문가들에게 여쭤봐서 지원이 된 케이스냐를 대부분은 저희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냐, 저희도 심의를 해야하고, 지원이 되고 그런게 기간이 걸리고 (센터 C)

> 저희 같은 경우는 심의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자문 변호사 3분 중에 2분이 찬성을 하셔야 소송지원이 진행이 돼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시는데 두분만이라도 찬성하는건 최소한 거르는 방식이에요. (센터 B)

형사소송은 증거미비 등으로, 민사소송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의 여부[81]에 따라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서 가해자를 제재하든지 사과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 사실은 가해자 제재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진심어린 사과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방향을 가해자 처벌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개인간의 사과 이런 것도 있다고 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 A)

피해자가 원하는 바도 천차만별이어서 모든 사건을 법적 해결이라는 목표로 끌고 가기보다는 적절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대안이다.

> 피해자들이 어떤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사과를 받을 수 있고, 사과문을 받을 수 있고, 사과는 개인적인 사과문인지 공개사과문인건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한테 해서 제가 교육을 받게 시킨다든지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게 어떤 부분이냐가 단순히 사과를 받고싶은 건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싶은 건지 사실 가해자 교육도 자비를 들여서 시간내서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쨌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합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잘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합의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팔로업을 하고. (상담센터 A)

영화 분야 상담센터는 이런 측면에서 합의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든든은 대중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영화의 산업적 특성과 영화인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든든의 결정이 영화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81) 예술인복지재단 상담원에 따르면 순수예술을 하는 상담인은 99%가 프리랜서라고 함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 다른 예술복지재단이나 컨텐츠 재단의 센터들과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든든이 이만큼 가장 많은 상담신고를 받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영화계 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인들이 주도했기 때문, 이미 여성 영화인 모임이라는데 모여 있는 여성영화인들의 네트워크가 작동을 해서 영화산업 안에서 움직인거라서 그래서 훨씬 이 영화계 산업 안에서 자리잡은게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해주셨던 피해자 지원, 거기서 심리상담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그런 부분에서 활동이 다르고, 든든이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소화하고, 든든에서만 할 수 있는 사건처리절차를 만들었어요. 그게 합의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을거예요. 법적으로 갈 수 있어도 법적 대응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합의를 든든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진행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쨌든 영화계는 영화계 안에서 서로 어떤 그런게 생기는거죠. 다른 예술 분야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영화인들이 설립한 든든이기 때문에 연락을 했을 때 피신고인들이 훨씬 더 압박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센터에 있는 여성영화인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거냐. 개개인의 신상이나 그런걸 다 보고한건 아니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든든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나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생기는거죠. (상담센터 A)

이처럼 합의기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든든 외의 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보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담센터의 경우 인력이나 설정된 권한의 한계 때문에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

> 그런 (합의제도 도입) 언급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인력이 없고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행위자쪽하고도 컨택해서 사건 진행을 하거나 조사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하거든요. 그런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고 …

> 모르겠어요. 그걸 법적으로 합의 조정, 근데 합의조정을 할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건 법적기구예요. 조정합의가 서울법원과 법적으로 조정합의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합의조정이라는게 다 법안에서 요즘은 조정하게 하잖아요. 그런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컨진원에 있고, 그 조정이 법적효력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외부위원, 내부 변호사도 있고 외부 조정위원을 통해서 원고와 피해가 앉아서 합의를 똑같이 해요. 티비에 보는 이혼 법정처럼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합의가 되면 이게 법적 효력을 발휘해요. 저희는 그걸 법원에 보내면 법적으로 끝나는거예요. 근데 막말로 저희가 성평등 센터에서 저희가 변호사가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다, 저희가 운영매뉴얼에 있어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했지만 사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완벽한거지, 변호사끼리 합의했다고해서 그 다음은 뭐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했지만 합의를 못했던

> 것은 그게 앉아서 썼다고해서 이게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프로세스가 있어서 거기는 법적 효력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없나? 없지, 지금은 없지. 그러면 법적효력을 받을 수가 있나? 그건 법원의 결정기구로 들어가야하거든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나? 그런 단계죠. 저희도 2년밖에 안돼서 그런 것까지 저희 센터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하는건가? 근데 다른 센터를 다 봐도 그런 합의기능, 법적인 기능들은 없어서. (상담센터 B).

콘텐츠진흥원에 소속되어 있는 보라는 다른 상담센터와 비슷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소속기관의 성격이 다른 두 상담센터의 소속 기관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든든은 영화진흥위원회 소속이지만 여성영화인 모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정체성도 표방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그 목적이 예술인 보호와 지원에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의 목적과 더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임무로 하는, 인권보다는 산업진흥을 강조하는 기관이고 이 속에서 센터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나 기관의 좀 더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지금 센터 이름만 걸어놓고 한두 명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담사, 변호사님, 행정직원 해서 구색은 다 맞춰놨는데 지금 2년이 됐고 다시 한번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담센터들의 운영이라던가 상담사례, 이것에 대한 피해자 지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센터 각각의 방향성, 또는 어떻게 협업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하고(상담센터 C)

보라에서도 상담은 다른 센터와 같이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자들은 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한 후 센터로 발령을 받은 후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 몇 년 후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도 떨어진다.

>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가 그것까지 어느 선까지 피해자 지원이나 상담이나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고, 저희도 사건화가 되면 종결이 되어야 끝나는건데 종결이 안되면 계속 진행 중이면 이걸 어떻게 후속조치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계가 있는거죠. 저희도 사업들이 연단위로 끝나잖아요. 공공기관 사업들이. 근데 피해자지원이 다음 년도로 넘어간다던지 그러면 이월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결이 안되고 저희도 상담사님이 바뀌시고 오시고 하면 인수인계 받는 차원, 저희가 상담사님만 상담일지를 관리하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내부 상담사님, 변호사님, 행정직원 저도 전체적인 운영, 4-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일지라던지 그런 것은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라던지 이월됐다던지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는거죠. (상담센터 C)

이들은 이해당사자 기구가 아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기구 성격상의 한계도 지적했다.

> 공공기관이다보니까 말하자면 든든에서처럼 합의해주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달려들어서 피해자 입장이 돼서 가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제3자의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많은 지원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언론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입장이 그런 게 왜냐하면 그게 명확하다는 것도 저희는 모르는거죠. (상담센터 C)

2) 인력과 자원 부족

현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담센터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그 후유증이 오래가고 상담 몇회 같은 제도화된 지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센터에서는 심리상담, 법률상담 같은 피해자 지원에 예방교육, 강사양성, 홍보 등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 후 사후관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제가 상담만 할 때는 여기 오기 전에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게 있어요, 상담센터에는 종결하고 나서 언제든지 힘들면 다시 와도 된다. 한달 뒤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달 뒤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 위주라기보다는 지원 위주이기도 하고, 피해지원하고, 강사양성하고, 교육진행하고 기타 등등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상담센터 B)

공공기관의 경우 턱없는 예산 부족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심리치료는 단기간에 치료될 수 없는 부분이며, 소송 역시 기나긴 싸움이 예고된다. 이런 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너무 많은 콘텐츠 분야를 아울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상담센터는 예방사업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하였다.

> 저희가 소소하게 너무 최소한의 지원이고, 심리상담지원, 법률상담지원, 소지원, 저희끼리 저희도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1인당 최대 200, 300 이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한데 그 조차도 피해자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박사님 그런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서 오는 경우 증거가 저희도 상담만 했다고 다 지원을 해주지 않는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하니까 저희도 자문회의 열고, 전문가들에게 여쭤봐서 지원이 된 케이스냐를 대부분은 저희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의 케이스에 해당이

> 되냐, 저희도 심의를 해야하고, 지원이 되고 그런게 기간이 걸리고 또 그 분은 저희 쪽에 한번 와서 상담을 받고, 피해자 지원 신청을 하지만 그게 사실 심리상담 10기, 12기 받았다고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피해자지원이라는 말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 (상담센터 C)

>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텐츠 지원업체 연에 5000억 예산으로 몇 백개 기업, 700-800개 기업을 지원을 해요. 저희가 사실 주로 하는 것은 상담신고건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각 기업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지원업체들의 필수 교육을 받게 하고, 성폭력 근절 서약서를 쓰게 하고, 그게 위반 될 시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라던지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다. 한 적은 없지만 할 수 있다. 어쨌든 저희 지원 업체들에게 그런걸 주는거죠. 원인을 주고, 주의해야한다 이런걸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게 신고상담센터로만 그 기능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상담센터 C).

법률 상담을 위해서도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익숙한 전문 변호사 인력들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의 경우, 수임이 적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는 변호사들이 일을 맡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전문성을 갖는 변호사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러한 전문 변호사 인력풀을 늘리는 것은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한다.

> 성희롱 피해자를 대하는 변호사가 정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법률적인 것 플러스 피해자와 소통의 이중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대부분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적은 비용지원을 받으면서 소송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은 수가 너무 적은데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센터라던지 이런 곳에 와서 활동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은 어떤 의미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사건을 맡아서 이게 이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다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 성폭력 사건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제도 같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차이를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국선변호사분들은 워낙 바쁘시고, 적은 수임으로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한번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연락한번 하는 것도 어렵고,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든데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피해자들을 맡는 분들은 정말 많이 케어하시면서 이런 기관들이 껴있으면 진행상황이 어떤지 상담원이 같이 가서 사건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런 식으로 훨씬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소를 진행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많은 변호사들이 가해자별로 지정이 엄청 커졌다고해서 거기는 정말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려면 이분들에게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할 것 같아요. (상담센터 A)

또한 문화예술인들은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큰 상처를 받거나, 아예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문제는 국선이 선임되고 나면, 상담센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 양성과 이러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과 홍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본인 사례를 국선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사건 번호도 안주셔서 본인은 사건 번호를 모른다고 하셨을 때 저희 재단에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부분에서 대면 상담도 되지만 저희 쪽에 신고하신 분들은 짧게라도 사건 번호 찾으면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어디까지 진행되셨는지 알 수 있고, 그걸 근거로 변호사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나서는 중복해서 법률 대리인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서서 못하시지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죠. 굉장히 간단한건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예술인분들은 법을 잘 모르셔서 주변인들도 잘 모르셔서 짧게나마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센터 B)

> 그렇죠. 저희가 비용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소송대리 수임료, 송달료 그런 실비 제공인데 그건 위촉된 변호사님께 제공이 되는거거든요. 신고인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국선변호사가 미리 선임되어있으면 불가능하죠. (상담센터 B)

> 비율적으로 보면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 남성변호사의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여성이고 사실은 그런 변호사님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식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선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의식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지원받으시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있고, 한번 할 때 얼마씩이라고 정해져있지만 사실은 심리 수준 밖에 되지 않아요. 가해자랑 변호사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 수임 사건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비율이어서. (상담센터 A)

그나마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상담센터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연초에 이 적든 크든 예산한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 성폭력센터 같은 지역센터의 경우 예산을 받아오는 데에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매번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해마다 편성해야 하는 사업예산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시 의원들을 매년 설득해야 하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데에 있어 사업 자체가 매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만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설명은 예술재단센터에서 필요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4개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2019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예산이 바로 끝나면. 그러면 이 상담하던 피해자들을 어떻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붕 뜨게 되는 것에 대해서

> 시에 가서 설명하고,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시에서 안 통하면 지자체 차원이면 시의원에게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19년에는 20년 지금 조각, 조각, 6개월, 3개월 그렇게 되어있었고, 올해 하반기 운영도 사실 8월달에 예산 없다고 시에서 얼마전에 얘기를 했어요. 말이 또 대화가 안되고 그래서 꼭 문화예술과에서 해야하느냐 여성가족과에서 통합해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우리는 이쪽에 넘겼다,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돼서 제가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하반기 예산이 어렵게 얼마전에 따내서 오늘인가 교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과정이 피해자 지원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과정까지 생각하면서 설득과정까지도 어찌보면 지자체에서 해야하는 일인데 운영까지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설득하면서 안되면 압력까지도 가하면서 이걸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대응센터가 힘든 상황인거죠. (상담센터 D)

예산이 없다고 해도 상담을 그만둘 수는 없다. 직원들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상담을 이어나가는 부담을 안고 있다.

>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자들은 예산이 끊겼다고 안녕~ 할 수는 없는거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지금 계시는 실무자 선생님은 인건비가 안나가니까 계속 일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서 저희는 상담소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상담소에서 이관 받아서 지원을 공백기간동안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상담원에서 바뀌거나 이런걸 없애기 위해서 인력이 3명이 일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계 예방센터 실무자로 상담소에 경력선생님이 관리하는 형태로 가서 거기에서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3-4개월 공백이 생길 때는 상담소로 와서 이걸 이어갈 수 있게 했다가 다시 가고. (상담센터 D)

3) 산발적 센터 운영과 통일된 조사 및 합의기구 설치의 필요성

현재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들은 장르에 따라 구분되지만 결국 겹치는 장르도 있고 또한 문화예술계에 한정되지 않는 해바라기센터, 인권진흥원 같은 상담센터와 그 목적과 역할이 겹치고 있다. 상담센터 운영자들은 스스로도 다른 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저희도 헷갈려요. 저기서는 어떤 일을 하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하나? 이게 같은 건가? 총괄인건가?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전체적인 정부차원에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예복과 저희는 각각의 공공기관이 각각의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류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산업쪽이라고 해서 주로 방송, 게임, 음악 이런 쪽, 패션도 다 포함이 되는데 주로 사건이 들어오는 쪽은 아무래도 영화도 그렇고...
> 각 센터별, 장르별로 지금 너무 산만하게 되어있는 상태인거죠. ... 지금 2년이 됐고 다시 한번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담센터들의 운영이라던가 상담사례, 이것에 대한 피해자 지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센터 각각의

> 방향성, 또는 어떻게 협업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하고, 사실 문체부가 저희한테 얘기하신 것은 이 뒷부분이었어요. 각 센터에서 각각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정비하고 프로세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나서 최고액이 얼마야, 어떻게 프로세스해? 이렇게 정비해가는 것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담지원센터들 각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보완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하고, 그래서 사실 문체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비를 할껀지 해서 각각 올해 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들었어요. (센터 C)

센터 운영진들은 문체부 산하의 좀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큰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이들 각각 센터의 역할에 더 힘을 실어 주거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통일된 기구와 운영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인권센터처럼 상담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처벌, 합의의 역할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 설치에 모두 동의했다.

> (새로운 법안 관련) 권리보장 안에 성폭력 피해지원, 가해에 대한 조사, 제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통과되면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이 가능 할 것 같아요.

> (통합적 기구 설치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단이 30명밖에 안되고 인턴 포함해서 40명인데 그 기구를 설치하는게 가능하지 않냐. ... 예를 들어서 대학 내에서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상담기구 있고, 조사기구 있고, 심의위원 있고 그런 식으로 통합적인 게 필요하고, 그건 문체부 산하기구라던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권한도 있고, 지원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개별 예술인 복지재단, 영진위, 콘진원, 각각 기관에서 센터를 가질 이유가 없는거죠. (상담센터 B)

마. 시사점

상담센터 운영자들은 상담가들의 사명감에 비해 부족한 자원의 문제와 아울러 주어진 역할규정과 권한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즉,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의 역할은 피해자의 지원과 예방교육인데 피해자 지원은 사실상 아주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피해자들은 실상 가해자의 사과를 받도록 한다든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등 가해자 제재가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해자 제재는 피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이다. 이 때 상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든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한다든가, 혹은 가해자가 속한 조직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따라서 상담센터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또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은 상담센터의 만성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인력이란 단순히 상담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사명감을 가진 성범죄 담당 변호사도 포함한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임에도 상담사의 대우는 열악하고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상담사들은 잦은 이직을 경험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고자 하는 변호사도 앞에서 서술한 많은 이유들로 많지 않다.

그런가하면 지금의 영화, 문화, 예술로 나누어진 상담센터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단 이용자가 보기에 세 센터의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가 영화 분야의 든든은 기관의 형성부터 자발적이고 영화인들이 직접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좀 더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만 보라와 예술인 복지재단 상담센터의 경우 서로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그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보라의 경우는 산업진흥의 목표를 가진 콘텐츠진흥원에 속해있어 보통 성폭력상담센터가 가지는 인권지원단체의 성격을 전적으로 표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상담센터 전문상담사는 별도로 채용하지만 행정인력은 콘텐츠진흥원 전체 차원에서 순환시키는 것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있다. 또한 전술했듯이 보라의 주 고객이 되어야 할 콘텐츠산업의 종사자 중 프로젝트 사업을 주로 하는 프리랜서들은 센터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법적 해결을 하는데 장애가 많은 관계로 센터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상담센터 중 든든은 영화,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로 대상의 구분이 좀 더 잘되는 반면 보라의 경우 콘텐츠산업의 복합성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동일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분야 안에 세 센터의 존재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세 센터에 대한 정보를 받고도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다는 경험담이 많이 존재한다.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들은 대부분 미투운동의 산물로 2018년에 시작하여 아직 짧은 역사를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 경험한 일이고 해결방안으로 대두된 신고상담센터도 문제에 대증적인 방식으로 급조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센터라는 더 긴 역사와 경험을 가진 조직을 모델로 하였지만 문화분야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문체부 산하 상담센터의 재구조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분야 성희롱과 성폭력이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 문화분야의 시장 구조와 직업 문화와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가. 개요

1) 목적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현재 문화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계 종사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과 기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현재 문체부 대책과 연계성을 가지며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2) 방법

델파이 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가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지를 돌려 의견을 받고 종합하여 이로부터 좀 더 발전된 문제를 만들어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응답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인해 진화하여 가장 합의가 높은 의견이 생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델파이 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와 국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2차 질문지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8개 이슈에 대한 정책안을 만들어낸 후 이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찬반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 동의가 높은 안은 연구의 결론에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3) 일정

가) 1차 조사

2020년 10월 12일 ~ 10월 18일

나) 2차 조사

2020년 10월 19일 ~ 10월 25일

4) 패널

전문가 패널은 17명으로 법률 분야 6명 (법학교수, 변호사), 상담 분야 6명(상담원, 상담 센터 행정가), 그리고 문화/인권 분야 4명(문화 분야 연구자, 인권행정가)로 이루어졌다.

나. 1차 조사 내용과 2차 조사 결과

1) 내용

1차 질문지는 포괄적 피해지원,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그리고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의 크게 세 영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분야 프리랜서들이 성희롱 범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포괄적 피해자 지원방안, 그리고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 방안 및 지역 차원의 신고·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1. 포괄적 피해지원
가.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성희롱 법제도 정비 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_긴급생활비 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등 다. 예방교육 의무화
2.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강화 가. 현재 신고상담센터 재정비 나. 지자체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설립·운영 지원

2) 1차 조사 결과

가) 성희롱 법제도 정비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법의 제개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패널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법의 성격 혹은 효용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고용평등법 중 어느 한 법에도 전폭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고 패널별로 각 법에 대해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가장 잘 정리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즉, 국가인권위법은 누구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고용평등법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 각 법의 성희롱에 대한 정의, 적용대상 및 구제조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행위의 피해자는 타 법에 비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뿐 아니라 용역·위탁·도급계약의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성희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한 건은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도 하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결정을 내리는 데 그치므로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협력업체·하청업체 근로자, 구직자, 파견근로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상기 3법 중 가장 강제력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조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관한 정의규정(생략) 외 관련 규정을 보면,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또는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상기의 법에 비해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근로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법에는 직장 내 구제조치(사업주에게 조사 등을 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근로자로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법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희롱 규정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등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해되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3법에 프리랜서 근로자를 성희롱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술인권리보장법(안)과 같이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형태, 환경에 특화되어 성희롱 피해를 조사 및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이 세 법의 개정보다는 별도의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패널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현행법의 법체계 상 프리랜서를 보호대상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고 각 법을 관리하는 부처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3법의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각각 부처간 영역 다툼 및 당사자 범위 해석에 따른 다툼, 강제조치권한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분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법을 제정하고 성희롱 발생 관련 내용은 신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양성평등기본법은 일반법으로서 개별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지위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또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려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상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에 넣는 경우 기본 법체계로 인해 상세한 규정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입법방안

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입법화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패널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맞지 않고 또 과태료는 공무이행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 지원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과태료를 손해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해자 합의와 같은 맥락에서 낮은 처벌을 받으려는 가해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이 낮은 처벌을 위해 합의하고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 접근하여 많은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면, 피해자 신상에 대한 보호 문제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가해자로부터 받지 못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법원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2) 과태료를 손해배상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과태료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이 간다면 이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이익을 얻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어긴 자에게 국가가 행정처분으로 물게 하는 돈으로서, 성범죄와 같은 사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취지도 다릅니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공법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가해자가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에 다른 방식의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예술인권리보장법안 등을 통해 생계비 지원을 입법하는 방안, 예술인 복지재단의 지원업무로 행정절차화하는 방안,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문화예술계 내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중재하는 업무를 만드는 방안 등이다.

다) 기타 피해자 지원

이 외에 취업알선서비스에 대한 찬, 반 의견이 있었는데 취업알선서비스가 피해지원 방안으로 가능하다는 생각하시는 패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 피해지원내용으로 취업알선을 넣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반면에 오히려 공공차원의 취업알선서비스가 피해자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던 프리랜서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예방교육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다. 일부 패널은 의무교육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또한 실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무화를 반대하였다.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 2차 질문지에 제시하였다.

다음은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 현재도 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는 법정교육 중 하나입니다. 본 조사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지원사업 신청시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신청시 예방교육 참여이수증을 제출한다 하여도 사실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지원사업 신청시 예방교육 의무화에는 반대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시 예방교육 의무화에 반대 이유로는 지원사업별로 경쟁률이 작게는 2대 1, 많게는 10대 1을 상회하는데,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신청은 주로 연초 3월 이내 이루어지는데, 참여기업들이 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기 위해서 연초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파견할 수 있는 강사진 및 예산상의 한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고서 7쪽에는 현재 지원사업 참가자들은 예방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콘진원의 지원사업 참가자에 대해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 근절서약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의 의무는 모든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지원사업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참가자 중 개인 창작자, 팀 단위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는 있으나, 의무화에 의해 실시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해서는 1)각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규정을 반영(2,3항이 반영)하고 2)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근절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계획서 제출 3)지원사업 결과평가시 예방교육 이수확인증 제출 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성희롱·성폭력을 표준계약서 해지조건으로 명시

표준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외에 제3자를 성희롱·성폭력 한 경우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셨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희롱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성희롱을 당한 을의 위치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계약해지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의 생존을 어렵게 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타방의 계약당사자보다 "갑"의 위치에서 "을"인 계약당사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계약당사자는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일 수 있어, 계약 해지 조항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단지 계약 해지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성희롱 피해자인 예술인에 대하여 상대방인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도록 방지 조항을 마련하여야 피해자가 피해 호소 이후 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음.
- 다만 제3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나는 정도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제3자의 범위를 문화예술활동과의 관련성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너무 느슨하게 허용되면 문화예술인의 직업권과 생존권을 해칠 우려도 있었다.

해당 문화예술인이 제3자에게 가한 성희롱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과는 별개로 행위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당 문화예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생존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당장 해지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성관련 비위행위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의 재정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보였습니다만,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예술인 보호관직을 새로 만들어 조사와 중재를 담당하게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였지만 이 직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부여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사건 조사와 중재 뿐 아니라 피해자지원까지 예술인보호관 또는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조사에 따라 중재 및 피해자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텐데, 사건조사·중재와 피해자지원이 구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사건조사와 중재는 예술인보호관이 담당하고, 피해자지원이 현재의 센터에 남아 있을 경우 개인정보 및 사건에 대해서 각 센터로 정보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설명, 2차피해 등이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상담/사건조사/중재/피해자지원이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센터는 각 장르별/영역별 성희롱예방교육 및 인식확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의 경우도 양평실, 각 과별로 신고상담센터 사업 및 센터 관리 기능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내에서 기능 통합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으로 표준화된 센터 운영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일기관으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분야별 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기능은 각 센터에 남겨두고, 일부 기능은 통합 센터에 맡기는 형식 것은 업무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 조사와 중재를 예술인보호관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옴브즈만 제도로 운영될 '예술인보호관'의 독립성,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관건임. 참고로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운영개방형직위로 임용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당 부처의 영향력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봄.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인보호관이 문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두 위원회의 사무처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함(법안 제29조제1항). 예술인보호관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또는 예술인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안 제29조제2항).
따라서 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한 한다면, 예술인보호관이 사건에 대한 결정(판단)이 두 위원회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할 것임. 즉, 예술인보호관의 임기와 노동환경, 결정권한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봄.

현재 센터들은 피해자 회복과 사건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처럼 센터에 남겨놓는다면 성폭력피해지원이 본 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팀이나 정말 센터(현재는 사실상 그냥 창구)가 신설되어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술인보호관의 독립성, 전문성, 예술인보호관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고용안정 등이 확보될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다만 예술인보호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립성, 전문성,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조사와 중재를 맡는 사람은 독립성, 전문성에 더하여 그 지위의 안정성(고용안정),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 등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현재 여러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서 처우가 열악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인보호관도 이러한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단지 예술인보호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제대로 된 조사와 중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 지자체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다수가 동의하였지만 이 건도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문화예술인 신고상담센터는 각 지역별로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모두 지방에 있고, 그렇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지방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므로, 서울에서는 사건을 지원 및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상담센터도 예산 부족,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가부 산하 상담센터에 문화예술인 피해자 상담센터를 부속으로 운영하게 되면,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원의 지속성(안정성)이 담보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인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하되, 여가부의 지원과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에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인 신고상담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신고상담센터의 지원이 기존 서울 소재 센터의 지원과 같이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문화예술인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인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라는 부속기관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피해자를 위한 상담업무를 담당할 인력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필요하지만, 부속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업무 등이 과부하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신고상담센터의 공정한 운영을 고려하였을 때, 지자체 예산 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직접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문화분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곳도 있으며, 지방 토호 세력등의 권력 관계로 인해 문제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지난 몇 년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문체부 등 중앙 정부를 통해 지자체 신고상담지원센터의 예산이 나올 때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지원만이 아니라, 담당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으나, 현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됨.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의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전국에 폭 넓게 자자체차원의 상담센터가 설립되는 것에 동의 함. 단, 독립성을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 상담소에서 대응센터를 부속으로 운영하는 부산시의 모델로 좋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관할부처에 대한 담당은 각 과에서 맡아야 한다.(문화예술과에서 성폭력상담소를 담당하는 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할 가능성이 높음.) 성폭력예방과 성인지감수성은 특정한 여성 관련과에서만 담당해서는 안 된다. 만약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디지털계 각 관련 상담센터부속운영을 성폭력상담소에 모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계, 문화예술게 등 각 관할 과에서 그 역할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다만 현재 예술인지원센터가 부재한 지역도 있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문제, 지자체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문예진흥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광역문화재단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현재도 각 창구별 피해지원 예산 대비 신고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역별 창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창구 운영 예산 대비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음.
따라서 지역에 신고상담센터가 설립된다면 예방교육 등의 업무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됨.

3) 2차 조사 내용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조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성희롱 법제도 정비

1-1.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시 한번 다음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
②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③ 국가인권위법 개정 ( )
④ 새로운 법 제정 ( )

1-2. 라항에 동의하실 경우 어떤 법을 제정해야 할지 의견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최근 발의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 발의안에 포함' 혹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 )

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술인권리보장법안 등을 통해 생계비 지원을 입법하는 방안, 예술인 복지재단의 지원업무로 행정절차화하는 방안,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문화예술계 내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중재하는 업무를 만드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미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법안과 별도로 업무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① 「예술인권리보장법」 혹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 같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생계지원 조항을 포함 ( )

②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상담센터의 피해자 지원업무의 하나로 생계비 지원을 포함 ( )

③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문화예술계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개정[82] ( )

④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정 및 중재업무를 문체부 업무화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83] ( )

다) 기타 피해자 지원방안

아래에 피해지원방안으로 주신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이 중 동의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①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 같이 문화예술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취업알선서비스를 포함 ( )

② 성범죄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취업 심사 시 성범죄 피해나 공론화를 이유로 차별을 한 조직이나 개인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 (문화예술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포함) ( )

③ 피해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창작 활동·사업과 예술 교육 지원 ( )

---

82)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같은 입법절차나 부처 간의 행정적 조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83) 노르웨이의 낮은 문턱 성희롱 법정(Low Threshhold Tribunal)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함. 이 법정의 판결은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 없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서만 진행됨

④ 예비예술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안(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권리 보장법 등)에 예술인의 정의 규정에 예비예술인을 포괄 ( )

라) 예방교육 의무화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있는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이 있고 예술지원기관 공모사업은 문체부의 정책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몇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이 중 동의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술해주세요.

①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 혹은 권리보장법 등에 모든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예방교육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예를 들어 현재 적용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도 예방교육을 시킬 의무를 명시하고 온라인 교육안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교육안 개발의무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게 함 ( )

---

②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입법하고 1) 각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명시 2)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근절서약서 및 예방교육이수 계획서 제출 3) 지원사업 결고 보고시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함 ( )

---

③ 예방교육 의무화 반대 ( )

마)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 적절하지만 몇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오니 동의하시는 조항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성희롱·성폭력은 대체로 상하관계 속에서 권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상급자와 하급자를 구분하여 교육하여야 함. 상급자들에게는 자신이 가해자가 될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판단기준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하급자들에게는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인지(본질)에 초점을 맞춤 ( )

② 대면교육으로 현장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소규모 토론식, 간담회식이 효과적임 ( )

③ 강사 부족과 기관별 역량의 차이 때문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가장 효율적임 ( )

④ 문화예술 분야 상황/사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특수상황에 대한 내용구성을 통한 예방교육 및 퀴즈 (피해 당사자, 조력자, 조직 관계자, 조직 대표자, 상급자/선배, 동료, 지원기관 담당자 등 상황을 구체화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퀴즈를 풀게함) ( )

⑤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교육 보다는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집단적 공감대 형성과 이슈 발생 시 공동체 내의 지원 체계 마련,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강령) 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이 접목된 형태로 구성 ( )

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① 계약당사자가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

②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성희롱·성폭력 가해를 한 경우도 윤리적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

③ 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MCN 같은 문화기획사(갑)가 문화·예술인(을)과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제3자에게 성희롱·성폭력 가해를 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

사)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 센터 정비

예술인보호관이 올해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제안되어 있지만 그 법의 통과 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직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피해자 지원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제안 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현재 피해자지원 업무를 ①신고상담/사건조사/중재/피해자 지원과 ②장르와 영역별 성희롱 예방교육 및 인식확산으로 나눈다. 전자는 예술인보호관 혹은 다른 체제의 문체부 내 단일 기구로 하고 후자는 현재의 상담센터가 담당한다. ( )

② ①신고/상담/지원의 조력과 지지자 역할과 ②조사/심의/징계의 가해자 제재의 역할로 나누어 전자는 현재의 센터가, 후자는 예술인보호관 혹은 유사한 직의 업무로 한다. ( )

③ 문화예술분야 전담 피해지원 창구 내에서 피해 신고부터 사실조사, 가해자 제재, 피해자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

아) 지자체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패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문체부의 예산(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문예진흥기금 등 활용도 고려)으로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센터에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문화예술계 전문상담원을 배치한다. ( )

② 문체부의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규모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처음에는 광역시 차원에서 시작한다. 이 지원센터의 업무는 피해자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문체부 총괄 신고, 조사 업무 (예술인 보호관 등)가 생길 때까지는 현재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③ 지자체를 설득하여 지자체 차원의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할 경우 문체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2와 동일하게 한다. ( )

4) 소결: 2차 조사 결과

앞에서처럼 제시한 질문에 대해 동의한 패널수는 다음 표와 같다.

패널의 답변을 정리하면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는 개별법을 제정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혹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에 관한 법률」 같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생계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가 가장 높았다. 기타 피해자 피해자 지원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업무·취업 관련 불이익 주는 행동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징벌하자는 것과 피해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창작 활동·사업과 예술 교육 지원하자는 데 똑같이 동의가 높았다. 차순으로 높은 것은 예비예술인도 예술인의 정의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입법하고 1) 각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명시 2)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근절서약서 및 예방교육이수 계획서 제출 3) 지원사업 결과 보고시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가장 동의가 높았다.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하자는 제안, 다음으로 상급자와 하급자를 구분하여 교육하자는 안에 대해 가장 동의가 높았다. 표준계약서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과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을 넣자는 안에 대해 가장

동의가 높았고 제3자에 대한 성희롱도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하자는 안에는 두 번째로 높았다.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센터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재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안에는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동의가 높은 것은 신고/상담/지원의 조력과 지지자 역할과 조사/심의/징계의 가해자 역할로 나누고 전자는 상담센터에, 후자는 예술인보호관 같은 문체부 직속 행정업무로 귀속시키자는 안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고 전국적 문화예술인 대상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2-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정리

정책		법률 (6)	상담 (7)	문화 (4)	전체 (17)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정비	양성평등기본법	0	0	0	0
	고용평등법	0	1	2	3
	국가인권위법	0	0	0	0
	개별법	6	6	2	14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생계지원 조항 입법	4	6	2	12
	피해자 지원업무로 행정 절차화	4	3	1	8
	법죄자 피해지원기금 개정	4	4	2	10
	문체부의 조정·중재 업무화	0	0	1	1
기타 피해자 지원	문화예술 피해자 지원법에 취업알선 서비스 조항 추가	2	0	1	3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업무·취업 관련 불이익 주는 행동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4	6	3	13
	피해자의 창작 활동·사업과 예술 교육 지원	6	5	3	14
	예술인 관련 법안에 예비예술인을 예술인으로 정의	1	6	3	10
예방교육 의무화	예방교육 의무 입법	0	3	2	5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의무화하고 사후 관리	6	6	3	15
	의무화 반대	0	0	0	0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상급자/하급자 구분 교육	5	6	3	14
	토론, 간담회식 대면교육	3	5	2	10
	온라인 교육	0	1	0	1

정책		법률 (6)	상담 (7)	문화 (4)	전체 (17)
	상황별 내용구성 및 퀴즈	2	3	3	8
	교육과 컨설팅 접목	6	7	3	16
성희롱·성폭력을 표준계약서 해지조건으로 명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가능	6	7	3	16
	제3자에게 성희롱도 계약해지 이유됨	4	6	3	13
	문화기업 고용인이 성희롱시 기업이 고용인 계약해지 가능	5	4.5*	2	11.5
문체부 산하 신고상담 센터 정비	신고상담/사건조사/중재/피해자 지원과 장르와 영역별 성희롱 예방교육 및 인식확산으로 이분화	0	2	1	3
	신고/상담/지원의 조력과 지지자 역할과 조사/심의 / 징계의 가해자 제재의 역할로 이분화	3	3	1	7
	문화예술분야 전담 원스톱 센터	3	2	2	7
지자체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여가부 지원 상담센터에 문화 전문 상담원 배치	2	3	1	6
	전국적 문화예술인 피해자 지원센터	4	3	1	8
	지자체 운영 지원센터에 문체부 예산 일부 지원	2	1	2	5

* 해지 가능하지만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0.5로 계산함

VI

정책 제언

1. 문화분야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151
2.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재구조화 154
3. 표준계약서 개선 159
4. 성희롱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160
5.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방안 163

본 연구에서는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현황 조사, 성희롱·성폭력피해자 상담사례 분석, 피해자 심층면접, 해외 성희롱 피해자 관련 정책사례 조사, 그리고 현장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다양한 연구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본 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법률 제·개정 방안, 상담센터 재구조화 방안,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1. 문화분야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84]

가. 법 개정 방안: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앞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이 성희롱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 등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성희롱 피해 구제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법들은 모두 프리랜서,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85]를 구제하기에는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국가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호나 구제 방안에 관한 내용을 넣기에는 한계가 있다.[86] 즉,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것은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또는 구제조치나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다.[87]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

84) 델파이 조사 패널을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 ‘델파이조사’로 인용표시하고 패널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았음

85) 우리법에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인적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대신 노동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써왔는데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적인 개념이다. (델파이 조사)

86) 델파이 조사

87) 델파이 조사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뿐 아니라 용역·위탁·도급계약의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진정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비해 폭넓게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진정에 대해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건은 형사고발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력이 없는 권고결정을 내리는데 그쳐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88]

반면에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도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구직자, 파견근로자 중 하나이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조사,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피해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89] 하지만 모든 처벌 규정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에 있지 않는 프리랜서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럼에도 고평법은 앞의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격과는 달리 개별적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성격을 확장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완전한 프리랜서와 종속적 근로자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직종"[90]으로 이를 성희롱 피해자의 범주로 넣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따라 가해자의 범주도 '프리랜서와 계약한 사업주'로 확대되므로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용자가 성희롱 발생 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 처벌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어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체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앞장설 필요가 있고 프리랜서가 존재하는 분야는 문화분야를 포함해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법개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자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부처에서 협력하여 장기적인 안목

88) 델파이 조사
89) 델파이 조사
90) 델파이 조사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지만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용역·위탁·도급계약의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도 포함시킴으로써 의무 예방교육의 범위를 프리랜서에까지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술인복지법 등 개정 방안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은 문화분야 외에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반해 문화분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문화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가장 적절한 후보로 예술인복지법이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구제가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로부터의 보호 조항은 제2장 6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성희롱 금지는 제6조 2 금지행위에, 성희롱 처벌은 제6장 처벌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④항을 추가하여 “모든 예술인은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피해로부터 자유로우며 사회와 국가기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6조 2 금지행위에 5에 ‘성희롱 행위’를 넣고 “①문화예술기획자 및 문화사업자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와 “②성희롱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취업 심사 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반한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처벌은 제6장 벌칙에 명시하고 지원사업 배제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예비예술인이 성희롱의 빈번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1장 2조 예술인 정의에 예비예술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 피해로 예술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제10조 재단의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0조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에 이어 “및 성희롱 피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사업과 예술 교육 지원”을 추가(밑줄 부분)한다.

다.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법(가칭)」 제정방안

현재 성희롱 관련 세 법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초점을 맞추어 프리랜서의 성희롱 피해 지원을 하지 못하고 또 국가기관의 피해 예방과 지원만을 의무화하는 이 법들의 성격상 프리랜서를 포함하여도 크게 실익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를 위한 개별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프리랜서의 고용형태와 환경에 특화된 구제와 지원 방안을 제안할 수 있고 특히 프리랜서의 성희롱 피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취업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할 수도 있다.

2.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 재구조화

가. 업무 분장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V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현재의 신고상담센터는 운영자들의 사명감과 노력으로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보호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권한의 불일치와 부족한 자원의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체계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①상담/지원의 조력과 지지자 역할과 ②신고/조사/심의/징계의 가해자 제재의 역할로 나누어 전자는 현재의 센터가, 후자는 문체부 산하 전담기구나 전담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예술인복지법 상 불공정행위에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고 사건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모델로 할 수 있다.[91] 이렇게 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업무를 센터와 별도로

---

91) 문화예술 용역 계약에서 관련 성희롱 행위가 있을 시 예술인복지재단 안의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에서 사건 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예규: 2020.11.30. 일부 개정) 중 성희롱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④ 방해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

힘의 뜻은 다음과 같다.

(ⅰ) 각 행위 규정

㉠ '성희롱'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서(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을 포함한다)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예술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용역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괴롭힘'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약 내용의 적정범위를 넘어 예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예술창작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의 방해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방해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④ 부당한 방해행위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행위·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의 위해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ⅰ) 판단시 고려할 사항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술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수행함으로써 상담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상담센터는 지금보다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명실상부한 센터로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92] 또한 사건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독립성과 공권력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고용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93]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기 어려우면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예술계에서 지위 차이로 발생하는 '위력'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경우 위력의 존재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본 지침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고 시 처리과정은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에서 볼 수 있다. http://www.kawf.kr/social/sub06_1.do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출연자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① 대표가 소속 예술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행위

② 예술 활동과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③ 예술 활동과 관계있더라도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④ 음란한 이야기나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다) 감독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극배우에게 욕설, 폭언,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하는 경우

(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92) 델파이 조사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안은 문화예술분야 피해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피해 신고부터 사실조사, 가해자 제재, 피해자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안은 가해자 제재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하는[94] 전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델파이 조사에서 이원화안과 같은 수의 동의를 얻은 안이다. 이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인 피해자들의 세 센터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고 또 각 센터에서 인력과 자원의 부족을 호소하는데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상담, 지원을 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용자의 세 센터 차이에 대한 혼동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95]

나. 시민단체 협력 모델

다음으로는 상담센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모델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상담센터 중 든든은 처음부터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금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인들의 합의를 모을 수 있고 든든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영화인들의 동의가 높다는 점에서 좀 더 바람직한 모델로 보인다. 부산의 예술인 상담센터의 경우도 처음부터 예술인들의 요구로 시작하였고 운영도 시민단체인 부산성폭력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이 적극적이고 동시에 예술인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단체와 결합된 신고상담센터의 모델이 좀 더 활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민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좀 더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예복 센터와 보라의 합병

현재 문화분야에 세 개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

93) 이어서 “성범죄 관련 사건조사와 중재를 맡는 사람은 독립성, 전문성에 더하여 그 지위의 안정성(고용안정),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 등이 중요함. 현재 여러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서 처우가 열악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문제가 있음. 이 전담기구도 이러한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단지 직책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제대로 된 조사와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델파이 조사.

94)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

95) 현재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세 신고상담센터를 하나의 공통 전화번호(16710-5678)로 접근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현재의 장르별 접근은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섬세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든든은 영화라는 뚜렷한 장르구분이 되어 영화인들의 인지도가 높고 동시에 신뢰와 협력이 있어 사건 신고도 많고 사건 해결 능력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보라와 예복은 장르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용자측에서도 두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합침으로써 여러모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기관 중 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분야별 협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중 문화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 예방교육 운영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96] 앞으로 더 이용이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보라의 경우는 인력과 예산이 다른 센터에 비해 훨씬 작아 하나의 사업집행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산업진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기관에 속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년6월)이 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관련 대중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연1회, 1시간 이상)되어 이를 계기로 보라의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앞의 이유들 때문에 보라는 예술인복지재단 신고상담센터로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 방식은 규모와 예산이 더 큰 복지재단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사업 대상자가 예술인으로만 이해될 수 있어 센터 이름을 '예술·콘텐츠분야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병합한 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 안에 두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위치시켜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지역 차원의 상담센터 설립

현재 문화분야에 세 곳의 신고상담센터가 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델파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패널은 지역 차원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현재 센터가 서울에 집중됨으로써 지역의 피해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지역차원의 센터 설립 방식 중 패널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역에

96) 델파이 조사

문화예술인을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드는 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확보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지역의 반인권적 토호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성폭력센터에 문화예술인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때도 문화예술인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은 문체부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가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의 일부를 문체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체부가 지역 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은 현재 여가부가 지원하는 상담센터들도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체부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정체국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3. 표준계약서 개선

표준계약서는 조직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 영역의 34개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에 성평등 작업환경이나 성폭력 발생시 계약해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체적으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희롱만을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실연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10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제15조 5)” 등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성희롱 사건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프리랜서 종사자에게 일어나고 있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을’이지만 제3자에게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연예기획사의 배우, 가수, MCN의 탤런트 같은 사람이 제3자인 동료, 후배나 팬들에게 하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의 발생 시 기획사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획사와 제3자인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계약당사자(을)에게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도 갑이 을에게 성희롱을 하였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오히려 을이 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가해자 갑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을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현재의 표준계약서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권력관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성희롱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가. 예방교육 의무화

실상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은 예방교육이다. 아무리 피해자 지원을 잘 해도 성폭력의 후유증을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방교육을 법정의무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의무화 교육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구성원들과 같이 프리랜서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예방교육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97] 문체부에서는 예술기관 공모사업 및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대상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출판진흥원 진흥사업 및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사업의 참가자에게 예방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실상 예방교육을 무조건 의무화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예를 들어 문화분야 지원사업 경우 사업 신청이 주로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기업들이 예방교육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분야별로 경쟁률이 작게는 2대 1, 많게는 10대 1을 상회하여 예방교육의 수요자가 사업수의 2배에서 10배까지 되기 때문에 파견할 수 있는 강사 및 예산의 한계도 있다.[98] 무엇보다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사업의 진행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사업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일정한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 각 공공기관별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2)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근절서약서 및 예방교육이수 계획서 제출하게 한 후 3) 지원사업 결과 보고시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그 여부를

97) 델파이 조사
98) 델파이 조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효율성 제고 방안

현재의 성희롱 교육은 다양성 등에 있어 많이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천편일률적이고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수강자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상대로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키스탭, 배우 등 근로자의 지위보다 프리랜서의 지위에 더 가깝거나 반대로 업무상 권한이 큰 직급에 속한 사람들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그리고 영화진흥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않는 프로젝트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예방교육 실시가 권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젝트도 존재한다.[99] 따라서 실제로 예방교육이 넓게 시행되고 또한 교육대상자의 상황에 들어맞는 맞춤형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1) 현실적용 가능한 교육과 컨설팅을 접목

문화예술분야의 작업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보다는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교육 보다는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집단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강령) 등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슈 발생 시 공동체 내의 지원 체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이 접목된 형태로 구성한다.[100] 이 때 교육대상자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 책임자 등 다양한 직급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같이 논의하여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101]

2) 직급별 분리 교육

성희롱·성폭력은 대체로 상하관계 속에서 권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상급자와 하급자를

---

99) 델파이 조사
100) 델파이 조사
101) 델파이 조사

구분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상급자들에게는 자신이 가해자가 될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판단기준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하급자들에게는 성희롱·성폭력이 무엇인지(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키스텝 등 상급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 및 해결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의 권력관계적 측면상 스스로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판단기준 및 올바른 대응 및 해결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한다. 막내스텝 등 하급자들에게는 무엇이 성희롱과 성폭력인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나 조력자로서 어떻게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다.[102] 또한 기관에서는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을 별도로 진행한다.[103]

3) 대면교육, 소규모 토론식, 간담회식 교육 방법

예방교육은 개개인의 철학, 인식, 행동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실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므로[104] 대면교육으로 현장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소규모 토론식, 간담회식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인들을 강사로 양성하여 분야별 이해를 높인 교육을 할 수 있다.[105]

4) 상황/사례별 특수상황을 반영한 참여 교육

분야 상황/사례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특수상황에 대한 내용구성을 하고 이를 퀴즈로 교육생의 참여를 독려한다. 즉, 피해 당사자, 조력자, 조직 관계자, 조직 대표자, 상급자/선배, 동료, 지원기관 담당자 등 상황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퀴즈를 풀게 한다.[106]

5) 이러닝

예방교육은 집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나 집합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각 영역별 접근이

---

102) 델파이 조사
103) 델파이 조사
104) 델파이 조사
105) 델파이 조사
106) 델파이 조사

쉬운 매체나 플랫폼에 웹툰이나 동영상으로 제작, 업로드한다.[107] 콘텐츠업게 및 문화예술 분야에는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창작자, 프로젝트팀이 많으므로 성희롱 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러닝 콘텐츠가 제공이 되면 각 기관 담당자들은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하며 미이수자에게는 지원사업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관리한다.[108]

5.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방안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와 여가부 지원 신고상담센터는 넓게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단, 전자는 문화분야라는 더 특수한 환경에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분야 상담센터와 여가부 산하 성폭력지원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문화분야 기관들의 역할과 특수성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후자 기관에서 시작한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완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캠페인, 행사 등을 개최하여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의 존재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예비예술인의 피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 산하의 공공교육기관에 속한 예술계 학생들은 학교 내 성폭력상담센터 등에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사립 미술, 무용학원 등에서 정규 교육기관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예술인들은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에 전혀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실태조사나 피해자 면접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신고상담센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혼자서 고민하고 신고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립 문화예술학원을 대상으로 신고상담센터의 정보를 주고 이들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109]

---

107) 델파이 조사

108) 델파이 조사

109) 사립학원 내 학원생도 다른 문화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분야 신고상담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료지원, 법률 상담, 민사·형사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건 발생 예방과 가해자 제재(영업 취소 등)를 위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강석홍 등.(2012).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예술경영연구

관계부처 합동(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3.8.

국회의원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2017),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2017.1.17.

윤정민(2020). 'Yes Means Yes룰' 입법 추진…"섹스전 계약서 쓰나" 반발도, 중앙일보 2020.6. 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09953. 2020.8.11. 검색.

국가인권위 보도자료(2020).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권고. 2월 25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060. 2020. 9.1.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등(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

국가인권위원회(2020).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권고

문화체육관광부(2020), 내부자료, 2020.2.11. 기준.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연예술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연구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박근화).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수행: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윤우석).

문화체육관광부(2019).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2019년 성평등 나무가 한 뼘 자라다

문화체육관광부(2019). 출판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연구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2018).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2018.7.2.

변영건·이승엽. (2020).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예술경영연구, 54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연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장미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해바라기센터 2019 연감. file:///C:/Users/KWDI/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71RZS1FT/%ED%95%B4%EB%B0%94%EB%9D%BC%EA%B8%B0%202019%20%EC%97%B0%EA%B0%90%20(%EC%B5%9C%EC%A2%85).pdf. 2020.12.8. 검색.

여성가족부(2017),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43,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6.1.

영화진흥위원회(2020).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이미정 외(2019),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성미(2019), “#문화예술계_성폭력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정책활동의 성과와 한계”,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2019.8.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천재영·박경희·이혜림(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및 상담(2018. 3.12.~6.19) 분석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서울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재주(202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20.7.

한국노동연구원(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고용영향평가브리프, 4(연구책임: 김종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1차 오픈테이블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성평등 예술지원정책 제2차 오픈테이블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2019).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7쪽. file:///C:/Users/KWDI/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923C3DBE/[%EB%B3%B4%EB%8F%84%EC%9E%90%EB%A3%8C]_%ED%95%9C%EA%B5%AD%EC%84%B1%ED%8F%AD%EB%A0%A5%EC%83%81%EB%8B%B4%EC%86%8C_2019_%EC%83%81%EB%8B%B4%ED%86%B5%EA%B3%84.pdf. 2020. 12. 8. 검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6.1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 6.19., 별첨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2018. 6.19., 별첨 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6.2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권고문 발표”, 2018.7.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예술현장 의견수렴 - 9.11. 온라인

공청회 개최, 문체부 페이스북 등 생중계 - ", 2020.9.11.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 정부 합동「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발표 -, 2018.3.8.

영문

Alabi, O. A.(2019). Sexual Violence Laws Redefined in the "Me Too" ERA: Affimative Consengt & Statuites of Limitations, 25 *Widener L. Rev.* 69. https://heinonline.org/HOL/LandingPage?handle=hein.journals/wlsj25&div=8&id=&page=

Anderson, K.(2017). Criminal Law: The system Is rigged: Criminal Restitution Is Blind to the Victim's Fault-State v. Riggs, *Mitchell Hamline L.* Rev. 140, 142, Rua, 770에서 재인용.

Bryden & Lengnick(1997). Rap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87 *J. Crim. L & criminology* 1194, 1209

Buckley, C. (2018). Powerful Hollywood Women Unveil Anti-Harassment Action Plan, *Times*(2018. 1. 1.). https://www.nytimes.com/2018/01/01/movies/times-up-hollywood-women-sexual-harassment.html. 2020.8.6. 검색.

Buel, S. M.(2004), Access to Meaningful Remedy: Overcoming Doctrinal Obstacles in Tort Litiga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83 Or. *L. Rev.* 945, 948-49.

Loughrey, C.(2017). Sweden to require film companies applying for funding to undergo sexual conduct training. 2017. 11.15.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films/news/sweden-film-companies-applying-for-funding-to-undergo-sexual-conduct-training-alicia-vikander-a8056866.html. 2020.8.6. 검색.

Rua, C(2019). Lawyers for #UsToo: an analysis of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ntigent fee system in tort cases for sexual assault, *Columbia Human Rights Law*, 51, 2: 725-774.

Sandstrom, F(2017). #MeToo in the Swedish Art World, *Nordic Art Review*. https://kunstkritikk.com/metoo-in-the-swedish-art-world/ 2020.8.6. 검색.

Sheikha, J.(2019). Punishing Bad Actors: The Expansion of Morals Clauses in Hollywood Entertainment Contracts in the Wake of the #MeToo Movement, *Nora Law Review* V. 43, Issue 2. https://nsuworks.nova.edu/nlr/vol43/iss2/5/

Swan(2013). Triangulating Rape, N.Y.U. *REVIEW OF LAW & SOCIAL CHANGE* [Vol. 37:403-455.

온라인 사이트

노르딕 성평등기구(NIKK) (2020). One year after Me Too: Initiatives and action in the Nordic and Baltic countries

노르웨이 평등및차별금지법(Equality and Anti- Discrimination Act). https://lovdata.no/dokument/LTI/lov/2019-06-21-57

노르웨이 평등및차별금지법원. https://www.diskrimineringsnemnda.no/spr%C3%A5k/1230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https://www.mcst.go.kr/kor/s_minwon/eCulture/cultureReport/cultureReportCenter.jsp

바르셀로나 반젠더폭력(BCN Antimasclita) 홈페이지

-Care Services: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care-services/sara

-Detecting gender violence: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care-services/cmau-vm

-Preventing and acting: https://ajuntament.barcelona.cat/bcnantimasclista/en/preventing-and-acting/2018-campaign

서울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설립 목적. http://www.help0365.or.kr/sub_1_2.php. 2020.12.8. 검색

스웨덴 법무부 홈페이지. 성적동의법.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8/04/consent--the-basic-requirement-of-new-sexual-offence-legislation/

스웨덴 영화진흥원(Swidish Film Institute). Toward Gender Equality in Film Production. https://www.filminstitutet.se/en/about-us/swedish-film-institute/gender-equality/

스웨덴 평등과 반차별 옴브즈만. Act relating to 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https://lovdata.no/dokument/NLE/lov/2017-06-16-50

영국 검찰청(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성범죄. https://www.cps.gov.uk/crime-info/sexual-offences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http://www.kawf.kr/social/sub06_1.do. 2020.12.10. 검색

Voice of Culture. Gender Equality: Gender Balance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https://voicesofculture.eu/2019/05/14/gender-balance-in-the-cultural-and-creative-sectors/

문화문야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방안 연구

2020년 12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발행인 : 박 양 우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9-11-6357-265-7 93330